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0.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책임연구자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최 병 순 (국방대학원 리더십과정 교수)
연구원	손 난 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이 문 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서 은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이 은 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군복무상의 부적응은 당사자인 병사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복무 부적응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부적응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징병단계, 복무단계, 그리고 전역단계의 세 단계에 걸쳐 군복무 부적응자의 감별의 타당성, 인권침해, 보상, 예방 및 교육정책상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군복무 부적응자란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 사회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종래에 환경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관점과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군복무 부적응을 만드는 개인적 요인들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한국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군복무 부적응의 책임 귀인 태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군 만약 지휘관들과 병사들 사이에 군 부적응에 대한 책임 귀인이 환경보다 개인에 더 많다고 보고 있다면 그것은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현재 군복무 부적응 양상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를 연구함으로써 미래의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군대 내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군체제를 검토함으로써 인권론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도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5개 사단, 총 7 부대의 병사 940명, 간부 142명으로부터 설문조사 자료와 면담자료, 그리고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부대는 전방 2부대, 후방 1부대, 최전방 4부대였으며,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해안수색부대, 철책수색부대 등 부대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설문도구로는 연구진에서 자체 개발한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설문지와 군복무 부적응 예비 척도, 그리고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사용하였고, 면담도구로는 연구진에서 개발한 반구조화된 면접질문목록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0.0과 AMOS 4.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이 주로 사용되었고, 부적응의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결과를 포함한 세부적인 결과는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1) 징병 검사 시 실시하는 인성검사가 대부분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므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진단 및 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병무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 인성검사는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라기보다는 군대에서의 적절한 배치와 입대 후 관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도 인성검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인지하여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검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복무 부적응자를 사전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감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 군에서 통용하는 “군복무 부적응자”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감별도구와 그 활용 과정이 군복무 부적응자의 감별 및 예방에 적절한 것인지 사전검증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2) 검사 실시자가 심리검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전문성이 없었기에 단일한 점수 커트라인 준거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판별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군 인성검사에서 복무 부적응병사의 특성과 상관이 높은 내향성과 가정문제 척도가 단지 정신병 측면과 상관이 작다는 이유로 감별판단에서 제외되었고, 군 인성검사의 큰 장점에 해당하는 군 관련 특수내용척도(군생활 준비도, 집합성향, 자기도피, 적개심표출, 신체증상, 규범동조 및 반발 척도) 결과를 판정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 심각하게는 ‘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 경우 한 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날에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하므로써 심리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검사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 전문가가 병무청에는 없었고, 육군훈련소에서도 심리검사의 전문훈련을 받은 기본권 상담관(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을 감별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인성검사만 실시하고 있을 뿐 지능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육군훈련소에서는 지능검사를 실시하되 역시 비전문가에 의해 단일한 점수를 준거로 판별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계선 지능(즉, 점수상으로 열등점수보다 약간 높은 경우)의 병사들이 그대로 부대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소지가 우려를 갖게 하였다.

(3) 조사된 병사들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정신진단검사 상에서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증상(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증상),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며, 부적응 이유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등 주로 군대요소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병사들은 부적응의 원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을 제일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순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적응집단의 경우는 '제대 후 진로부담'을 제일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은 '비합리적 군대문화', '열악한 근무환경', '선임병과의 갈등'을 보고했다. 부적응집단과 적응집단 간에 군복무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모두 비합리적 군대문화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꼽았다.

(5)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침해의 직·간접적 영향도 더 많이 받았다.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병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침해유형으로 '사적인 명령'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언어폭력, 차별이 많았다.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인권침해 유형의 빈도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조사에 응답한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특히, 간부들이 적시에 식별해야 할 부적응 병사들 대부분이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며, 고충이 생겨도 부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재 각 부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적응 예방 및 관리 시도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7) 간부 4명 중 1명 비율로 간이정신진단검사 상에서 부적응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간부들은 신체화 증상, 강박증, 편집증, 대인민감성의 순으로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주로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간부들의 부적응자 관리 방법은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와 같이 비체계적이고 개인책임에 따른 관리방식은 간부들에게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었다. 군 간부들은 부대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징병단계에서 부적응이 예상되는 잠재 부적응자를 사전에 감별하는 방안과 부대 배치 시 병사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부대마다 상담전문가 배치’와 ‘인성교육이 필요’ 등이 있었다.

위에 기술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1) 인성검사 사용과 해석의 신중성 필요

군대 밖에서도 인성검사는 흔히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심리검사는 철저한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심리검사가 가장 적절한지, 심리검사의 실시자와 해석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가라 하더라도 심리검사 해석에 신중하고 정확한지 등을 엄격하게 고려한다. 이에 비하면 현재 징병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문가의 검사실시 및 컴퓨터에 의한 일괄적인 해석은 허술하고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단을 내릴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기존의 인성검사보다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검사도구를 개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을 함께 수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검사 실시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동일한 검사를 당일에 재검사하는 식의 절차를 유지한다면 새로운 인성검사가 잠재적 부적응자를 걸러내는 좋은 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검사도구의 개발과 함께 실시하고 해석하는 절차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반드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당화 연구가 잘 되어 있는 현 검사도구를 잘 활용하여, 현재 군 부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척도들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 채점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리검사 전문가의 채용

심리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나 심리상담자들 가운데서도 심리검사와 관련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징병단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문가는 정신과 군의관인데, 의과대학에서는 심리검사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의관의 경력으로는 심리검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징병단계에서의 잠재적 부적응자의 선별과정이 그 어느 단계에서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훈련이 잘 된 군의관을 활용하거나, 외부 심리검사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성검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조심하고, 경험적 지표를 활용

단일한 지필검사로 잠재적 부적응자를 걸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인성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군의관 면담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한 명당 약 5~10분 이루어지는 현 면담실태는 누가 봐도 형식적이다. 따라서 인성검사와 더불어 오랜 시간 군대에 속한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험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생활기록부의 활용 또한 검토해볼만하다.

(4) 입영부터 전역까지 인성검사들의 데이터베이스화

입영단계에서부터 개개인에 대한 인성적 판단 자료가 전역까지 기록이 되고, 그 개인이 가는 곳마다 지휘하는 담당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인사관리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 개인의 취약성을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의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후에 군대 내 부적응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초·중·고등학교, 대학, 의료분야, 행정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일선 부대를 방문해보니 여전히 개인의 자료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군대가 기술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인사관리를 매우 낙후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 개인의 자료를 징병 단계에서 실시한 인/적성검사 결과에서부터 복무 기간 동안의 주요 변화, 그리고 전역 단계에서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면 그 개인이 중간에 어디로 이동하는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군대에서 부적응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휘관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게 해준다. 또한 군 부적응자가 아닌, 군 입대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한 이들의 추이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군에 입대하는 이들에게 보다 적응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5) 부적합 판정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한한 입영 전 정밀진단 캠프 활용

징병단계 인성검사(지능검사 실시될 경우 지능검사결과 포함)에서 복무면제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되지는 않으나, 잠재 부적응이 심히 우려되는 자들이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대부분 감별되지 않고 군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실제로 군사고유발자가 된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징병시스템으로는 군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입대 전 징병단계에서 복무 부적응이 심히 우려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정밀진단을 위해 감별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진단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일주일 가량 잠재 부적응자로 분류된 자들을 관찰하면서, 부적응 감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면담,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평가자들에 의한 집중적으로 관찰 진단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복무 기피하려는 자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

(6) 복무 단계에서 군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은 그 특성상 대외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 군대도 사람을 다루는 곳이고, 사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자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최대한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7) 누가 부적응병사인지를, 부적응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들이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적응병사를 발견하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 것은 부적응병사들이 입대 후에 도움을 받을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부적응병사를 도우려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도들이 실제 병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프로그램과 시책에 관하여 느끼고 있는 바를 고위급 군관계자를 면담하고 이후에 병사들을 면담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고위계급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일반 병사들은 그러한 프로그램과 시책에 대해 냉담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군대와 같은 엄격한 위계조직에서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과 시책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순응과 응종이 요구되는 조직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군대가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이다. 외부에서 군대의 프로그램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없으면 무엇이 효과적으로 또는 비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8) 간부의 지휘부담 감소

본 연구에서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high-risk)를 식별 ·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매우 큰 지휘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간부들에게 부적응 병사 식별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휘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심리검사에 대한 간단한 해석지식, 군복무 부적응자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내용, 가장 지휘부담이 큰 몇 가지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 위기개입기술,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조치 성공사례의 요인, 상담기술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 내 부적응자 문제를 전담하고,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간부의 부적응 병사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휘

자 보직 전에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에서는 군 부적응자 이해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해소

가)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효과성이 입증된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정서적 개입을 활용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군 상황에 맞게 연구·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나) 본 실태조사에서 군 생활의 개인적 의미가 높은 병사일수록 군 부적응 증상이 낮았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군복무 경험을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군에 입대하는 것이 인생의 낭비로 여겨지기 보다는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년기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인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 집단프로그램을 군에 맞게 개발·실시하여 군대에 있는 동안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깨닫게 되고, 제대 후 자신이 찾아갈 수 있는 진로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 프로그램은 이미 일반사회에서 기업체나 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또한 진로 프로그램은 다른 정신건강 프로그램과는 달리 단기간의 일정한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두는 대신 군대 내 지휘관을 훈련함으로써도 충분히 실시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10) 부적응 병사를 위한 현 제도 보완

현재 군 부적응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상담제도, 마음의 편지 등은 그 이용실태가 미비하거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병사들 간에 인식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비밀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군 부적응 제도에 관련한 단기 과제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의 장점을 살리되 비밀보장측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현행 각종 제도를 군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병사의 신분노출통로를 막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운영방식에서 비밀보장 측면을 강조한 홍보를 병사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 '관심병사' 분류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현행 관심병사제는 눈에 띄는 부적응자나 의증(피병) 부적응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심병사 분류의 타당성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부적응 병사의 비율은 현재 각 부대 관심병사의 비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한 대부분의 부적응 병사들이 군 부적응에 대한 부대조치를 매우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 측에 자신의 부적응을 알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간부들에게 상당한 지휘부담이 되고 있는 부적응 병사의 식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심병사의 타당성에 대한 횡단적, 종단적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관심병사로 지목될 경우, 비밀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미 관심병사로 낙인찍힌 병사들의 인권침해가 상당한 것을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관심병사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역시 수행되어야 한다.

(12) 부적응자 관리 및 조치 활동의 부대 간 표준화 필요

현재는 사단 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대안이 아닐 뿐 아니라 유용한 정보의 교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심포지움의 개최 등으로 부대 간 정보 교류가 필요할 것이고, 군대의 상부에서는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적응자 관리 및 조치 활동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13) 군 부적응자 식별 · 개입 ·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과 제도 마련

연구자들은 군 부적응자 문제에 대한 중 장기 과제로, 군 복무 부적응자들을 전문적으로 식별 · 관찰 · 개입 하는 기관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의증(피병) 부적응자와 잠재 부적응자를 적절히 식별하고, 초기 군 부적응자에게 정기적으로 신속한 치료적 개입을 하며, 상태가 호전될 경우 이들에게 적합한 근무형태를 제안할 수 있으며, 호전이 어려울 경우 타당한 전역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하는 별도의 기관과 이들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이 타당한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군은 이러한 기관을 보유함으로써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제적

인 자료를 구축하고 여러 성공사례를 통해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예방과 조치 방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군의 전투력 강화와 사회의 군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14)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과학적 접근 필요

다양한 변화 시도를 하기 이전에 사전 검증을 통하여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연구하는 것이 예산 낭비와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군대에서도 기초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연구 주제들로는 군 적응장애 정의, 분류기준, 치료적 개입, 부적응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연구, 군 홍보를 위한 군 적응 프로그램 개발, 군 적응(유연성)의 위험요인과 적응요인 및 대처방식 연구, 징병검사 결과와 복무 중 관심병사의 일치여부, 관심병사와 사고간의 관련성에 대한 중단연구, 적응전략에 대한 연구(적응전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사용 가능) 등이 있다.

(15)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 기준(육군규정 102)의 개선

소속부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표5-1>에 제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참고하여 선별하게 된다. 하지만 <표5-1>의 조항들은 그 의미가 서로 중복되어 있으며, 가정환경 사유로 인한 부적합 대상자와 5급에 이르지 않는 심신장애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어 혼란스러우며, 체계적인 면에서 미흡하다. 이에 대해 심신장애와 가정환경 및 수형자 기준을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5급 미만의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술하며 각각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특징을 활용자료로 첨부하여 사단마다 통일되고 일관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6) 전역 결정 시 별도의 세부규정 마련

현재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 처리 시 정확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역결정이 애매한 병사들의 질환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경험적 자료에 근거를 두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군의관 소견 시 각 장애에 대한 등급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규정 혹은 장애등급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의관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관련영역의 전문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과 질병에 대해 전문적 소견을 가질 수 없다. 정신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하나의 질환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개인의 ‘정신나약’이나 ‘의지박약’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서는 항명, 군무이탈, 복무기피 목적 상해 등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현 여건 상 수급되기 힘든 정신과 군의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민간 전문가(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18) 군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확립

현재 군 적응장애 병사들의 경우 일반 정신의학기준으로 보아서는 진단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중 증상들이 등장하고 있어, 부적응자들을 위한 관리와 치료에 군 당국과 군의관들의 일관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정신의학적 기준과 다른 특수한 우리나라 군 적응장애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실시하여 군 적응장애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9) 자살자 공상인정 및 보상 마련

우선 국방부 훈령인 전공상분류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에 명시된 업무상 사고와 비교하여 볼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공상분류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자 중 구타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자살한 자는 자신의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라는 의식인 국립묘지령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

(20) 전역 절차의 개선

현재의 경로로 심신장애 전역이 지속될 경우 공상판정이 전역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대에서 이루어진 전공상 판정이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반복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을 변경할 경우 관

례적으로 전공상심의의결서를 소속부대에 다시 돌려보내 재작성도록 하는데 병사는 이미 전역을 한 후이기 때문에 서류 절차가 지연되며 공상처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역 판정 전에 전공상심의가 이루어져야 절차상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역 전에 전공상심의를 하다보면 전공상 심의와 전역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병사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상심의 위원회를 중앙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단별로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전역심사위의 회의 소집일을 지금의 한 달에 1회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제 목 차 례>

요약	i
I. 서 론	1
1. 연구배경	1
가. 징병단계	2
나. 군 복무 단계	3
다. 전역 후 단계	3
2.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제	5
II. 연구 내용	8
1. 징병단계 : 병무청 징병실태	8
가. 징병제도	9
나. 병무청 방문조사	12
1) 방문조사 일시 및 절차	12
가) 방문조사 일시	12
나) 절차	12
2) 실태	12
3) 인성검사	13
가) 인성검사 도구 : 군 인성검사	13
(1) 검사 소개	13
(2) 검사개발절차	14
(3) 검사구성	15
(4) 부적합 판정기준 척도	15

나) 인성검사 실시	16
4) 병무청 감별도구 및 절차상의 문제점	18
가) 검사도구 문제	18
나) 검사실시자 문제	20
다) 검사 실시 환경의 부적절성	20
라) ‘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 검사 재 실시 문제	21
마) 검사결과 해석 관련 문제점	22
바) 지능검사 미실시의 문제	23
2. 징병단계 : 육군훈련소 감별실태	25
가. 육군훈련소 감별 절차	25
나. 육군훈련소 방문조사	26
1) 방문조사 일시 및 절차	26
가) 방문조사 일시	26
나) 절차	26
2) 실태	26
가) 인성검사 및 지능검사 실시 절차	27
나) 인성검사 도구: ‘군 인성검사’	27
다) 지능검사 도구: ‘지능검사’	27
(1) 검사 소개	27
(2) 검사 구성	28
(3) 부적합 판정기준	29
(4) 육군훈련소 감별도구 및 절차상의 문제점	32
3. 복무단계 : 병사	34
가. 연구 방법	41
1) 참여자	41
2) 설문 도구	42
가)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설문지	42

나) 군복무 부적응 예측 척도	42
다)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43
3) 절차	43
4) 분석	44
나. 결과	44
1) 응답의 솔직성	46
2) 군복무 부적응 병사 실태	46
가) 군 생활의 어려움	47
나) SCL-90-R(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	48
다)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52
3)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침해 실태	54
가) 인권침해 경험	55
나) 인권침해의 직접영향 및 간접영향	56
다) 인권침해 유형	58
라) 비합리적 명령 및 은근한 압력	60
4)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	62
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의 효과성 지각	62
나) 부대 도움요청 의사	64
다)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의 필요성	65
5) 복무 부적응 관련 기타문항 결과	66
가)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	66
나) 군 생활의 의미	67
6) 몇 가지 실태 문항에 대한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 간 비교	68
7) 상관분석	69
8) 문장완성검사(SCT) 내용분석	73
9) 인권모델 검증	77
가) 인권침해변수의 매개효과 검증	78
나) 인권침해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82
다) 전체 결과	85

10) 병사 면담 정리	86
가)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86
나) 부적응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	88
다) 관심병사제에 대한 의견	88
라) 마음의 편지에 대한 의견	88
마) 부대 재배치에 대한 의견	89
바) 상담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89
사) 군이 개선되어야 할 점	90

4. 복무단계 : 간부

가. 연구 방법	92
1) 참여자	92
2) 설문 및 면담도구	93
가) 간부용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 설문지	93
나)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	93
다) 면접도구	94
3) 연구 절차	94
나. 연구결과	95
1) 반응의 솔직성	95
2) 군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96
가) 부적응 간부 실태 (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	96
나) 사단별 간부 부적응 실태	98
3)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100
가)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100
나) 부적응자의 이유	100
다) 간부가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	104
라) 군 부적응자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	106
마)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분류 기준 및 교육 경험	108
바)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처 및 관리의 어려움	109
사)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정책 대안	111

4)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112
가) 부적응 병사 처우 및 부당대우 유형	112
나)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대처 및 어려움	114
다)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인권침해 이유	116
5) 군복무 부적응자 전역 및 현 제도에 대한 간부 인식	118
가) 심리적 질환에 대한 전역	118
나) 제도 평가	120
6) 간부들의 지휘부담 실태	123
다. 면접조사 결과	126
1) 부적응 병사 및 관심병사 분류 기준	126
2) 부적응 병사 및 관심병사 관리 내용 및 노하우	127
3) 어려운 점	129
4) 제도의 문제점 및 제안	130
가) 기본권 전문 상담관 제도	132
(1) 운영배경 및 현황	132
(2) 문제점 및 대안	132
나) Vision Camp	136
(1) 운영현황	136
(2) 프로그램 내용	136
(3) 문제점 및 대안	137
5. 전역단계	140
가. 군복무 부적응자의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전역	142
1) 내용 및 근거	142
2) 군복무 부적합자 대상 기준	142
3) 처리 절차	143
4)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144
가)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 위원회	144
나) 전역심사 위원회	145

5)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실태	146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 개선안	148
가) 신병 교육 중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 활성화	148
나) 현역복무부적합 정도에 따라 병역처분 다양화 개선	149
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 권한 위임	149
나.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신장애 전역 제도	149
1) 내용 및 법적근거	149
2) 전역기준	150
3) 심신장애 전역 절차	152
4)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153
가) 의무조사위원회	153
나) 전역심사위원회	153
다) 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	153
5) 심신장애 전역 실태	154
6) 심신장애 전역자에 대한 전·공상 처리 및 보상체계	156
가) 전·공상 정의	156
나) 전·공상 판정 절차	157
다) 전공상 분류 기준의 문제점	159
(1) 군자살자 실태	160
(2) 군자살자에 대한 현행 보상체계	161
(3) 판례	162
라) 전·공상처리 실태	163
마) 신체장애등급 및 장애 보상금 지급	166
6. 향후 제언	168
가. 징병단계	169
1) 인성검사 사용과 해석의 신중성 필요	169
2) 심리검사 전문가의 채용	169
3) 인성검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지양, 경험적 지표 활용	170

4) 학생생활기록부 활용	170
5) 입영부터 전역까지 인성검사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171
6) 부적합 판정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한한 입영 전 정밀진단 캠프 활용	172
7) 징병단계에서의 군 이미지 홍보	172
나. 복무단계	174
1) 간부의 지휘부담 감소	176
2)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해소	177
3) 상호 의사소통의 필요성	179
4) 현 제도 보완 및 ‘관심병사’ 분류 기준의 타당성	182
5) 군 부적응자 식별·개입·관리를 위한 기관과 제도마련	183
6) 대체복무제	184
7) 연구제안	184
8) 군대문화 개선	185
다. 전역단계	186
1)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 기준(육군규정 102)의 개선	186
2) 전역 결정 시 별도의 세부규정 마련	186
3) 처리 과정 시 발생하는 부적합 병사의 처우 문제 개선	186
4)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187
5) 군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확립	187
6) ‘군적응장애’에 대한 개입 및 치료 방안 마련 시급	188
7) 군에서 악화 혹은 발병된 정신과 질환에 대한 군의 관점 변화 필요	189
8) 자살자 공상인정 및 보상 마련	190
9) 전역 절차의 개선	190
10) 전역심사위원회의 권한의 개선	193
11) 전·공상의 제 1차 판정자들을 위한 교육 마련	194
라. 군대 밖 사회에서의 노력	195
1) 군 이미지 홍보	195
2) 군 부적응 관련 도움내용 홍보	195

IV. 결론	196
참 고 문 헌	200
<부록 1> 병사용 질문지	202
<부록 2> 간부용 설문지	213

〈표차례〉

〈표 1-1〉 신체검사과정	10
〈표 1-2〉 군 인성검사 척도 구성 내용	15
〈표 1-3〉 정밀진단요망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	16
〈표 2-1〉 입소대대 감별 일정	25
〈표 2-2〉 지능검사 구성내용	28
〈표 2-3〉 K-WAIS와 군 지능검사 지능등급 비교	29
〈표 2-4〉 일정 이상 백분위 지능점수를 요구하는 군사특기 수	30
〈표 2-5〉 4등급별 해당인원 규모('05년 1월 ' 06년 9월)	30
〈표 2-6〉 병무청과 논산 육군훈련소의 인성검사 결과비교	31
〈표 2-7〉 지능검사 결과	32
〈표 3-1〉 설문응답 병사들의 학력	41
〈표 3-2〉 설문응답 병사들의 계급	41
〈표 3-3〉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45
〈표 3-4〉 응답자의 솔직성	46
〈표 3-5〉 군 생활의 어려움	47
〈표 3-6〉 다른 병사들의 군 생활 어려움에 대한 지각	48
〈표 3-7〉 군복무 부적응자의 증상 유형	49
〈표 3-8〉 집단별 계급 및 계급별 비교	50
〈표 3-9〉 군 복무 부적응의 원인 유형	52
〈표 3-10〉 다른 병사들의 군대생활 어려움 이유	54
〈표 3-11〉 다른 병사의 부당대우 목격	56
〈표 3-12〉 인권침해의 직접영향	57
〈표 3-13〉 인권침해의 간접영향	57
〈표 3-14〉 인권침해 유형	59
〈표 3-15〉 대중매체를 통한 군 사고 소식의 영향	59
〈표 3-16〉 선임병이나 간부의 비합리적 명령	61
〈표 3-17〉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주는 영향	62
〈표 3-18〉 부대조치의 효과성	63
〈표 3-19〉 부대 내 도움요청 의사	64

<표 3-20> 가족 및 외부기관 도움요청 의사	65
<표 3-21>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의 필요성	65
<표 3-22> 입대 전 군 이미지	67
<표 3-23> 군생활의 의미	67
<표 3-24> 변수이름, 설명, 설문지 문항	70
<표 3-25> 각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	71
<표 3-26> 부적응 병사관리 문장완성검사 분석결과	75
<표 3-27> 매개모델 타당성 결과	79
<표 3-28> 매개모델 검증 결과	80
<표 3-29> 인권침해매개모델의 경로계수결과	81
<표 3-30> 상호작용모델 검증 결과	83
<표 3-31> 상호작용모델의 경로계수	84
<표 4-1> 계급분포	92
<표 4-2> 학력분포	93
<표 4-3> 응답의 솔직성	95
<표 4-4> 이상집단 증상유형	96
<표 4-5> 계급별 부적응 집단 실태	98
<표 4-6> 군복무 부적응자의 이유 유형	102
<표 4-7>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	104
<표 4-8> 부적응 병사의 유형	106
<표 4-9> 군 부적응 병사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	107
<표 4-10> 부적응 병사 분류 기준의 도움 정도	108
<표 4-11> 군 부적응 병사의 처우 개선과 간부의 지휘권 대립	114
<표 4-12> 군복무 부적합 판정이 요구되는 병사의 상부 보고	117
<표 4-13> 상부 보고 꺼린 이유	118
<표 5-1> 군복무 부적합자 대상기준	143
<표 5-2>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병 처리 실태	147
<표 5-3> 복무 부적합 처리 불가 사유별 현황 (2005년도)	147
<표 5-4> 전역 심의 결과 '복무' 결정자에 대한 근무실태(04~05년)	148
<표 5-5> 징병 신체검사 검사규칙 내용 (정신과)	151
<표 5-6>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 실태	154

<표 5-7> 2003 ~ 2006 현재 주요 진료과목별 심신장애 전역처리 대상자수	155
<표 5-8> 전·공상 구분 및 정의 (육규 102, 61조)	156
<표 5-9> 전공상 심의 분류 기준표	158
<표 5-10> 자살자 통계	160
<표 5-11> 자살자 원인별 현황	160
<표 5-12> 보상체계	161
<표 5-13> 유사 법규 비교	163
<표 5-14> 2002~2006현재 주요 진료과목별 공상처리 대상자 수	164
<표 5-15> 2003~2006 현재 정신과 진단명별 심신장애 공상처리 대상자 수	165
<표 5-16> 보상등급 및 보상금 지급 기준	166
<표 5-17> 재해보상금의 급여 제한	167

〈그림차례〉

〈그림 3-1〉 군복무 부적응자의 증상유형	49
〈그림 3-2〉 집단별 계급	50
〈그림 3-3〉 사단별 복무 부적응 증상 병사의 숫자	51
〈그림 3-4〉 자신의 군대생활 어려움 이유(군대문제-개인문제)	53
〈그림 3-5〉 자신의 부당대우 경험	55
〈그림 3-6〉 적응과 부적응 증상 병사들의 인권침해 유형	58
〈그림 3-7〉 선임병이나 간부의 비합리적 명령	60
〈그림 3-8〉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주는 영향	61
〈그림 3-9〉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의 효과성	63
〈그림 3-10〉 입대 전 군 이미지	66
〈그림 3-11〉 주요 문항별 평균그래프	68
〈그림 3-12〉 인권모델	79
〈그림 3-13〉 인권침해의 상호작용 모델	82
〈그림 4-1〉 간부 부적응자의 증상유형	97
〈그림 4-2〉 사단별 부적응 집단 실태	99
〈그림 4-3〉 군복무 부적응 병사 실태	100
〈그림 4-4〉 부적응 이유 유형	101
〈그림 4-5〉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	103
〈그림 4-6〉 부적응 병사의 유형	105
〈그림 4-7〉 군대 사고 소식이 부대에 미치는 영향	107
〈그림 4-8〉 부적응 병사 이해 및 관리에 대한 교육	108
〈그림 4-9〉 부적응 병사 대처	109
〈그림 4-10〉 부적응 병사의 관리에서 어려운 점	110
〈그림 4-11〉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정책 대안	111
〈그림 4-12〉 부적응자 처우	112
〈그림 4-13〉 부적응자 부당대우 유형	113
〈그림 4-14〉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대처	115
〈그림 4-15〉 부적응 병사의 부당한 대우 처리 시 어려움	115
〈그림 4-16〉 부적응 병사의 인권개선을 위한 개입	116

<그림 4-17> 간부들의 부적응 병사 인권 침해 이유	117
<그림 4-18> 군복무 부적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119
<그림 4-19> 심리적 부적응(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병전역	120
<그림 4-20> 관심병사제에 대한 의견	121
<그림 4-21> 비전캠프의 군 간부의 의견	121
<그림 4-22> 인권 상담관 제도에 대한 군 간부의 의견	122
<그림 4-23> 군 간부의 지휘 어려움	123
<그림 4-24> 군 간부의 어려움 유형	124
<그림 4-25> 군 간부의 심리상담에 대한 의견	125
<그림 4-26> 간부들의 지휘곤란 해결을 위한 도움	125
<그림 5-1>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절차	144
<그림 5-2> 2001-2005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실태	146
<그림 5-3> 전역절차 및 각 위원회의 구성	152
<그림 5-4> 2003 ~ 2006 현재 주요 진료과목별 심신장애 전역처리 대상자수	155
<그림 5-5> 전·공상 판정의 세부절차	157

I. 서론

1. 연구배경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존 질서에 대해 불만을 가질 청년시기에 엄격한 규율, 명령, 긴장 속에서 획일적인 단체행동을 요구하는 군대 생활은 병사들의 심리적인 갈등과 부적응을 겪기 쉬운 환경적 요소를 제공한다. 총기사건, 병사들의 자살, 성범죄, 언어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왕따, 마약 및 약물중독, 탈영 등 군대내 주요 부적응 문제는 대부분 병사가 군대라는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빚어낸 심리사회적 결과이다. 크게는 인분사건, GP총기 난사 사건, 알몸사건 등 작년 한해에만도 이해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군대 사건들이 보도된 바 있으며 2005년 국방부 모 자료에 의하면 군 입영 대상자의 45%는 군복무 부적응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군대가 일반 사회의 어느 대규모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하게 부적응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관점은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참고로,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2001년 정신질환 유병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 모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전체 유병율은 28.9%이다. 군복무가 우리나라의 전체 남성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체제인 상황에서는 통계적으로 볼 때 군대 집단은 전체 남성 표집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 증상이 군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들의 감별, 예방, 인권침해실태 파악, 교육 및 치료는 단체 생활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군대환경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군복무상의 부적응은 당사자인 병사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GP총기 난사 사건으로 의가사제대한 병사들의 경우처럼 총기사고, 자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목격한 동료병사에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또한 군범죄나 폭력 및 가혹행위 등의 부적응 행동은 새로운 부적응자를 양산하게 되며 또다시 이들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요소를 역시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군복무 부적응 문제는 감별, 실태, 보상, 정책상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 세 단계에 걸쳐 군복무 부적응자의 감별의 타당성, 인권침해, 보상, 예방 및 교육정책상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 징병단계

징병 검사 시 실시하는 인성검사가 대부분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므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진단 및 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징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병무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 인성검사는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라기보다는 군대에서의 적절한 배치와 입대 후 관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도 인성검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인지하여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검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복무 부적응자를 사전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감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 군에서 통용하는 “군복무 부적응자”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감별도구와 과정이 군복무 부적응자의 사전 감별 및 예방이 가능한 적절한 감별인가 하는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대 후에도 부적응자들을 주로 이미 나타난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 결과론적인 관점에 따라 감별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예방이 필요한 대상은 감별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부적응자로 잘못 선발된 당사자의 인권침해우려는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전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분명하고 타당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존 감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별기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군 복무 단계

군 복무 상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은 부적응 자체일수도 있으나 다른 심리적 부적응 문제의 결과일수도 있으며 다른 병사의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복무 부적응 사례를 처리하는 군의 처우나 대책이 사건 처리중심에 치우쳐 있어, 부적응을 겪거나 부적응이 예상되는 병사에 대한 인간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근원적 대책이 부족하다. 현재 군에서는 관심병사제나 비전캠프, 병사부대재배치청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 및 예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책들이 군대내 부적응자들을 적절하게 처우하고 예방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므로 부적응을 바라보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사회적 관점에 입각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다. 전역 후 단계

군복무 부적응이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경우 보상은 차치하고 공상으로라도 인정되지 못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리적 문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가는 민간사회에 비해 우리나라 군은, 신체적인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심리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공상판정기준들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0여년에 걸쳐 변화한 정신진단 및 치료분야의 새로운 발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부적응, 즉 심리적인 상해를 드러내기를 꺼려하여 기록으로 잘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 받을 근거를 남기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들에 대해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관리 및 처치를 함으로써 더욱 보상을 어렵게 한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군복무 부적응자의 보상기준이나 보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보완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실태조사 연구로는 2002년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군내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2003년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5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실태조사는 군대 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의미 있는 연구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군대 내 부적응자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며 부적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부적응자의 근본 원인과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 관련 논문들로는 오현세(2001)의 「병사의 인성개발 모델 연구」, 이정일(2002) 「다면적 인성검사를 활용한 문제 장병 사전선별 및 사고예방 가능성」, 김선옥(1991) 「일부 청년기 대상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육군 병사를 중심으로-」, 홍홍표(2003)의 「군인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장성대(2003)의 「군내 폭행사과 및 자살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조연진(1996)의 「군하사관의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이길재(2000)의 「전역 직업군인의 생활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윤기현(2004)의 「군사병의 자살사고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 육군현역을 중심으로」, 김선학(2002)의 「신세대 공군장병의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군복지차원의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남궁승필(1998)의 「군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노현진(1996)의 「군대에서의 일탈에 관한 일 연구」, 안상윤(1995)의 「신세대 사병에 대한 군 지휘 통솔에 대한 연구」, 임현술(2002)의 「미국퇴역군인과 군복무관련 질환」, 그리고 FitzGerald, Braudaway, 「Leeks, Padgett, Swartz, Samter, Gary-Stephens, & Dellinger(1993)의 Debriefing : A therapeutic intervention」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 남성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거치는 군대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연구 주제 또한 다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심리학적 변인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연구는 입영, 복무, 전역 단계에 걸친 부적응자의 종합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상의 제한점, 전문성의 부재, 타당한 효과검증 절차의 부족으로 군 조직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여진다.

2.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제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부적응을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부적응자라는 표현 자체가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군복무 부적응을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적 문제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부적응을 개인이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해 살아남고 유지해가기 위한 효과적인 과정에 실패 (신응섭, 1997)” 한 것으로 보는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기존의 대다수의 군 부적응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환경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 전제함으로써 환경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군복무 부적응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군복무 부적응자란

- (1)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 (2)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 (3) 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군대가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소재에 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군 자체에서 실시해온 기존의 군복무 부적응자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관점을 취하고 있다 : (1) 군복무 부적응자들은 지휘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지휘활동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것과, (2) 따라서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군복무 부적응자들은 입영단계에서부터 제외하고 입영 후 발견시 특별관리 또는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두 관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첫째, 군복무 부적응자들이 군의 정상적인 지휘활동을 방해한다는 태도는 변화의 책임 소재를 개인에 두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군대의 체제나 군이 제공하는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는 거시적인 안목보다 개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에만 초점을 두는 미시적 관점에 주력하여 실제로 필요한 환경적 변화에 대한 노력을 덜 기울일 소지가 있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군대 부적응을 논할 수 있는 주제들로는 현시적으로 드러나는 군대의 관행이나 운영방식에서부터,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군생활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대나 군인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둘째, 만약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 군 부적응에 대한 책임 귀인이 환경보다 개인에 더 많다고 보고 있다면 그것은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기에 앞서 개인의 결함과 탓에 원인을 돌림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즉시 드러나는 대로 부적응자가 집단에 끼치는 피해에만 초점을 두기 쉽고 그것은 부적응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군은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전 감별과 사후 조치를 중요시하면서도 동시에 군병력을 최대한 유실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군대는 병력 보유의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영단계나 전역판정 단계 등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 부적응을 일으키는 개인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군대라는 환경에서 부적응을 야기하는 개인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이 앞으로 부적응자 감별 과정에서 유용한 예측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군복무 부적응에 기여하는 개인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문헌에서 그와 같은 부적응의 개인적 기여요인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일선 부대에서 군복무 부적응자들과 관련 간부들을 면담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수집한 자료는 앞으로 어떻게 군복무 부적응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이들에 대한 조치를 인권적 차원에서 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군대 내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군체제를 검토함으로써 인권론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도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II. 연구 내용

1. 징병단계: 병무청 징병실태

대한민국 육군이 추구하는 바는 '평시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승'이다. 전쟁억제력과 유사시 전승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요소인 병사들이 주어진 군 복무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게 된다면, 전쟁억제나 유사시 전승을 위한 전투력 확보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조직적이며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군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첨단 무기화에 앞서, 군이 요구하는 임무를 충실히 학습 수행할 수 있는 지적능력, 강인한 체력과 인적요소 간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소유한 인적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 군 조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인적요소인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적합성 정도를 진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명령체계 강조, 고된 군사훈련, 폐쇄된 집단생활 및 군 고유규범에 순응, 열악한 생활환경에의 적응 등 군 조직이 갖는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인적요소가 군에 유입되는 경우, 군 조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군 입장에서 보면, 군 조직과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유입될 경우 부적응병사 또는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군 사고 발생 예방에 신경 쓰느라 전투력 강화에 그만큼 소홀하게 된다.

또한 병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서는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군으로 유입되면서 부적응자로 낙인찍히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운 심리적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즉 병사의 입장에서서는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결국 부적응 병사도 군도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군 관련 사건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군 육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군 복무 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개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연구백서에서도 밝혔듯이 현역 복무 부적합자의 입대는 증가하고 있다(국방부, 2005). 따라서 이 연구는 복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병무청과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그 실태와 개선점을 조사하였다¹⁾.

가. 징병제도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남자는 19세가 되면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청소년 기본법(2006)에서 볼 때, 24세까지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다.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징병검사 대상인 이들은 신체적 발달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심리적 발달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의 특징인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정체감과 가치관이 혼란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군 생활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영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고 심리적 발달수준 상의 개인차도 성인기에 비해 매우 큰 단계에 해당한다.

현 병무청 징병검사는 신체적 발달수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 위의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감별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발달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병무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징병검사는 ‘신체검사과정’이라 통칭되고 있으며, 다음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상의 절차구분은 인적 요소의 복무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1단계 인성검사는 정신건강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2단계 신체검사는 신체건강을 판단하며, 3단계 적성분류는 군이 부여하는 임무를 충실히 학습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를 감별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무청 징병검사는 위 세단계가 모두 포함된 군복무 적합자 감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과정’으로 통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도상으로는 이처럼 모든 면이 고려되고 있으나 신체검사과정으로 통칭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병무청을 방문

1) 육군훈련소는 징병단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대 배치 이전에 해당하므로 복무단계보다는 징병단계로 구분하였다.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신체검사에 비해 인성검사를 통한 감별이 허술하며, 적성분류과정도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병역처분 결정을 추론에 의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입대자들의 경우 각종 군 사고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허약한 경우 기본적인 훈련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이나 정신지체의 경우는 군에서 요구하는 수행능력을 위해 기본적인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이차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표 1-1> 신체검사과정(병무청 홈페이지 인용)

1단계: 인성검사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2단계: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 등위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위 확정.
3단계: 적성분류	자격증, 면허증, 전공학과, 직업, 경력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4단계: 병역처분 (신체등위 기준)	중졸이상 1급 - 3급 : 현역 중졸이상 4급: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정밀하게 감별되고 있는 ‘신체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정신건강’과 ‘지적능력’에 대한 감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징병검사 관련 자료와 00지방 병무청 방문, 논산 육군훈련소 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현 감별 실태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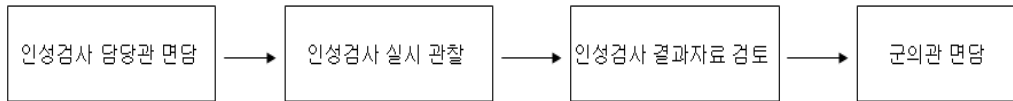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징병검사는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 징병검사에서는 신체검사에 비해 인성 검사와 적성분류단계가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다.

나. 병무청 방문조사

1) 방문조사 일시 및 절차

가) 방문조사 일시: 2006년 7월 26일

나) 절차:



2) 실태

신체검사 : 생략

지능검사 : 병무청 징병단계에서는 지능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능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신 징병검사 3 단계에서 자격증, 면허증, 전공학과, 직업, 경력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를 한다. 복무단계에서 부여되는 임무가 개인의 적성과 흥미와 일치한다면 군 복무 만족도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적성분류를 시도하는 것인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 혹은 면허증이 없고, 전공학과가 없는 고졸, 이전 직업이 없었거나,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 지능수준이 복무 부적합이 예상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다행히 육군훈련소에서는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47,629명 중 0.2%에 해당되는 100명이 귀향조치되었다. 이러한 지능수준에 따른 감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이 실제 부대 방문 하여 설문 및 면담 조사에서 경계선 지능이나 정신지체가 의심되는 병사를 목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타당한 지능검사 개발과 실시운영이 필요하다.

집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타당한 지능검사의 개발과 실시운영이 필요하다.

3) 인성검사

< 인성검사 실태요약 >

- ▶ 검사도구 : “군 인성검사” (한국 심리학회, 1998).
- ▶ 실시자 : 인성검사 담당관 중 1명.
- ▶ 피검사 규모 : 100~ 130여명 (1일 2회 실시)
- ▶ 컴퓨터를 이용한 on-line 검사,
(일부는 컴퓨터 부족으로 OMR을 이용한 지필검사.)
- ▶ 소요시간 : 30~40분 정도 (365문항)
- ▶ 결과처리
컴퓨터 자동 채점 시스템 이용,
당일 피검사 중 10%~12% 내외의 인원이 ‘정밀진단요망’으로 나오며,
이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동일 검사를 재실시 한다.
재검사 결과 ‘정밀진단요망’이 5% 정도로 감소한다.
이들에게 군의관 면담이 실시된다.

가) 인성검사 도구 : 군 인성검사

(1) 검사 소개

입영과정에서 군 생활 부적응자를 최대한 발견하여 탈락시키고, 입영 후 병사들을 지도하는 지휘자들이 병력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적응자의 심리적 특성자료를 제공하고자 국방부가 1998년에 한국심리학회에 의뢰하여 개발된 진단용 도구이다.

(2) 검사개발절차

군 인성검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개발 절차를 밟았다. 다음 4단계로 개발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비검사 문항작성을 위한 예비연구이다. 이 단계는 세 가지 하위 연구로 시행되었다. 첫째는 부적응자의 성격특성과 정신병리 및 조직 부적응 요인을 포괄하는 면접지와 검사문항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 수집 및 분석하고, 현지 부대를 방문하여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적응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작성된 검사지와 면접기록지를 사용하여 군 생활 적응군과 부적응군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부대 병사 2000명을 대상으로 집단검사를 하고, 대상자 중 적응병사와 보호관심병사를 200명씩 개별면접하였다. 그리고 육군 교도소 영창 입창자 300명을 집단검사하고 이들 중 200명을 개별면접하였다. 마지막으로 육군병원에 입원중인 정신과 환자 200명을 집단검사 및 개별면접하였다. 세 번째는 문항작성과 관련된 연구-기존 정신병리 변별검사에 대한 문헌조사, MMPI 문항 분석, 가장적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예비검사의 제작과 실시이다. 검사의 제작은 첫 번째 단계에서 수집된 면접기록지와 집단검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첫째 집단검사에서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간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고, 둘째 부적응집단의 유형을 분류하며, 셋째 분류된 유형에 따른 집단검사 문항들의 변별력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검사 구성 및 검사의 표준화이다. 최종검사는 1, 2 단계에서의 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필요한 일부 척도와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규준 작성 및 분할점을 결정하는 검사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검사채점 및 최종 판정 결정의 자동화이다. 개발된 검사의 채점, 해석 및 판정 결정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3) 검사구성

총 19개의 척도, 3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에 제시된 것처럼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표 1-2 참고>.

<표 1-2> 군 인성검사 척도 구성 내용

척도	하위 척도
타당도 척도(3개)	긍정왜곡척도, 부정왜곡척도, 희귀반응척도
임상 척도(10개)	불안 척도, 우울 척도, 신체화 척도, 정신분열증 척도, 성격장애 척도, 행동지체 척도, 범죄 척도, 공격적대성 척도, 군탈 척도, 편집증 척도
내용 척도(6개)	군생활 준비도, 집합성향 척도, 자기도피 척도, 적개심 표출, 신체증상 척도, 규범동조 및 반발 척도

(4) 부적합 판정기준 척도

군 인성검사의 결과는 세 집단으로 구별하고 있다: 정신병 집단, 신경증 집단, 범죄집단. 세 집단으로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척도 총 19개 척도 중 13개이다<표 1-3 참조>. 이 세 집단 중 복무 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범죄 집단을 제외한 ‘정신증과 신경증’ 집단의 두 집단이다. 범죄성에 관한 판별은 군교도소, 영창 및 민간교도소 재소자들에게서 나타난 검사 수치와 입영대상자의 검사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범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함은 잠재 복무 부적합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입영이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확언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증과 신경증에 더불어 ‘범죄성’을 부적합 판정기준 척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검사 개발진의 보고에 따르면, 군 인성검사를 받는 입영대상자 중 정신병과 신경증 중 어느 하나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하여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9.2%라고 보고하였다.

<표 1-3> 정밀진단요망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

집단분류	판별에 사용되는 하위 척도
정신증	3개: 정신분열증, 편집증, 회귀반응 척도
신경증	5개: 우울, 불안, 행동지체, 신체화증상, 성격장애 척도
범죄성	5개: 범죄, 군탈, 공격-적대성, 규범동조 및 반발, 적개심 표출 척도

나) 인성검사 실시

정병단계 신체검사는 비교적 감별이 용이하다 여겨진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인간 내면의 심리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량화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검사의 경우 그 감별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다(Leonard S. Feldt and Richard A. Charter, 2003). 특히 심리검사 중 인성검사 결과가 특정 목적과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경우는 무엇보다 피검자의 솔직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검자의 솔직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실시자는 피검자를 대상으로 검사동기부여 작업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병무청 인성검사는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징병 행정업무 담당자 1인이 실시한다. 검사 오리엔테이션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 검사 동기 부여, 검사의 목적, 검사 결과 용도, 비밀보장(한계) 등이 들어있지 않았다.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실시자의 신중함,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피검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성태제, 시기자, 2005). 그러나 병무청에서 관찰한 검사 실시자의 태도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었다.

또한 인성검사가 제공되는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on-line 검사와 일부 OMR을 이용한 지필검사였다. 인성이라는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검사라 하더라도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검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 집단에 동일 형태의 검사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Anastasi, 김완석 및 손명자 역, 1995).

마지막으로 365문항으로 구성된 인성검사에 반응하는 전체 시간은 30~40분이지만, 검사 도중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 와서 다시 이어 응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번거로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점결과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된 피검자들은 곧바로 동일한 365문항의 인성검사를 다시 해야했다.

검사실시자는 1차 검사에서 ‘정밀진단요망’에 해당되는 인원이 전체 피검자의 10%~12% 정도이고, 연이은 2차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5%로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1차 검사 결과에서 10%~12%정도가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되는 것은 원래 군 인성검사 개발진이 보고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5%로 감소한다는 것은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피검자가 좋게 보이려는 긍정왜곡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병무청 논리는 1차 검사에서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된 자가 2차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난 경우는 피검자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보이려는 부정왜곡을 했다는 것이다. 의도적 부정왜곡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부적합한 자가 긍정왜곡으로 ‘정상’ 판정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2차 인성검사 결과에서도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된 경우 군의관과 면담을 하게 된다. 5분~10분가량의 면담동안 군의관이 피검자에게 부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면접시 이용되는 Mental Status Exam 2와 고교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보고에 의존하였다.²⁾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실시자, 실시환경, 해석자 등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2) 이전 병력확인(진단서나 치료기록을 갖고 왔는지?), 환각, 환청, 망상이 있는지? 약물복용여부, 언어구사능력을 통한 정신지체 가부 확인, 학교성적(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4) 병무청 감별도구 및 절차상의 문제점

가) 검사도구 문제

- 복무 부적합과 관련된 하위척도 제외문제

인성검사에서 복무 부적응병사 특성과 상관이 높은 내향성과 가정문제 척도가 단지 정신병 측면과 상관이 작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제외되었다.

본 실태조사의 병사면담 과정에서 일반병사들은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소심한, 내성적인, 소극적인, 비사교적인’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간부들은 부적응의 원인으로 ‘가정문제’를 단연 1위로 손꼽았다. ‘이혼’, ‘편부모가정’, ‘경제적 빈곤’, ‘부모불화’ 등 입대 전에 어떤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는가가 복종경향, 끈기/자제력, 감각추구/모험성향, 자아강도, 군무이탈 등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내향성과 가정문제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는 있는 문항이 통계처리기법 상의 문제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 ‘정밀진단요망’ 판정에 사용되는 기준 하위척도의 문제

군 인성검사의 큰 장점에 해당하는 군 관련 특수내용척도(군생활 준비도, 집합성향, 자기도피, 적개심표출, 신체증상, 규범동조 및 반발 척도) 결과를 판정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군 인성검사 총 19개 척도 중 부적합 판정에 사용되는 척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증 척도 3개와 신경증 척도 5개로 총 8개 척도이다. 군 인성검사는 다른 MMPI, SCL-90-R과 같은 진단용 검사와 차별되는 군 조직관련 내용척도를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군생활 준비도척도; 집합성향 척도; 자기도피 척도; 적개심 표출척도; 신체증상 척도; 규범동조 및 반발 척도.

이들 하위척도들은 징병단계에서 명확한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잠재부적응 병사를 감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들이다. 그러나 잠재부적응 병사를 예측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 ‘정밀진단 요망’ 판정 도출 방법의 부적절성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도출하는 판별분석의 경우 하위척도 점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문항점수를 사용함으로써 오판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한국 가이던스 & 대구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2005.).

군 인성검사를 통해 정상과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하는 것은 판별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판별분석은 분류하고자 하는 집단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된다. 집단 판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 요인들 중 영향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성태제, 시기자, 2005). 따라서 군 인성검사의 경우 ‘정신증 집단’, ‘신경증 집단’, ‘범죄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했기 때문에,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판별분석을 위해 판별함수를 도출할 때, 안정된 결과와 해석의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해 하위척도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 인성검사는 하위척도 점수가 아닌 개별 문항점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불안정해지거나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한국 가이던스 & 대구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2005).

검사 개발진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정신병 판정 시, 정상이 정신병으로 오판될 확률은 6.8%이나, 정신병 환자가 정상으로 오판될 확률은 16.3%이었다. 또한 신경증 판정 시, 정상이 신경증으로 오판될 확률은 4.4%이나, 신경증 환자가 정상으로 오판될 확률 27.5%나 되었다. 마지막으로 군 사고 잠재성과 관련되는 범죄성을 판정 시, 정상이 범죄집단으로 오판될 확률이 9.5%이고, 범죄집단이 정상집단으로 오판될 확률 27%로 높았다. 즉, 정밀 진단요망 집단이 정상으로 오판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나) 검사실시자 문제

군 인성검사는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훈련이 부족한 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긍정왜곡반응 우려가 있다.

피검자는 검사 목적 이외의 다양한 가외요인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된다. 따라서 특히 인성검사의 경우 검사실시자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다양한 장소, 피검자, 실시자에 상관없이 검사가 해당 구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검자가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실시자는 검사환경과 진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병무청 인성검사 실시에서는 검사 실시자의 권위적인 태도, 명령, 그리고 “거짓반응시 본인만 손해”라는 지시사항을 반복함으로써 피검자들이 긴장하고 인성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응하게 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검사 실시자가 검사실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 검사 실시 환경의 부적절성

산만한 검사 실시 환경에 의해 검사수행이 방해되고 있다.

인성검사 피검자들은 인성검사 실시 도중에 효율적 시간관리라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게 된다. 검사 도중 신체검사를 받고 돌아와 다시 남은 부분을 실시해야 하는 이런 절차는 피검자들의 검사반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검사 장소는 충분히 밝은 조명과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환기가 잘 되며, 검사에 몰입하기 위해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병무청 인성검사 실시장소는 주변의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반수가 신체검사를 갔다 왔다 하는 산만한 조건이다.

이렇게 적절한 검사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사자가 신중한 언행과 진지한 태도로 검사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입영대상자 당사자와 군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검사실시자의 태도와 분위기가 결여되었을 때, 흔히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지가 나올 수 있다. 일반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통용되고 있는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군, 잘못이 용인되지 않는 군을 연상시키는 병무청 군 인성검사 실시 환경은 피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제공되지 않았다.

라) ‘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 검사 재실시 문제

검사결과에 신뢰도와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 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날에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하는 절차는 부적절하다.

동일 심리검사를 반복 실시하게 될 경우, 연습효과, 피로효과가 있게 되므로, 검사결과에 왜곡을 피하기 위해 반복검사는 최소 2주일 이상의 시간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병무청 인성검사에서는 한 두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피검자에 의한 왜곡이 아니라 부적절한 검사 실시로 인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병무청에서 처음 ‘정밀진단요망’ 으로 분류된 피검자가 12% 정도에서 한 시간 남짓 차이를 두고 5%로 떨어졌다. 또한 “재검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갑니다” 라는 실시자의 말은 솔직하게 응답한 피검자들이 긍정왜곡반응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이러

한 여러 정황을 볼 때, 병무청 인성검사 단계는 실시과정상 문제점이 있다.

마) 검사결과 해석 관련 문제점

병무청 정신과 군의관의 인성검사 판독력이 낮고, 검사 활용의지도 낮다. 검사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 전문가가 병무청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감별방식이 단순하며, 군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감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2차 검사 실시 결과까지도 ‘정밀진단요망’ 이 뜬 입영대상자만을 정신과 군의관이 면담한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00 병무청 정신과 군의관은 3년째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재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성검사의 종류와 자신이 판독하는 검사를 군 인성검사가 아닌 KMPI로 오해하고 있었다.

군의관은 “스스로 검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잘 모르고, 정밀진단요망 해당자 면담시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 고 하였다. 정신과 수련과정에서 의사들은 진단용 심리검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지 않고 있다. 주로 약물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주로 담당하고, 그들이 작성해 준 평가 보고서 내용은 약물처방과 치료경과 추이를 살피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추세다. 따라서 정신과 군의관은 심리검사 특히 군 인성검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대체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MMPI 이외의 진단용 인성검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집단적 취향 때문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감별에 타당성을 가진 검사가 무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병무청 군의관의 역할은 군 인성검사결과뿐 아니라 입영대상자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 군의관은 컴퓨터 검사결과에 주로 의존하고 면담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렇듯 검사 전문 인력이 없어 적절한 부적응 감별도 어렵고, 나아가 잠재 부적응자 예

측도 어렵다. 최근 발생한 군 사고 중에는 ‘관심병사’가 아닌 식별되지 않았던 잠재부적응 병사에 의한 것도 포함되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다.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된 병사는 그 결과가 부대로 첨부되어 해당간부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나머지 정상집단의 결과는 전달되지 않는다. 부적응, 잠재부적응을 100% 감별·예측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근사치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감별 예측을 위해 단일 검사 하나에 매달리는 것도 무리이지만,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사고의 사전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별방식이 일률적이고 단순하다. 정신과 병원이나 외부 치료기관은 치료 전에 환자의 전반적인 심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Full battery 검사를 실시한다³⁾. 성격구조, 대인관계 양상, 기본적 정서 특성, 문제해결능력, 현재 전반적 기능수준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면담을 통해 결과를 정밀화한다. 민간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징병 단계에서 전 피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 인성검사 결과에서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된 자들을 정밀진단을 위해 외부 민간병원으로 보내지 말고 병무청 내에서 엄격하고 총체적인 감별진단과 세밀한 면담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바) 지능검사 미실시의 문제

육군훈련소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귀향조치되고 있는 인원들이 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아무런 지능검사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정신지체나 경계선 지능수

3) Full battery에 포함된 것은 인성검사(MMPI), 지능검사(K-WAIS), 잉크반점 검사(Rorsch), 주제통각검사(TAT), HTP, 밴더도형 검사(BGT)이다. 즉,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그리고 지능검사로 구성된다.

준에 있는 자들을 감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 군 생활에서 요구하는 기본 지능수준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 다른 보통이상의 지능 수준을 가진 병사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라는 것은 신체장애나 질환자에게 고된 육체적 훈련을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이다.

2. 징병단계: 육군훈련소 감별 실태

가. 육군훈련소 감별 절차

현역 입대의 경우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목표는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민간인을 군인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복무 적합자인지를 감별하기 위한 입소대대에서의 일주일의 제외하면, 본격적인 군인화 교육은 4주 동안 진행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입소대대에서 이루어지는 감별검사이다. 자세한 감별 일정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표 2-1 참조>.

<표 2-1> 입소대대 감별 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입소대대 입영	1일차(월요일) : 입영행사, 피복지급, 간이 신체검사 2~3일차 : 신체검사, 혈액검사, 인성·지능검사, 특기심사 4일차(목요일) : 교육연대 교육입소 (신체검사 합격자) ※ 신체검사 불합격자 : 논산병원 정밀검사 후 이상시 귀가 판정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무청 징병검사에 비해 군복무 적합자를 선별하는 과정의 타당성이 큼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신체건강, 정신건강, 인지능력이라는 삼각구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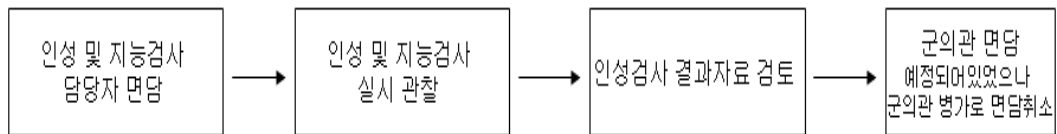
복무 부적합자 감별과 관련된 2~3일차에 행해지는 인성과 지능 검사에서 ‘정밀진단요망’ 또는 ‘열등’ 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군 논산병원에서 정밀신검을 받게 된다. 여기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입영날로부터 5일 이내 귀가조치 판정을 받게 된다(국방부 훈령 제 590호, 2006. 2. 1). 이들은 주로 정신증, 정신지체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육군훈련소 방문조사

1) 방문조사 일시 및 절차

가) 방문조사 일시: 2006년 9월 13일

나) 절차:



2) 실태

연구진이 육군훈련소 방문 당시에는 정신건강 감별도구로 KMPI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0월 1일부터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 인성검사’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미 폐지된 검사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기존 검사인 KMPI에 대한 짧은 설명과 군 인성검사로 대체된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⁴⁾. 반면 육군훈련소 군 인성검사의 결과를 병무청 결과와 비교하고, 육군훈련소에서만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객관적인 지능검사와 그 결과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앞서 연구진에게 제공된 자료에는 검사개발 절차와 검사의 신뢰도·타당도, 부적합 판정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한 자료가 없어 충분한 검사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4) KMPI는 1993년 류명수에 의해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문항일부를 군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 최근까지 육군훈련소, 1·3군 보충대, 2군 향토사단에 입영하는 장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결과가 이상으로 나온 경우 국군병원에서 재신검을 실시케하고 부적격자는 귀향조치, 나머지 이상자(중경증)의 검사결과는 신병교육대장을 경유, 야전분대 중대급으로 전달하여 지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MMPI의 일부문항의 어휘 수준의 수정은 법적 문제(지적소유권 문제) 유발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고유의 인성검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MMPI를 표절했다는 망신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소견에 따라 군에서 그 사용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2006년 10월 1일자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그 사용이 폐지되었다.

가) 인성검사 및 지능검사 실시 절차

< 인성검사 및 지능검사 실태 요약 >

- ▶ 도구 명칭 : 인성검사 - KMPI, 지능검사- 지능검사
- ▶ 실시자 : 교육 담당 상사 1명과 대위 1명.
- ▶ 피검자 규모 : 200 ~ 300여명 (주 1회 1일 2회 실시)
- ▶ 반응방식 : 두 검사 모두 OMR을 이용한 지필검사.
- ▶ 소요시간 : 군 인성검사 40~50분, 지능검사 40분 총 120~130분 가량
- ▶ 결과처리: 두 검사 모두 자동 프로그램화된 OMR카드 리더기로 채점
인성검사의 경우 2006년 10월 4회 실시 총인원과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된 결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나) 인성검사 도구 : '군 인성검사(한국심리학회, 1998)'

군 인성검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것은 병무청 징병검사 단계에 설명되어 있다
<표 1-2참고>.

다) 지능검사 도구: '지능검사'

(1) 검사 소개

육군 훈련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육군훈련소 지능검사는 우수자원 중심의 세분화 전문화된 특기병 양성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잠재능력 발굴이 필요하여 1995년 군 사업 일환으로 연구 개발되었다(1996년 1월에 참모총장 승인 후 시행). 지능 검사

개발은 연구비 850만원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개발 책임자는 예비역 군사연구원 1인이었다. 그 외 참여자 구성은 서울소재 주요대학 대학원 졸업생(1명), 미국 유학생(1명) 그리고 한국지능개발원이 연계하여 제작하였다.

(2) 검사 구성

총 6개 영역, 1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한 소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참고>.

<표 2-2> 지능검사 구성내용

영역	설명
언어어휘력	25 문항, 배점: 2점, 제한시간: 4분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글을 바르게 이해하며, 생각을 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 문장구성 및 언어 어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 구성
이해기억력	20문항, 배점: 1.5점, 제한시간: 2분 기억할 수 있는 한정된 상황의 내용을 기억하게 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상황을 제 상기시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 구성
수리응용력	20문항, 배점: 1점, 제한시간: 10분 단순한 수리계산 및 실제 응용처리 문제를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지를 알아보는 수리응용 문제와 고차원적 수학적 논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 구성
공간시각력	20문항, 배점: 1.5점, 제한시간: 4분 평면, 입체 등 다양한 모형 등의 3차원적 공간위치개념에서 상호비교 평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비교 판별할 수 있는 공간 시간적 인지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 구성
상황추리력	10문항, 배점: 0.5점, 제한시간: 6분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실제 적용 가능한 상황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제반 지적요소를 종합 활용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추리 능력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 구성
과학통찰력	15문항, 배점: 1점, 제한시간: 6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상황 중에서 기초과학 분야의 기본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사항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즉 과학적 사고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로 구성

(3) 부적합 판정기준

훈련소 지능검사 판정기준은 <표2-3>에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능검사로써 타당성을 인정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웨슬러 지능검사(WAIS)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화 • 타당화 작업을 거쳐 한국판 웨슬러 지능검사(K-WAIS)를 병원, 민간 상담 및 심리연구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능등급은 7등급으로 되어 있다(중앙교육연구소, 1995). 반면 육군 훈련소 지능검사는 4등급으로 구분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K-WAIS와 군 지능검사 지능등급에 대한 비교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3> K-WAIS와 군 지능검사 지능등급 비교

지능지수	K-WAIS 분류	군 등급적용
130이상	최우수	상(121이상)
120~129	우수	
110~119	보통상	중(101~120)
90~109	보통	하(70~100)
80~89	보통하	
70~79	열등	
69이하	아주 열등	열등

지능검사 결과 69점 이하 ‘열등’ 으로 분류될 경우 귀향판정의 참고자료가 되고, 의무대 정신과 군의관에게 통보되어 면담을 통한 2차적인 정밀진단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능등급 ‘하(70이상)’ 이상의 경우는 157개 군사특기 분류시 지능점수를 반영하게 된다. 일정 이상의 백분위 지능점수를 요구하는 군사특기 수를 다음에 표에 제시한다<표 2-4 참고>.

<표 2-4> 일정 이상 백분위 지능점수를 요구하는 군사특기 수

비율	계	5%	10%	15%	20%	25%
특기 수	157	1	86	29	40	1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실시된 지능검사 결과 4등급별 해당인원 규모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표 2-5참고>.

<표 2-5> 4등급별 해당인원 규모 ('05년 1월 ' 06년 9월)

검사인원(명)	평균	69점 이하	70~100	101~120	121점 이상
47,629	103.1	2,011	16,752	21,518	7,328

지능검사 결과에 대해 군의관은 어떤 판독기준을 가지고 정밀진단 의뢰가부를 결정하는가?, 의뢰 안하기로 결정된 '열등' 으로 분류된 자들은 이후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가?, 이들의 결과가 부대로 전달되는가?, 전달될 때 면담 군의관의 소견은 첨부되는가?, 첨부된다면 어떤 내용들인가? 등은 앞으로 자세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위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실시된 결과 중 2,011명, 즉 검사 받은 총 인원의 4.5%가 '열등' 으로 분류되었고, 2,011명 중 100명 즉 5.0%가 귀향조치 받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원본과 메뉴얼을 요청하였으나, 보안상 외부 유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자세한 정보는 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능검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개발 절차, 척도 신뢰도와 타당도 정보는 아직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꼭 필요한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검사가 지능을 측정하는데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훈련소 지능검사 소개에 한계가 있었다.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인원 2425명 중 190명 즉 7.8%가 ‘정밀진단요망’으로 분류되어 훈련소 정신과 군의관과의 면담에 임하게 되었다. 이 인원은 국군 논산 병원으로 정밀진단 의뢰된 인원과 최종판정에 대한 상세자료는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표 2-6에서 대각선 처리). 이 자료에만 의존한다면 군 인성검사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20일 동안, 인성검사 결과로 인한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3명이었다. 즉 7급 재검에 해당하는 귀향조치 3명 통계치는 정밀진단요망 분류군의 1.6%에 해당하며, 총 2425명의 0.1%에 해당한다. <표 2-6>에서 병무청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 통계자료와 비교 제시해 보았다. 아직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인성검사가 실시된 것이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두 기관에서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여겨진다. 앞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인성검사의 타당화 연구는 지속해야 한다.

<표 2-6> 병무청과 논산 육군훈련소의 인성검사 결과비교

기관 (기간)	인성검사			정밀검사					
	검사인원 (A+B)	정상 (A)	1차 이상 (B+C+D)	정상 (C)	이상(2-3차)				
					계(D)	3급 (현역)	4급 (보충역)	5·6급 (면제)	7급 (재검)
병무청 (2003. 1. 1 ~ 현재)	779,779	636,364	143,415	141,142	2,273	222	541	1,207	303
	%	86.6	18.4 (100)	18.1 (98.4)	0.3 (1.6)	0.03	0.07	0.15	0.04
논산 육군훈련 소 (2006. 10. 1~ 현재)	2425	2235	190						3
	%	92.2	7.8 (100)						0.1

한편, 지능검사의 경우 육군훈련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 자료의 부재로 비교작업은 불가능하다. 연구진이 방문했던 논산 육군훈련소 2005년 이후 지능검사 결과만을 제공하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실시된 총인원과 ‘열등’으로 분류된 결과는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7> 지능검사 결과

검사명	기간	총 인원(명)	‘열등’ 분류 인원(명)	귀향조치(명)
지능검사	2005. 1. 1~ 2006. 9. 30	47,629	2,011	100
			총 인원의 4.2%	부적합 인원의 5.0%

<표 2-7>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인원 47,629명 중 2,011명 즉 4.2%가 ‘열등’으로 분류되어 훈련소 정신과 군의관을 통해 진위, 심각성에 대한 2차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인성검사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1명 중 국군 논산 병원으로 정밀진단 의뢰된 인원 에 대한 상세자료를 아직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다음의 내용들을 추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4) 육군훈련소 감별도구 및 절차상의 문제점

지능검사의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무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감별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상담심리사 1급이면서 병원 임상수련을 마친 검사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기본권 상담관을 감별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경계선 지능의 병사에 대한 지휘관리 지침 없이 부대로 유입되고 있다.

• 지능검사 타당화 연구의 부재

지능검사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능검사 결과는 귀향조치에 중요한 참조자료다. 지능을 측정하는 타당한 검사인가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본다.

- **정확한 감별을 위한 전문가 부족**

병무청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춘 감별 인력이 부족하다. 인성검사와 더불어 지능검사 결과상 기준 이하의 경우 정신과 군의관 면담이 이루어진다. 연구진이 방문한 날 군의관이 병가라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신과 군의관이 없는 경우 내과외과가 대신 업무를 봐준다고 했다. 타과 진단을 얼마나 타당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있는 기본권 상담관은 상담심리사 1급이면서 병원 임상수련을 마친 검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군의관과의 협력 작업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적 자원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 **경계선 지능 병사에 대한 지휘관리 지침 부재**

경계선 지능의 병사에 대한 지휘관리 지침없이 부대로 유입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 경우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은 떨어진다. 응용력,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안내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가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어떤 기준 이상의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경계선 지능 병사와 함께 근무하는 선임병이나 간부는 병사 개인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육군훈련소의 군의관들은 사전 감별에 따른 귀향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정신적 문제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감별이 어렵고, 귀향조치를 내리는데 소극적인 태도여서 감별과 감별에 따른 조치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병무청이 군 자원 확보를 위해 면제인원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해 하는 현실과 맞물려 일선 간부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복무단계 : 병사

이 연구에서는, 군복무 부적응집단 병사들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⁵⁾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결과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는 병사들로, “현재 상당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병사” 들로 해석하였다.

cf. 유의미한 반응이란 9개 척도와 GSI 중 1개 이상에서 성인 일반 남성 100명 중 상위 2. 5명에 해당하는 주관적 증상과 고통을 호소한 것을 말한다.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신체장애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처럼 아예 입영되지 않았어야 한다. 군생활에 필수적인 단체생활이 어려운 개인에게 군복무를 하라는 것은 신체장애나 질환자에게 고된 훈련을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

5) 군의 관심병사나, 군 법령상의 군복무부적응병사와 실제 대상이 겹칠 수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정의는 연구를 위해 조작적 정의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연구진의 의견으로는 “상당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들” 로 볼 것을 추천한다.

둘째, 입영되었더라도 복무 중 부적응이 발생했을 경우 적시에 식별, 관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복무 중 부적응이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는 이 연구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개인적 소인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그러나 개인적 소인이 있다는 것이 곧 군이라는 환경적 소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학업으로 인해 정서적 성숙과 정체감 형성을 청소년기 후기,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들어서야 시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군은 강제징집, 열악한 내무환경, 격리, 엄한 규율, 계급 절대주의, 병영 악습 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양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루아침에 가족과 떨어져 군조직의 가장 말단 계급으로 입대하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 외상(trauma) 경험에 가깝다.

심리적 외상(trauma)은 신체적 해나 죽음의 위협 등의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후 공포·무기력 등 정서적 반응이 동반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으로 정의된다(DSM-IV). 즉, 자연재해나 강도, 강간, 사고, 학대, 언어폭력 등 외부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 개인이 받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다⁶⁾. 현재 군 입대 경험 자체가 외상 경험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외상이냐 아니냐는 당사자의 주관적 지각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군 입대가 외상경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외상적 경험은 증상을 수반한 심리적 상해를 입힌다(Foa & Rothbaum, 1997). 외부와 차단되어 군에서 혼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인권침해 경험 또는 목격은 반복적인 외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의도성이 있는 외상의 경우일수록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러한 후유증 중 가장 나쁜 것 중 하나가 다른 이의 외상경험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Allen, 1995). 따라서 부적응 병사 입장에서나 군의 입장에서 개인적 소인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단 입영을 시킨 이상, 군 생활 중 나타난 심리적 상해를 적시에 식별하고 치료와 보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신체 상해와 마찬가지로 심리 상해를 입은 병사가 적시식별, 관리, 치료를 받기

6) trauma와 stress는 차원이 아닌, 연속선상의 구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Allen, 1995).

못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부대에서 군복무 부적응 병사가 제대로 식별되고 있는지, 제때에 적절한 관리와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부적응 병사의 인권문제에 해당한다.

셋째, 현재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시각은 ‘차단’ 및 ‘처리’ 라는 용어사용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병사에게 복무 중 부적응이 발생할 경우, 병 상호간에는 낙오자, 간부에게는 ‘짐’ 으로 낙인찍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⁷⁾. 소위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관심병사제는 오히려 하나의 인권침해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적응 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식별 근거에 의해 부적응 병사로 오인될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병사에게 다시 심리적 상해를 입히게 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게 동료와 선임병, 간부들이 어떤 개입과 대우를 하는가는 부적응 병사의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

넷째, 건강했던 청년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을 등을 앓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군이 적시 전역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이들의 인권문제에 해당한다. 법과 제도상에서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해 적합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심리적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까다로운 전역 절차와 비전문적인 규정은 고스란히 부대 간부들이 이들을 전역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휘 부담을 낳게 된다. 또한,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해 전무한 보상실태는 이들의 심리적 상해는 상해가 아니라 피병이나 나약함으로 여기는 것이 정당하다는 시각을 군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군 복무 부적응 병사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 마련하는 것은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문제에 해당한다.

7) 연구 2의 7) SCT문항의 내용분석 결과 참고:

많은 병사들이 ‘군대는 부적응 병사를 _____.’ 의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을 때 ‘짐’ ‘쓰레기’ ‘낙오자’ ‘병신’ ‘정신병자’ 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군 부적응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한 현 시점⁸⁾에서 징병·관리·법과 제도상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군내에 없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진들이 조사한 바로는 징병, 복무, 전역 단계에서 군 부적응 관련 전문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연구진들이 다양한 군 관계자 즉, 국방부 고위간부, 국방부 실무 간부, 사단장, 인사장교, 기타 간부, 군의관 등을 면담한 결과 최근 군이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적응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으며,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군은 군인의 시각과 경험에 의해 작성한 지침을 아래로 하달할 뿐, 정작 군 부적응 병사 개인과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간부들의 어려움과 의견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이해는 부재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군 부적응 문제는 해당 병사 개인과 해당 간부 개인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중요하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성급한 제도개선은 악순환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실태,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실태, 그리고 인권침해와 군 부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군 복무 부적응이라는 현상을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이 장에서는 군복무 부적응 실태와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의 연구는 다음 2 가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총기난사 및 자살·탈영 등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군대 사고와 관련된 군복무 부적응 실태 및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군복무 부적응자의 비율·유형·원인, 이들의 인권침해 정도·유형, 그리고

8) 2006년 8월부터 9월 2달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군 사고 소식들.
2006-08-10 Y이병 무장탈영사건; 2006-08-24 이병추락사고; 2006-09-10일 Y이병 총기자살시도 사건; 2006-09-11 H이병 자살사건; 2006-09-21 K상병 총기사고; 2006-09-22 J일병 자살사건; 2006-09-26 K이병 자살사건

군복무 부적응관련 제도에 대한 병사들의 태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군복무 부적응에 대한 실태연구는 이후 군복무 부적응에 대한 군대 및 사회의 인식과 관련 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군복무 부적응을 군대라는 체계와 개별 군인의 심리적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설명함으로써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NGO들의 활약과 군대의 장병 기본권확립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군대내 인권침해발생빈도는 수치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김광식, 정길호, 김혜인, 신범철, 2004). 그러나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악성사고 발생가능성은 아직도 내재하고 있다(국방부, 2006).

즉,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따돌림, 성희롱, 사적 명령 등 몇 가지 유형의 인권침해를 막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군복무 부적응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움을 나타낸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문제의 근본원인을 변화시키지 않고 드러나는 증상만 고치려 할 경우 해당 증상의 발생빈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대치증이 발생한다. 그 예로 군대의 인권침해유형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새로운 종류가 개발됨으로써 여전히 부적응을 낳을 소지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제 0 군단 사령부, 2006).

그러므로, 군 부적응자 문제와 이들의 인권침해문제는 몇몇 문제를 가진 병사들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병사들과 군대체계 즉 군대 조직구조상의 문제가 서로 상호 작용한 결과 드러난 하나의 증상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이처럼 심리사회적 관점은 새로운 병사세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군대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성찰,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모두 맞추므로써 군 부적응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4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단기용역연구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 위에서 제시한 심리 사회적 접근의 유용성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촉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개인변인으로 입대 전 적응척도를 개발하고, 군대 체계변인으로는 인권침해정도를 사용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로 측정한 병사들의 부적응 정도와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 인권모델을 설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었다.

첫째, 병사들이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5년 국방연구원 설문 자료에 따르면 병사의 32%가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솔직하지 않은 이유는 부대 분위기 염려·신분노출 염려·귀찮아서 등이었으며, 개선방안으로 목적과 결과 활용의 순수성 보장, 솔직한 응답여건조성, 설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 과정과 절차의 전문화를 들었다.

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병사들이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다음 노력들을 하였다.

(1) 응답자들에게 부대 비리를 캐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연구 목적을 강조하였다. (2) 앞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동생이나 아들을 상기시켜 설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3) 이병·일병 집단, 상병·병장 집단, 간부 집단이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4) 비밀보장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하였다. (5) 설문지에 솔직한 정도를 묻는 문항을 넣음으로써 응답하는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관여하도록 유도하고, 솔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 부대 병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실태정도를 판단함으로써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7) 응답자들을 특정방향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지 않기 위하여 질문순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질문항목과 부정적인 질문항목을 적절히 혼합하였다. (8) 자신에 대한 질문보다 심리적 방어수준이 낮은 ‘타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한 간접질문 문항’을 추가하고 자신에 대한 질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병사개인변인, 군대변인, 현재의 적응수준, 군복무 적응과 관련된 입대 전 요소 등을 포괄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병사들의 개인특성으로는 입대 전 적응 수준을 알아보는 예측척도 개발을 시도하였다. 예측척도는 군 인사장교·군의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Benbenishty, Zirlin-Shemesh, & Kaplan(1993)의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군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단힌 공간, 엄격한 규율, 계급에 따른 명령복종이 강조되는 군대 상황에서 선임병이나 간부들의 “비합리적인 명령”이나 “은근한 압력 (예,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위협적 가해가 암시되는)” 이 병사들의 인권침해 및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선임병이나 간부의 명령이 비합리적일 때와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기존 인권침해 유형과 구별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모든 병사들에게 표준화된 90문항의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실시하여 군복무 부적응자와 잠재 부적응자 현황에 대한 타당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SCL-90-R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차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문항이 MMPI보다 적으면서도 임상 증상을 거의 모두 포괄한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입대 전 군 이미지”, 그리고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현재 군 생활의 의미” 등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셋째, 설문 응답양식을 그렇다-아니다 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유형을 묻는 2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 6점 Likert식 척도상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각 질문 항목들이 연속변수로 취급되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료 분석 시 기술적 분석 뿐 아니라, 부적응 정도 · 부적응 원인 · 부적응자의 인권침해정도 · 입대 전 적응수준 ·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 · 군생활의 의미 등에 대해 상관 분석을 하였다. 또한, 매개변인과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사용하여,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심리사회적 관점의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연구 방법

1) 참여자

2006년 9월 7일부터 2006년 9월 22일 사이에 육군 5개 사단 총 7 개부대의 병사 940명, 간부 14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부대는 전방 2부대, 후방 1부대, 최전방 4부대였으며,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해안부대, 철책부대 등 부대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병사들의 학력과 계급은 <표 3-1>과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3-1> 설문응답 병사들의 학력

학력	빈도	%
고졸(중퇴포함)	176	18.7
전문재졸	268	28.5
대졸	490	52.1
대학원이상	3	.3
Total	937	99.7

<표 3-2> 설문응답 병사들의 계급

계급	빈도	%
이병	161	17.1
일병	253	26.9
상병	299	31.8
병장	226	24.0
Total	939	99.9

2) 설문 도구

가)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설문지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팀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군 인권실태 연구(2005), 장병기본권 지침서(2006),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리적 특성 분석(1997),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 연구(2004), 군 생활 연구(2005), Zeidner & Endler(1996) 등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은 모두 25문항이며 부적응유형과 인권 침해유형을 묻는 2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Likert 6점 척도(1 = 전혀 없다, 6 = 매우 많)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설문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가를 묻는 2문항,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 1문항, 군 부적응 정도 · 영향 · 유형 · 이유 · 대처 관련 13문항, 군 부적응자에 대한 군의 조치 · 보상 · 제도 4문항, 인권침해 정도 · 영향 · 유형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군 관련 전문가들과 현역 병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병사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와 군대용어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나) 군복무 부적응 예측 척도

학생생활기록부를 활용하자는 군 관련 자문가들의 제언,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인 이스라엘의 Benbenishty, Zirlin-Shemesh, & Kaplan(1993)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군복무 부적응자를 예측할 수 있는 예비 척도를 개발하였다. Benbenishty, Zirlin-Shemesh, & Kaplan(1993)에서 제시한 입대전의 학교적응, 대인관계, 행동문제, 정신건강이라는 4개 요인에 근거하여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과 상담심리전문가이면서 박사과정생인 연구자 3인의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80개의 초기문항을 작성한 뒤, 중복문항 · 문항표현 · 요인별구성 등을 고려하여 42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42개의 문항은 최종 척도가 아니며,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문항들이다.

각 문항은 모두 6점 Likert 척도(1 = 전혀 아니다, 6 = 매우 그렇다)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병사 94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 α 는 .85 였으며, 요인별 Cronbach α 는 정신건강 = .76; 학교생활 = .86; 사회적 관계 = .88; 행동 문제 = .59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척도를 개발할 예정이나, 이 연구에서는 예비 척도 그대로를 전체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군복무 부적응자의 비율 및 유형, 그리고 간부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Derogatis 등(1976)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목록 검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어판 SCL-90-R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장점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차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문항이 MMPI보다 적으면서도 환자의 증상을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SCL-90-R은 9개 증상차원,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한다.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동안 경험한 증상정도에 따라 전혀없다(0점)부터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Likert 척도상에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증상차원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불안증, 우울증,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 적대감이다. 90문항으로 구성된 SCL-90-R의 9개 각 척도값과 GSI값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척도가 한국 성인 남자 기준을 넘어설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각 척도들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2~.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절차

후방, 전방, 최전방으로 구분하여 연구팀이 선정한 5개 사단 7개 부대를 방문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국방부를 통해 각 사단의 협조를 얻고, 개별적으로 부대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설득한 뒤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방문 조사하였다. 연구팀은 심리학 교수 1인, 상담심리전문가인 박사급 연구원 3인, 그리고 일정에 따라 석사급

연구원 4 ~ 7인으로 구성되었다. 부대마다 군 복무 부적응자 실태 설문지, 군복무 부적응 예비척도 SCL-90-R, 학력문항, 계급문항 순으로 합쳐진 총 16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보다 자유로운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병·일병집단과 상병·병장집단, 간부 집단이 서로 분리된 장소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병사들에게 “군대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이나 여러분의 직접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비밀보장을 강조하였다. 설문지길이를 감안하여 절반까지 실시하도록 한 뒤 간식을 주고 약 5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설문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총 설문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이 끝난 후에는 병사들과 개인 또는 집단 면담을 하였다. 면담대상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병사들이나, 부적응병사이거나, 연구진들이 즉석에서 면담을 요청하여 허락한 병사들이었다. 면담시간은 50분 정도였으며, 면담내용은 해당 병사에게 비밀보장을 약속한 뒤, 동의를 구하고 녹음이나 필기를 하였다.

4) 분석

총 956부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 자료 12부를 삭제하고, 솔직함을 묻는 문항에서 매우 솔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료 4부 역시 전체 자료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병사자료의 경우 총 940부 였다. 기술적 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은 AMOS 4.0을 사용하였다.

나. 결과

부적응 원인과 인권침해 유형을 묻는 2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실태조사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3-3>.

<표 3-3>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문항 (1=전혀없다, 매우낮다; 6=매우많다, 매우높다)	전체 $M(SD)$ ($N = 940$)	부적응 $M(SD)$ ($N = 103$)	적응 $M(SD)$ ($N = 837$)
1.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할 것인가	5.47 (.76)	5.38 (.86)	5.47 (.78)
2. 입대전 군대 이미지	2.80 (1.26)	2.42 (1.24)	2.86 (1.25)
3. 군대생활의 의미	4.01 (1.20)	3.23 (1.40)	4.11 (1.13)
4. 나의 군대생활 어려움	3.19 (1.30)	4.32 (1.26)	3.05 (1.23)
5. 다른 병사들의 군대생활 어려움	3.46 (1.24)	4.20 (1.09)	3.36 (1.23)
6. 나의 군대생활 어려움이 내게 미치는 영향	2.90 (1.17)	3.87 (1.14)	2.78 (1.11)
7. 다른 군 부적응 병사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	3.08 (1.36)	3.67 (1.46)	3.00 (1.34)
8. 군 사고 소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2.68 (1.43)	3.17 (1.59)	2.61 (1.41)
9. 다른 병사들의 군복무 부적응 이유 (1 = 군대문제, 6 = 내문제)	3.51 (1.53)	2.60 (1.59)	3.63 (1.49)
10. 나의 군복무 부적응 이유 (1 = 군대문제, 6 = 내문제)	3.38 (1.42)	2.69 (1.60)	3.47 (1.37)
12. 부적응 시 부대에 도움요청 의사	3.47 (1.44)	2.90 (1.50)	3.55 (1.42)
13. 부적응 시 가족·외부기관에 도움요청 의사	3.00 (1.44)	3.17 (1.52)	2.99 (1.44)
14.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의 영향	3.90 (1.37)	4.63 (1.19)	3.80 (1.37)
15. 비합리적인 명령 정도	4.16 (1.32)	4.93 (1.07)	4.06 (1.32)
16. 군 부적응자에 대한 군대조치의 효과성	3.24 (1.34)	2.42 (1.18)	3.35 (1.33)
17. 군 부적응 의병전역제도의 필요성	3.90 (1.50)	4.46 (1.61)	3.82 (1.47)
18. 군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시 보상여부	1.67 (.99)	1.43 (.88)	1.69 (1.00)
19. 군 부적응 의병전역시 군보상체계 활용 의사	3.66 (1.78)	3.74 (1.90)	3.65 (1.77)
20. 다른 병사들의 인권침해 정도	3.14 (1.47)	4.09 (1.48)	3.02 (1.43)
21. 다른 병사들의 인권침해가 내게 미치는 영향	3.42 (1.40)	3.89 (1.53)	3.36 (1.38)
22. 나의 인권침해 정도	3.24 (1.42)	4.09 (1.26)	3.13 (1.41)
23. 나의 인권침해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	3.25 (1.47)	4.20 (1.47)	3.13 (1.43)
25.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 했는가	2.64 (2.32)	5.53 (.64)	5.36 (.75)
33-74. 입대 전 적응수준(예측척도 42문항)	98.56 (21.29)	117.16 (23.57)	96.24 (19.81)
75-164. 군 부적응 증상(SCL-90-R의 총점)	48.16 (43.34)	136.21 (45.65)	37.24 (27.96)

1) 응답의 솔직성

병사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할 것인지와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했는지의 두 문항을 실태설문지 앞, 뒤에 넣었다. 두 문항의 평균이 각각 5.47점(상당히 솔직할 것이다)와 5.37점(상당히 솔직했다)이고, 두 문항 상관 값이 .54($p < .001$)로, 병사들이 매우 솔직하게 응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4> 응답자의 솔직성

척도	설문 전		설문 후	
	빈도	%	빈도	%
1: 전혀 솔직하지 않다	0	0	0	0
2: 대체로 솔직하지 않다	9	1.0	3	.3
3: 별로 솔직하지 않다	6	.6	7	.7
4: 약간 솔직하다	82	8.7	91	9.7
5: 상당히 솔직하다	280	29.8	361	38.4
6: 매우 솔직하다	563	59.9	476	50.6
전체	940	100.0	938	99.8

2) 군복무 부적응 병사 실태

병사들 10명 중 1명 이상이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증상은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 등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며, 부적응 이유로는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등 주로 군대요소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군복무 부적응 정도는 ‘군생활의 어려움’ 문항과 SCL-90-R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 군 생활의 어려움

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한 병사는 전체 938명 중 42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5.0%를 차지하였다. 특히,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응답한 병사는 124명으로 전체의 13.2%에 해당하였다. 즉, 병사 10명 중 1명의 비율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 군 생활의 어려움

척도	부적응 집단		적응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6	5.8	114	13.6	120	12.8
2: 거의 없다	2	1.9	157	18.8	159	16.9
3: 별로 없다	10	9.7	226	27.0	236	25.1
4: 약간 있다	38	36.9	261	31.2	299	31.8
5: 상당히 있다	29	28.2	63	7.5	92	9.8
6: 매우 많다	18	17.5	14	1.7	32	3.4
전체	103	100.0	835	99.8	938	99.8

주변에 군대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들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병사들의 58.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81.6%, 적응집단 병사들의 55.7%가 주변에 군대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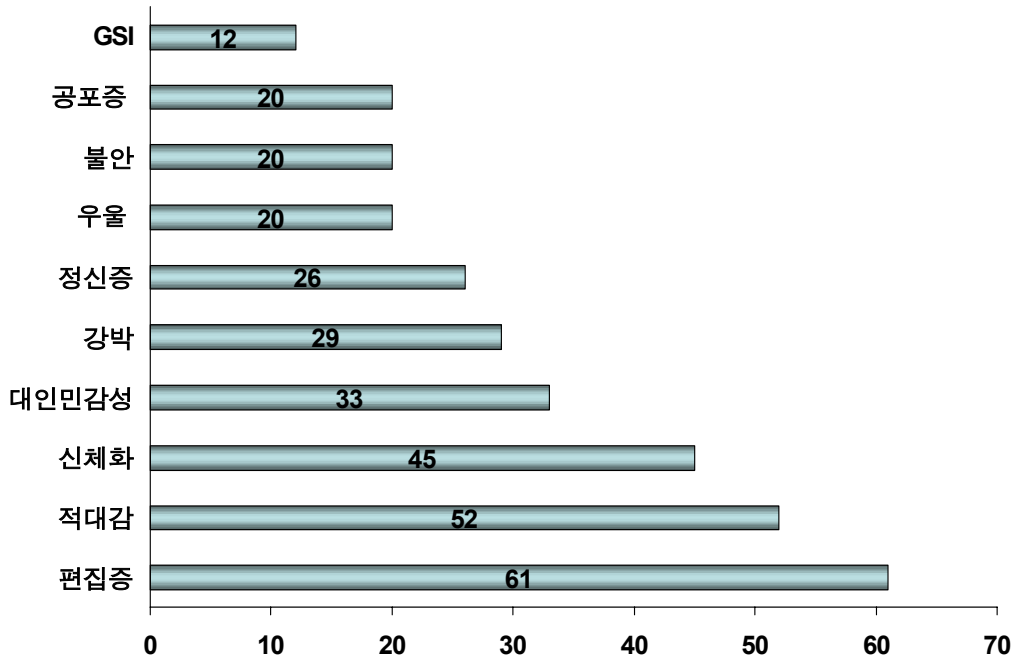
<표 3-6> 다른 병사들의 군 생활 어려움에 대한 지각

척도	부적응 집단		적응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1	1.0	88	10.5	89	9.5
2: 거의 없다	8	7.8	115	13.7	123	13.1
3: 별로 없다	10	9.7	167	20.0	177	18.8
4: 약간 있다	46	44.7	363	43.4	409	43.5
5: 상당히 있다	26	25.2	77	9.2	103	11.0
6: 매우 많다	12	11.7	26	3.1	38	4.0
전체	103	100.0	836	99.9	939	99.9

나) SCL-90-R(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

90문항으로 구성된 SCL-90-R의 9개 각 척도값과 GSI값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척도가 한국 성인 남자 기준을 넘어설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각 척도별로 유의미한 병사의 숫자는 <표 3-7>에 제시하였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증상은 편집증이었고, 그 다음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의 순으로, 신체화를 제외하면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이 반영된 증상이 매우 높았다.

척도별 중복을 제외한 부적응 병사숫자는 전체 940명중 103명(10.96 %)으로 10명중 1명 이상의 비율로 부적응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SCL-90-R의 총점인 GSI와 위 군생활의 어려움 문항간의 상관은 .42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p < .001$). 응답자 당 척도 기준값들을 초과하는 해당 척도 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아래 증상척도별 빈도의 총합은 부적응 집단 크기 103보다 큰 318이다. 이것은 유의미한 증상을 보이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평균 3개의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3-1] 군복무 부적응자의 증상유형

<표 3-7> 군복무 부적응자의 증상 유형 (N =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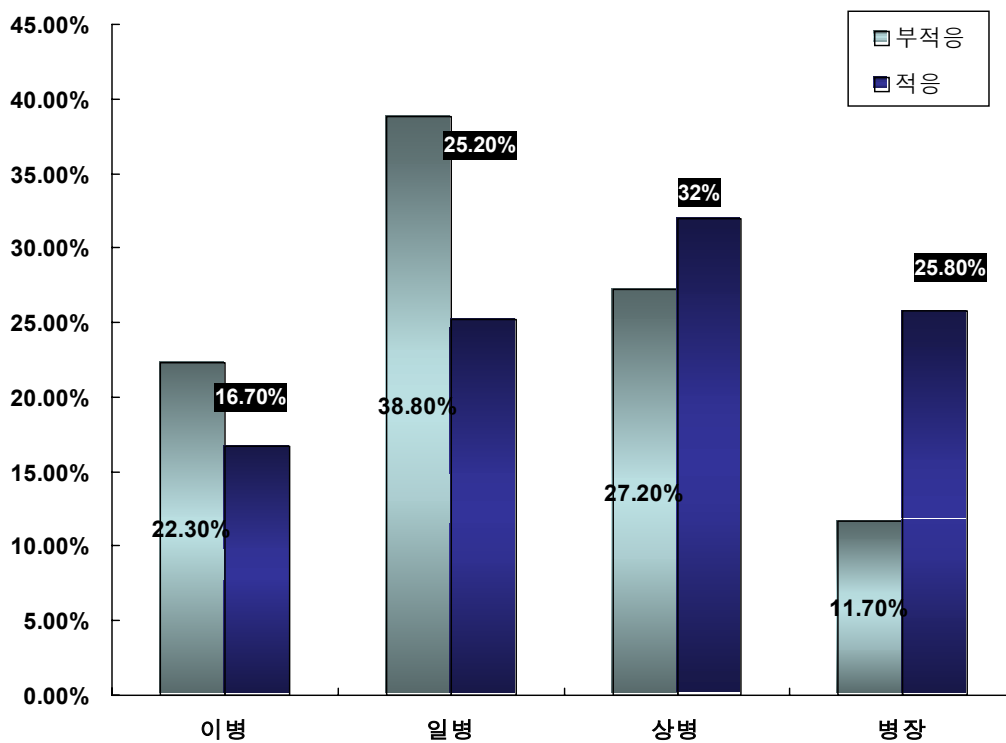
	신체화	강박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	GSI	총계
빈도	45	29	33	20	20	52	20	61	26	12	318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의 계급은 이병과 일병이 63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하며, 상병은 28명 27.2%, 그리고 병장은 12명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하였다. 반면, 적응집단 병사들의 계급은 이병과 일병이 41.9%, 상병은 32%, 병장은 25.8%였다.

<표 3-8> 집단별 계급 및 계급별 비교

계급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빈도	%	빈도	%
이병	23 (14.1%)	22.3	140	16.7
일병	40 (15.9%)	38.8	211	25.2
상병	28 (9.6%)	27.2	268	32.0
병장	12 (5.0%)	11.7	216	25.8
Total	103 (11.0%)	100.0	836	99.9

* (%)는 각 계급 총 인원 중 부적응으로 분류된 인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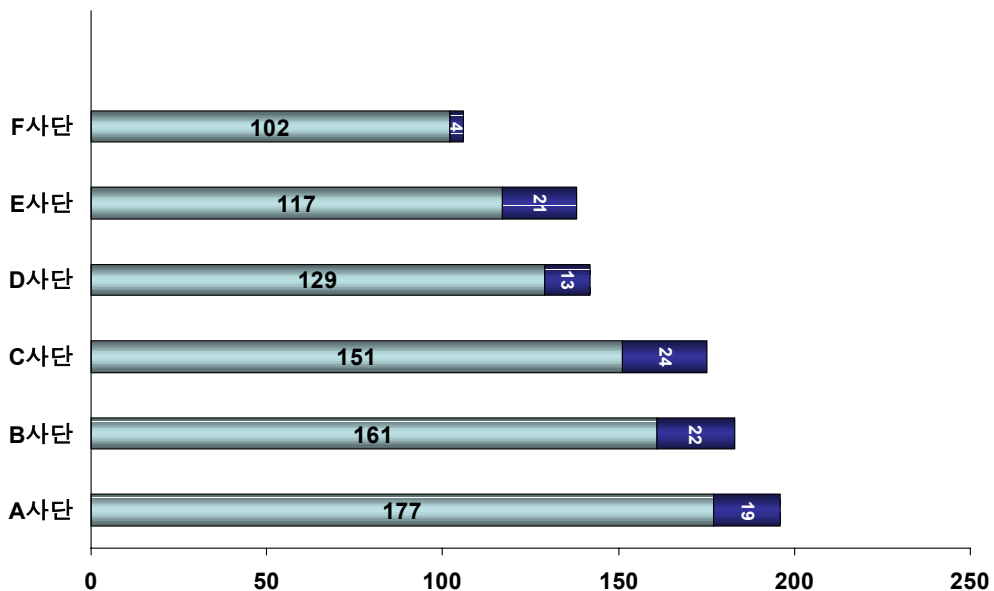


[그림 3-2] 집단별 계급

수시감별을 통한 보직이동 및 전역처리를 활성화하고 있는 부대의 경우
부적응 집단 병사 비율이 타 부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단별 부적응 증상 병사를 [그림 3-3]에 제시하였다. 사단별 복무 부적응 증상 병사
숫자는 부대마다 그 비율이 3.9% ~ 17.9%로 다양하였다. 부대의 부적응 증상 병사 비율
이 3.8%인 부대는 부대 특성상 인사장교와 간부들 면담결과 수시 감별·보직 이동 및 전
역처리 등 즉각적인 개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시 감별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모든 부적
응 증상이 있는 병사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되기에
엄격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부대에서도 임상적 증상이 뚜렷한 병사가 4명이 있었다
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림 3-3] 사단별 복무 부적응 증상 병사의 숫자

다)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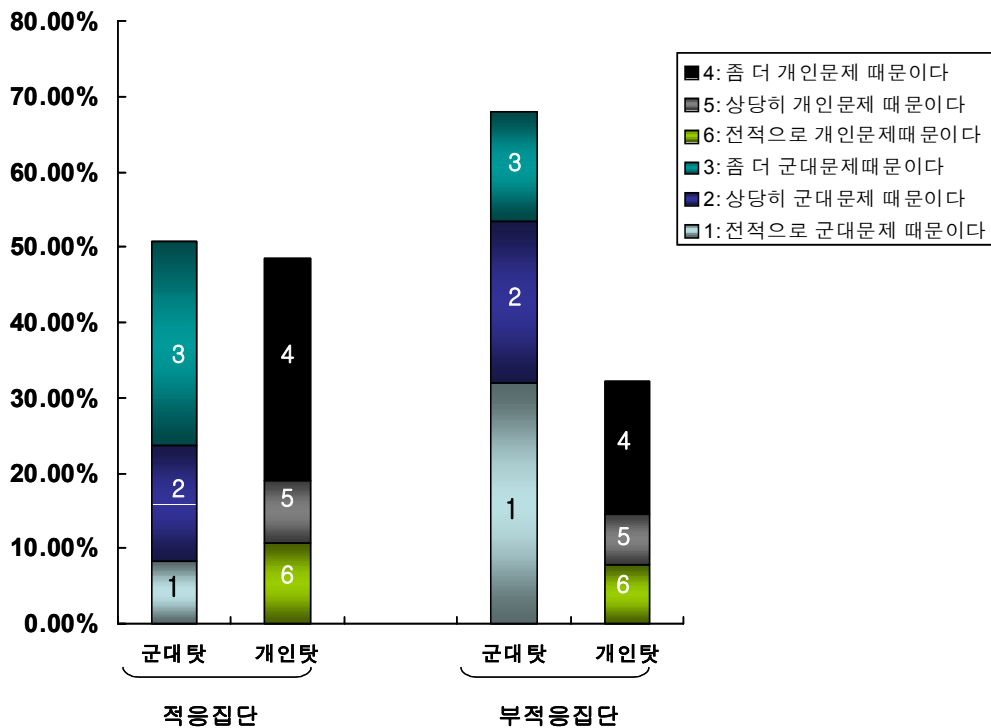
병사들에게 14개의 군생활의 어려움 원인들 중 3개를 고르도록 하였다. 부적응집단은 부적응의 원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 을 제일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순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적응집단의 경우는 ‘제대 후 진로부담’ 을 제일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은 ‘비합리적 군대문화’, ‘열악한 근무환경’, ‘선임병과의 갈등’ 을 보고했다. 부적응집단과 적응집단 간에 군복무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모두 비합리적 군대문화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꼽았다. 자세한 수치는 <표 3-9>에 제시하였다.

<표 3-9> 군 복무 부적응의 원인 유형

	부적응집단 (N = 103)	적응집단 (N = 837)	전체 (N = 940)
부당명령 및 처벌	29	199	228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47	290	337
열악한 근무환경	18	265	283
사생활 보장어려움	17	153	170
보직 불만족	15	60	75
고된 훈련	30	124	154
선임병과의 갈등	49	242	291
비자발적 입대	10	153	163
가정문제	12	117	129
여자친구 문제	9	154	163
제대 후 진로 부담	22	344	366
성격문제	16	166	182
많은 암기 및 교육	7	63	70
성문제	4	22	26
총계	285	2,352	2,637

또한, 군대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군대문제 때문인지 개인문제 때문인지를 물었을 때,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68.0%, 적응집단 병사들의 51.1%가 군대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군대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적으로 군대문제 때문이다’는 반응은 부적응집단 병사들이 32.0%인 반면, 적응집단은 8.4%에 불과하였다. [그림 3-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적응집단과 적응집단 간 자신의 군대생활의 어려움 원인을 ‘군대문제’로 귀인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적응집단 병사들은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자신들의 군복무 부적응이 군대문제 때문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림 3-4] 자신의 군대생활 어려움 이유(군대문제-개인문제)

참고로, 자신이 아닌 다른 병사들이 군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적응집단에서 75.7%와 적응집단에서 45.8%가 타 병사의 어려움을 군대문제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집단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군대문제로 귀인하는 경향보다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군대문제로 귀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응집단에서는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병사 자신의 문제라고 귀인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표 3-10> 다른 병사들의 군대생활 어려움 이유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빈도	%	빈도	%
1: 전적으로 군대문제 때문이다	32	31.1	73	8.7
2: 상당히 군대문제 때문이다	27	26.2	129	16.5
3: 좀 더 군대문제 때문이다	19	18.4	225	20.5
4: 좀 더 개인문제 때문이다	9	8.7	247	25.6
5: 상당히 개인문제 때문이다	7	6.8	69	14.7
6: 전적으로 개인문제 때문이다	9	8.7	89	13.9
총계	103	100.0	836	99.9

3)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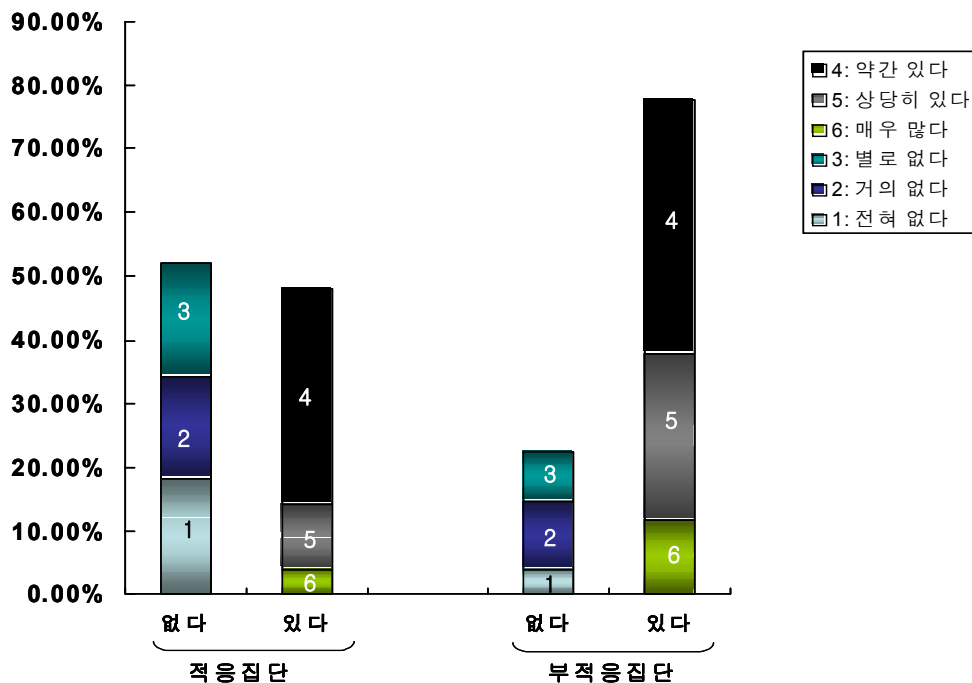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권침해의 직·간접적 영향도 더 많이 받았다. 인권침해 유형에서는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 병사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병사들이 보다 솔직한 반응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인권침해라는 표현 대신, ‘부당한 대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그 예를 들었다.

부당한 대우의 예: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 기타

가) 인권침해 경험

자신이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전체 병사들의 51.3%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3-5]에서 집단별로 보면, 부적응집단에서는 77.7%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적응집단에서는 48%였다. 독립집단 t 검증 결과, $t(938) = 6.55$ 로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적응집단이 적응집단에 비해 인권침해 직접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자신의 부당대우 경험

또한, 전체 병사들의 45.5%가 주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병사를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표 3-11>. ‘상당히 많다’와 ‘매우 많다’로 보고한 경우도 전체 병사의 17.4%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부적응집단의 경우 주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병사를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전체 72.7%에 달하였다. 반면 적응집단의 경우는 41.8%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자료들은 여전히 군대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11> 다른 병사의 부당대우 목적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7	6.8	165	19.7	172	18.3
2: 거의 없다	13	12.6	156	18.6	169	18.0
3: 별로 없다	8	7.8	166	19.8	174	18.5
4: 약간 있다	30	29.1	231	27.6	261	27.8
5: 상당히 있다	26	25.2	84	10.0	110	11.7
6: 매우 많다	19	18.4	35	4.2	54	5.7
total	103		837		940	

나) 인권침해의 직접영향 및 간접영향

인권침해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을 때, 전체 병사들의 50.5%와 적응집단병사들의 53.4%가 인권침해의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부적응 집단의 병사들의 26.4%가 인권침해의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2>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의 영향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병사의 비율은 적응집단 병사가 3.7%인데 반해, 부적응집단의 병사들은 18.4%로 거의 6배에 달했다.

<표 3-12> 인권침해의 직접영향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9	8.7	163	19.5	172	18.3
2: 거의 없다	5	4.9	113	13.5	118	12.6
3: 별로 없다	13	12.6	171	20.4	184	19.6
4: 약간 있다	24	23.6	252	30.1	276	29.4
5: 상당히 있다	32	31.1	104	12.4	136	14.5
6: 매우 많다	19	18.4	31	3.7	50	5.3
total	102		834		936	

또한, 타인의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적응집단 병사들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표 3-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적응 집단 병사들의 65%, 적응집단 병사들의 54.5%가 타인의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14.6%, 적응집단 병사들이 3.9%로 3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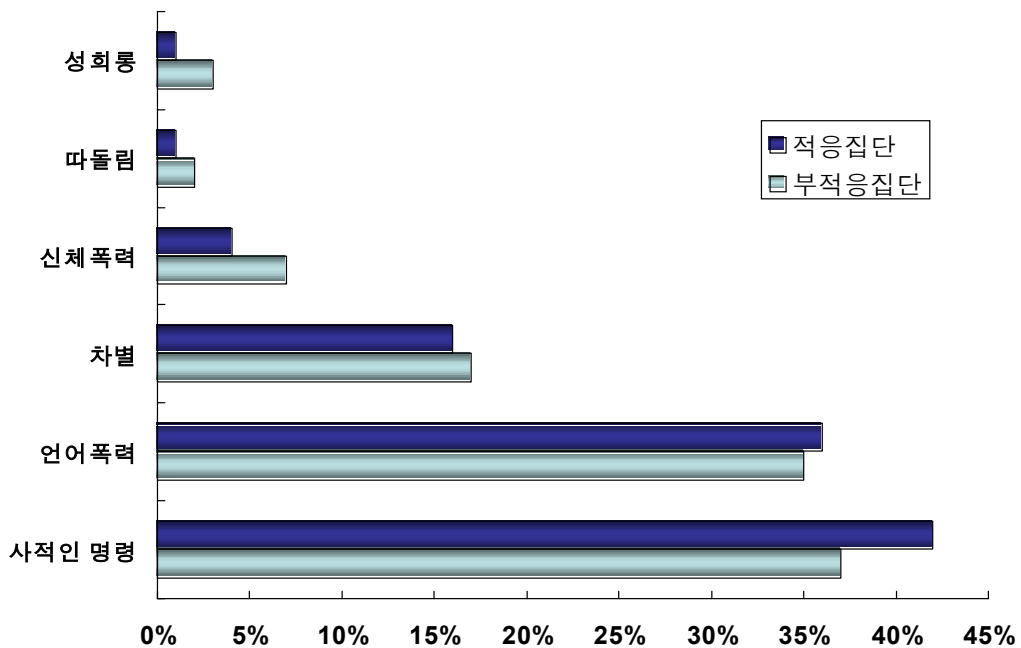
<표 3-13> 인권침해의 간접영향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12	11.7	114	13.6	126	13.4
2: 거의 없다	7	6.8	117	14.0	124	13.2
3: 별로 없다	17	16.5	143	17.1	160	17.0
4: 약간 있다	26	25.2	296	35.4	322	34.3
5: 상당히 있다	26	25.2	127	15.2	153	16.3
6: 매우 많다	15	14.6	33	3.9	48	5.1
total	103		831		934	

다) 인권침해 유형

병사들이 받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전체 병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침해유형으로 ‘사적인 명령’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언어폭력, 차별이 많았다.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비교에서도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의 빈도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3-6]을 살펴보면 적응집단 병사들은 사적 명령이나 언어폭력의 비율이 더 많은 반면, 부적응집단 병사들은 차별, 신체폭력, 따돌림, 성희롱의 비율이 조금씩 더 많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적응과 부적응 증상 병사들의 인권침해 유형

<표 3-14> 인권침해 유형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가능)

유형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사적인 명령	55	357	412
언어폭력	52	307	359
신체폭력	10	31	41
따돌림	3	7	10
성희롱	4	8	12
차별	25	136	161
전체	149	846	995

이제까지의 인권침해 관련 결과인 인권침해경험과 유형, 직접·간접적 영향을 종합할 때,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은 비슷하다. 그러나,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인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그 영향도 더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약 11.7%가 신문·TV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총기사건, 자살, 탈영 등 군대 사고소식이 자신에게 영향을 상당히 준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적응집단 병사들의 2.5%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표 3-15>의 이러한 결과 역시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나 군사고 소식에 매우 예민해 있음을 반영한다.

<표 3-15> 대중매체를 통한 군 사고 소식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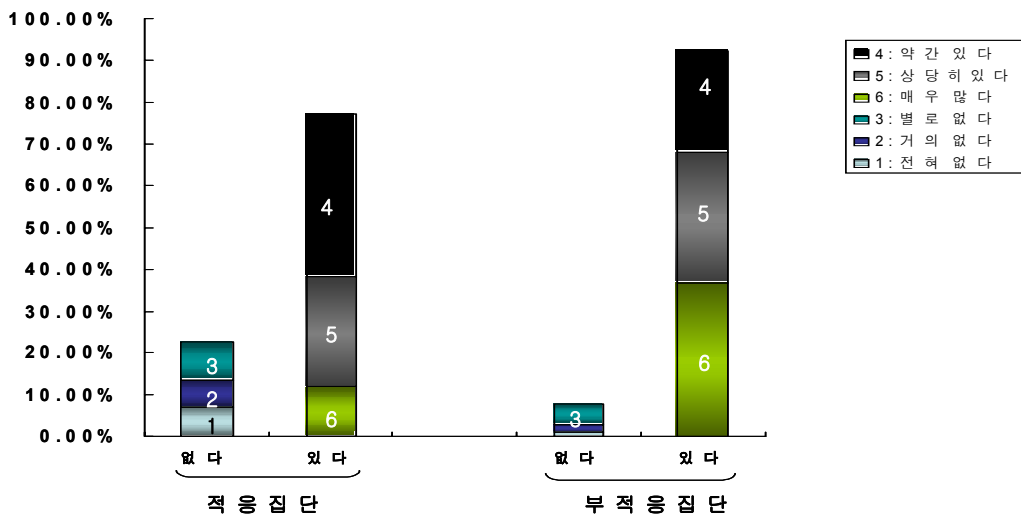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20	19.4	258	30.8	278	29.6
2: 거의 없다	16	15.5	158	18.9	174	18.5
3: 별로 없다	26	25.2	166	19.8	192	20.4
4: 약간 있다	20	19.4	179	21.4	199	21.2
5: 상당히 있다	9	8.7	55	6.6	64	6.8
6: 매우 많다	12	11.7	21	2.5	33	3.5
total	103		837		940	

라) 비합리적 명령 및 은근한 압력

병사들 대부분은 선임병이나 간부의 명령이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으며,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부적응 집단 병사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그동안의 군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단힌 공간, 엄격한 규율, 계급에 따른 명령복종이 강조되는 군대 상황에서 선임병이나 간부들의 비합리적인 명령이나 은근한 압력이 병사들의 인권침해 및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선임병이나 간부의 명령이 비합리적일 때와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기존 인권침해 유형과 구별하여 질문하였다.

비합리적 명령문항의 전체 평균은 4.16으로 병사들 대부분이 군대의 조직운영방식인 선임병이나 간부의 명령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적응 집단병사들의 77.3%,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92.2%가 선임병이나 간부의 명령이 비합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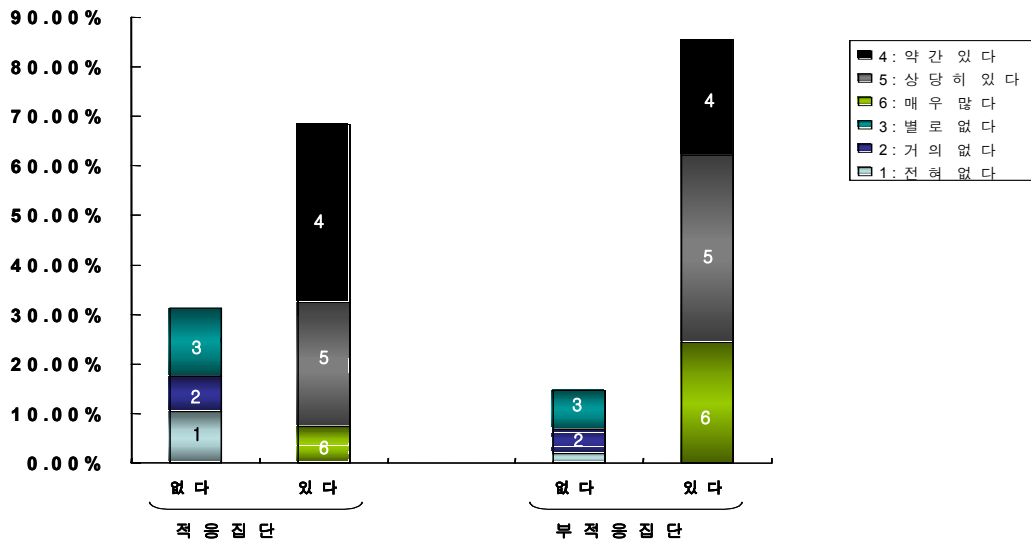


[그림 3-7] 선임병이나 간부의 비합리적 명령

<표 3-16> 선임병이나 간부의 비합리적 명령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1	1.0	60	7.2	61	6.5
2: 거의 없다	2	1.9	54	6.5	56	6.0
3: 별로 없다	5	4.9	74	8.8	79	8.4
4: 약간 있다	25	24.3	327	39.1	352	37.4
5: 상당히 있다	32	31.1	220	26.3	252	26.8
6: 매우 많다	38	36.9	100	11.9	138	14.7
total	103		835		938	

또한,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 병사들의 70.2%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85.5%, 적응집단 병사들의 68.3%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역시, 매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병사의 비율은 부적응병사 집단이 24.3%, 적응병사집단이 7.4%로 부적응 병사집단이 적응병사 집단의 3배가 넘었다.



[그림 3-8]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주는 영향

<표 3-17>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주는 영향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2	1.9	86	10.3	88	9.4
2: 거의 없다	5	4.9	61	7.3	66	7.0
3: 별로 없다	8	7.8	115	13.7	123	13.1
4: 약간 있다	24	23.3	301	36.0	325	34.6
5: 상당히 있다	39	37.9	208	24.9	247	26.3
6: 매우 많다	25	24.3	62	7.4	87	9.3
total	103		833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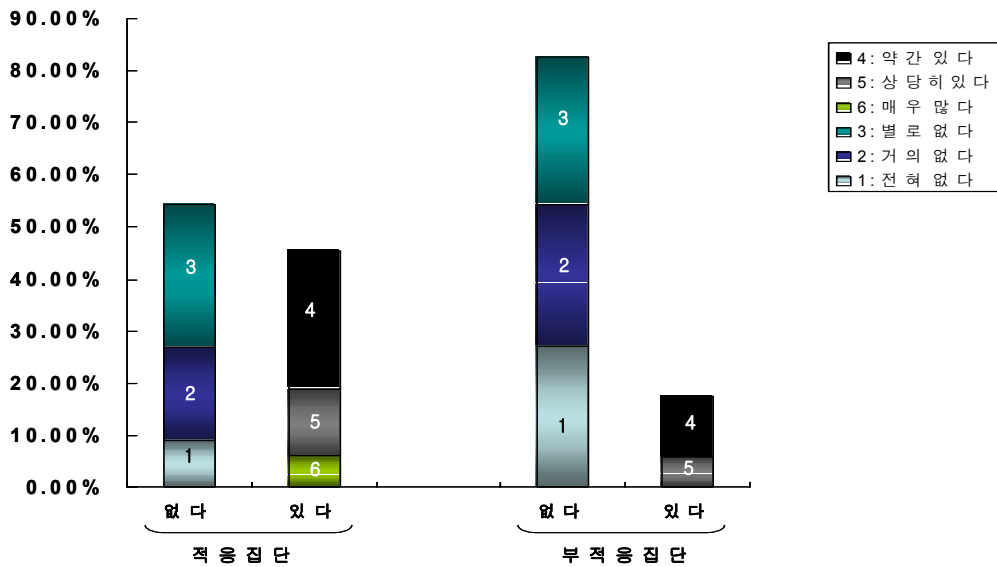
4)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다.
 특히, 간부들이 적시에 식별해야 할 부적응 병사들 대부분이
 부대조치는 비효과적이며, 부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병사 10명 중 8명의 비율로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의 효과성 지각

병사의 57.6%가 군생활의 어려움을 보고했을 때의 부대 조치는 비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지각은 군생활의 고충이나 부적응이 심각할 경우에 분대장이나 간부, 지휘관에게 자신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부대의 사전식별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82.6%가 부대 조치의 효과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 참여한 부적응집단 병사들 중 상당수가 만족할만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대 측에 자신의 고충이나 부적응을 호소하지 않은 결과 부대입장에서는 병사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잠재부적응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9]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의 효과성

<표 3-18> 부대조치의 효과성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28	27.2	76	9.1	104	11.1
2: 거의 없다	28	27.2	150	17.9	178	18.9
3: 별로 없다	29	28.2	230	27.5	259	27.6
4: 약간 있다	12	11.7	221	26.4	233	24.8
5: 상당히 있다	6	5.8	107	12.8	113	12.0
6: 매우 많다	0	0	51	6.1	51	5.4
total	103		835		938	

나) 부대 도움요청 의사

복무 부적응집단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휘관이나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표 3-19>에 제시한 바와 같이 66%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병사도 22.3%나 되었다.

식구들이나 군대 외부기관에 도움 요청할 의향을 물었을 때도, <표 3-19>에서 볼 수 있듯이 56.2%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19.4%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3-19> 부대 내 도움요청 의사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23	22.3	166	19.8	106	11.3
2: 거의 없다	22	21.4	153	18.3	130	13.8
3: 별로 없다	23	22.3	214	25.6	238	25.3
4: 약간 있다	19	18.4	175	20.9	227	24.1
5: 상당히 있다	9	8.7	85	10.2	152	16.2
6: 매우 많다	7	6.8	43	5.1	85	9.0
total	103		837		938	

전체적으로, 부적응집단 병사들은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지휘자나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식구들이나 군 외부기관에의 도움 요청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적응 병사 대다수가 부대 내 도움요청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점은 앞에서 군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부대조치가 비효과적이라는 반응과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0> 가족 및 외부기관 도움요청 의사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20	19.4	166	19.8	186	19.8
2: 거의 없다	19	18.4	153	18.3	172	18.3
3: 별로 없다	19	18.4	214	25.6	233	24.8
4: 약간 있다	26	25.2	175	20.9	201	21.4
5: 상당히 있다	12	11.7	85	10.2	97	10.3
6: 매우 많다	7	6.8	43	5.1	50	5.3
total	103		836		939	

다)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의 필요성

전체병사들의 68.8%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가 필요하다고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응집단 병사들의 67.8%,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77.7%가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적응집단 병사들 13.3%의 두 배가 넘는 부적응 집단 병사들의 33%가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3-21>.

<표 3-21>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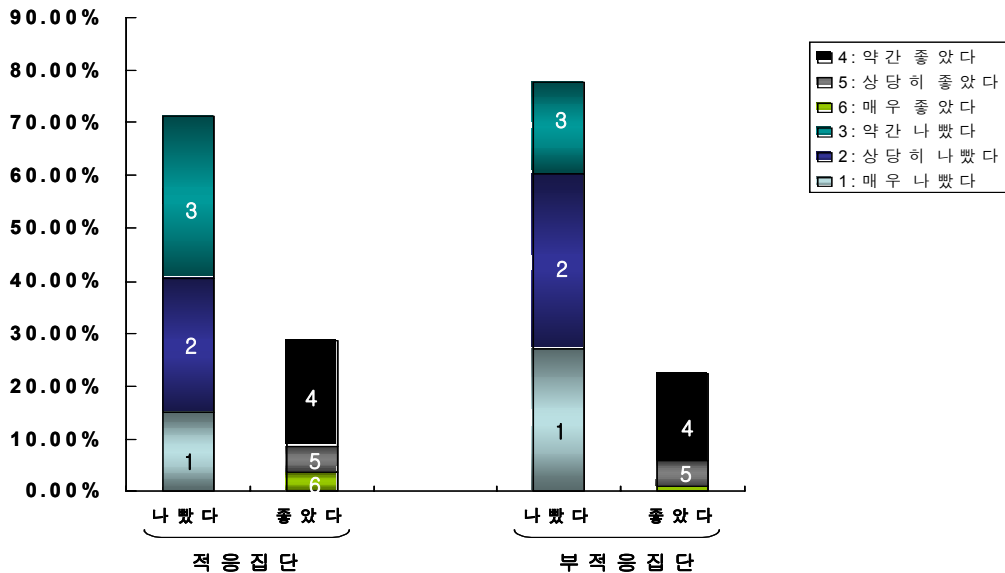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10	9.7	94	11.2	104	11.1
2: 거의 없다	6	5.8	67	8.0	73	7.8
3: 별로 없다	7	6.8	108	12.9	115	12.2
4: 약간 있다	18	17.5	298	35.6	316	33.6
5: 상당히 있다	28	27.2	158	18.9	186	19.8
6: 매우 많다	34	33.0	111	13.3	145	15.4
total	103		836		939	

5) 복무 부적응 관련 기타문항 결과

병사들 대부분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는 낮은 반면,
 현재 군 생활의 의미는 높았다.
 부적응 병사 집단은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입대 전 군 이미지와 군생활의 의미가 더 낮았다.

가)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

전체 병사들의 입대 전 군에 대한 이미지는 평균 2.73으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전체 병사의 72.1%가 입대 전 군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입대 전 군 이미지가 매우 나쁘다고 반응한 병사의 수는 16.4%였다. [그림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대에 대한 낮은 이미지는 부적응집단 병사일수록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그 비율과 정도가 더 높았다. 특히, 부적응집단 병사들 중 입대 전 군 이미지가 매우 좋았다는 병사는 단 한 명 뿐이었다.



[그림 3-10] 입대 전 군 이미지

<표 3-22> 입대 전 군 이미지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매우 나빴다	28	27.2	126	15.1	154	16.4
2: 상당히 나빴다	34	33.0	213	25.4	247	26.3
3: 약간 나빴다	18	17.5	258	30.8	276	29.4
4: 약간 좋았다	17	16.5	167	20.0	184	19.6
5: 상당히 좋았다	5	4.9	42	5.0	47	5.0
6: 매우 좋았다	1	1.0	30	3.6	31	3.3
total	103		601		940	

나) 군 생활의 의미

전체 병사들이 군 생활을 의미있게 느끼는 정도는 4.01로 대체로 의미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41.7%, 적응집단 병사들의 76%가 군 생활이 의미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적응집단 병사들이 적응집단 병사들에 비해 눈에 띄게 군생활의 의미가 낮다고 보고하였지만,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41.7%가 군 생활이 약간 의미있다고 응답한 것은 복무 부적응과 군 생활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일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3> 군생활의 의미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 없다	11	10.7	22	2.6	33	3.5
2: 거의 없다	24	23.3	51	6.1	75	8.0
3: 별로 없다	25	24.3	128	15.2	152	16.2
4: 약간 있다	23	22.3	335	39.8	356	37.9
5: 상당히 있다	13	12.6	220	26.2	233	24.8
6: 매우 많다	7	6.8	85	10.1	91	9.7
total	103		841		940	

6) 몇 가지 실태 문항에 대한 적응집단과 부적응 집단 간 비교

적응집단 병사들과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평균 그래프를 [그림 3-11]에 제시하였다
 <표 3-3 참고>.



[그림 3-11] 주요 문항별 평균 그래프

위 그래프는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반응이 적응집단 병사들의 반응과 매우 다른 것을 보여준다. 부적응집단 병사들은 군 생활의 어려움이 더 높은 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는 더 낮다.

또한 부적응 집단 병사들이 적응집단 병사들보다 선임병이나 간부의 명령이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때가 더 많고, 인권침해도 더 많이 경험하였다.

7) 상관분석

1. 군 부적응 증상은 인권침해경험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2. 군 부적응 증상은 입대 전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높았다.
3. 인권침해경험이 많을수록, 군 부적응 증상이 높을수록 부대에 도움요청을 덜 하고, 부대조치효과를 덜 신뢰하며, 군생활의 어려움은 군대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 입대전 좋은 군 이미지를 갖고 있을수록 군 부적응증상이 낮고, 인권침해경험을 적게 하고, 부대조치효과를 신뢰하며, 군생활 의미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상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과 해당문항,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표 3-24>에 제시하였다.

침해정도, 침해영향, 은근한 압력, 군내도움, 군 이미지, 복무의미, 부적응 이유, 군대조치효과, 입대 전 부적응, 군 부적응, 학력, 계급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25>에 제시하였다. 많은 표집수를 고려하여 통계적 유의도 수준을 엄격하게 .001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질문에 내포된 시점을 고려하여 상관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표 3-24> 변수이름, 설명, 설문지 문항

변수이름	변수설명	설문지 문항
침해정도	내가 부당경험 당한 정도 + 다른 병사의 부당경험 목격 정도	20, 22
침해영향	내 부당경험의 영향 + 다른 병사의 부당경험이 주는 영향	21, 23
은근한 압력	부당한 명령을 경험한 정도 + 은근한 압력의 영향	14, 15
군내도움	어려움 발생시 군대에 도움요청 의사	12
군 이미지	입대 전 군대에 대한 이미지	2
복무 의미	군대 생활의 의미	3
부적응 이유	군 생활 어려움 이유(높을수록 개인 탓, 낮을수록 군대 탓)	10
군대조치효과	군 생활 어려움 보고 시 군대조치의 효과	16
입대 전 부적응	예측척도 총점	33 - 74
군 부적응	SCL-90-R의 총점	75 - 164
학력	병사들의 학력	165
계급	병사들의 계급	166

첫째, SCL-90-R로 측정한 군 부적응 증상은 인권침해정도($r = .47$), 인권침해의 영향($r = .43$), 은근한 압력($r = .36$) 등 인권침해경험과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이것은 인권침해를 많이 경험한 병사일수록 부적응증상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부적응 증상이 높은 병사일수록 인권침해를 많이 당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군 부적응 증상은 계급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r = -.21$). 즉, 이병, 일병이 상병 병장보다 현재 부적응 증상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병사들 면담에서도 상병이나 병장보다는 이병과 일병 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크게 호소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25> 각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

변수 (문항수)	침해 정도 (2)	침해 영향 (2)	은근한 압력 (2)	군내 도움 (1)	군 이미지 (1)	복무 의미 (1)	부적응 이유 (1)	군대조 치효과 (1)	입대전 부적응 (40)	군 부적응 (90)	학 력 (1)	계 급 (1)
침해정도	-											
인권영향	.66*	-										
은근한 압력	.52*	.49*	-									
군내도움	-.34*	-.25*	-.25*	-								
군이미지	-.27*	-.21*	-.23*	.23*	-							
복무의미	-.38*	-.25*	-.23*	.30*	.31*	-						
부적응 이유	-.41*	-.34*	-.29*	.27*	.19*	.34*	-					
군대조치 효과	-.42*	-.32*	-.34*	.52*	.23*	.32*	.33*	-				
입대전 부적응	.30*	.28*	.22*	-.16*	-.18*	-.19*	-.05	-.16*	-			
군 부적응	.47*	.43*	.36*	-.24*	-.21*	-.32*	-.22*	-.30*	.48*	-		
학력	.08	.08	.11	-.06	.00	.02	-.08	-.08	-.26*	-.02	-	
계급	-.09*	-.00	-.04	-.06	.02	.07	.04	.01	-.05	-.21*	.05	-

주. N = 940.

셋째, 높은 군 부적응 증상은 낮은 부대조치효과신뢰($r = -.30$), 낮은 군내도움요청($r = -.24$)과 관련이 높았다. 또한, 군 부적응 증상이 높을수록 군 부적응의 원인이 군대 탓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

현재 군복무 부적응 증상이 높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부대에서 취하는 조치가 비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더 높고, 부대에 도움요청을 할 의사가 더 낮다고 응답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부대 측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지휘자들에

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뚜렷한 행동상 특이사항을 나타내지 않는 잠재 부적응자의 식별은 일선 지휘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⁹⁾. 그리고, 군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자기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군대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 = -.22$). 이것은 지휘자들이 군 부적응의 이유가 병사 개인 탓이라고 보는 시각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관점이라고 보여 매우 흥미롭다.

넷째, 높은 군 복무부적응 증상과 낮은 복무 의미와의 관련성($r = -.32$)은 군 복무 부적응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복무의미를 높이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군 복무 부적응 증상이 높기 때문에 복무의미가 낮은지, 복무의미가 낮기 때문에 부적응 증상이 높은지는 추후 연구에서 우선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병사들의 입대 전 적응수준은 입대 후 적응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r = .48$) 이것은 이 연구에서 개발 중인 예측척도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생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군의관들이나 인사장교들의 노하우도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병사들 개인변인이 군 부적응에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낸다.

여섯째, 인권침해를 많이 당한 병사일수록 낮은 복무 의미, 부대조치효과 불신, 낮은 부대측 도움요청 등과 상관이 높았다. 인권침해 경험이 높은 병사일수록 군과 관련된 측면 불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군 생활의 어려움이 군대문제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r = -.41$).

일곱째, 입대 전에 좋은 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입대 후 군대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r = -.21$), 적은 인권침해(r 's = $-.21 \sim -.27$), 부대조치의 효과 신뢰($r = .23$), 군 생활의 의미($r = .31$)와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대 전 군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입대 전 군 이미지와 복무 의미는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9)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평상시에 잘 적응하는 줄 알았던 병사가 사고를 냈을 때가 가장 힘들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8) 문장완성검사(SCT) 내용분석

간부들의 부적응 병사 인권침해가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비 전문성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인권침해상황을 낳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분석은 숫자보다는 생생한 표현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표 26 의 반응 예를 참고하기 바란다.)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현재 군대에서 어떤 조치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문장완성검사를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940명의 병사들에게 모두 설문에 포함된 다음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군대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_____.

군의 부적응자 관리를 질문한 위 문장완성검사의 전체 745개 반응을 내용 분석한 결과 크게 ‘부적응자 관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적응자 관리에 대한 부정적 태도’, ‘대안 제시’의 3 유목을 찾아내었다. 부적응자 관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하위유목이 없으며, 부적응자 관리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다시 ‘악화’, ‘무관심’, ‘무능’의 세 하위유목으로 나누었으며, 대안 제시는 ‘조치관련대안’, ‘격려와 관심대안’, ‘막연한 도움제안’, ‘전역제안’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세 유목에 들어가지 않는 반응은 모두 103개로 특별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기술적 반응들이거나,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봐도 불쌍하다’ 등으로 응답한 내용들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유목, 유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반응 예를 표 3-26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반응은 대안을 제시하는 반응으로 격려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 조치관련 대안만큼이나 전역을 제안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것은, 같은 병사들이 보기에 군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관련성은 군대의 부적응병사 관리에 대한 부정적 태도 유목들이 정책대안 유목들과 연결되는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군대가 부적응 병사들을 ‘더 악화’ 시키므로 ‘전역’이라는 제안을 하고, ‘무관심하거나 방치’ 하므로 ‘격려 · 관심’ 또는 ‘막연한 도움’을 제안하며, 별 대책이 없는 ‘무능함’에 대해 ‘정책 · 조치’를 제안하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군대가 부적응 병사들을 방치하고, 관리하는데 무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적응을 더 악화시킨다는 반응이 79명이나 되었다는 점은 병간의 인권침해 뿐 아니라, 부적응 병사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부적응 병사 인권침해를 시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 반응을 분석해보면, 간부들의 부적응 병사 인권침해가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비 전문성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인권침해상황을 낳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대로라면, 병사 10명 중 1명 비율로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잘 발견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처럼 부적응 병사를 체계적으로 식별 · 관리 · 이해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간부들은, ‘지나치게 보호한다’ 또는 ‘부적응병사를 보호하느라 다른 병사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응처럼 부적응 병사 보호 · 관리에 지나친 중압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6> 부적응 병사관리 문장완성검사 분석결과

대유목	소유목	유목설명	반응 예
1. 긍정 태도 (201)	없음	잘 관리한다, 현 관리내용 소개, 긍정적 태도.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관심병사로 관리’ ‘보직을 바꿔준다’ ‘불쌍하게 생각’ ‘관심은 가져준다’ 등 기타반응(15): 너무 감싼다’ ‘지나치게 보호한다’
	악화 시킴 (79)	적응을 더 어렵게	‘갈군다’ ‘흔낸다’ ‘강압’ ‘바보취급’ ‘병신취급’ ‘정신병자취급’ ‘자살하도록’ ‘버린다’ ‘두번 죽인다’ ‘차별’ ‘골치거리’ ‘짐’ ‘쓰레기’ ‘외톨이 되게’ ‘딱지’ ‘낙오자’
2. 부정 태도 (169)	무관심 (43)	무관심 · 방치	‘찾아내려하지 않는다’ ‘방관’ ‘외면한다’ ‘신경안쓴다’ ‘내버려둔다’ ‘눈감고 넘기기엔 너무나도 많다’
	무능함 (47)	관리 무능력	‘잘 발견하지 못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별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알면서도 합당한 조치와 그런 체계라는 것이없다’ ‘부적응병사를 보호하느라 다른 병사에게 피해를 준다’
3. 대안 제시 (272)	조치 관련 (83)	교육(16)·치료(6)· 제도나 조치(34)· 보직변경(12) 등이 필요	‘가르쳐야’ ‘타일러야’ ‘상당해줘야’ ‘치료해줘야’ ‘보직변경’ ‘제도나 시스템이 있어야’ 기타반응(6): ‘휴가’ ‘비전캠프’ ‘근본 해결’
	격려· 관심 (59)	격려·돌봄·관심 을 주어야	‘감싸줘야’ ‘관심을 줘야’ ‘격려해줘야’ ‘이해해줘야’
	전역 (80)	전역시키거나(63) 따로 관리해야(17)	‘전역시켜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따로 관리해야’
	막연한 도움 (50)	단순히 잘 도와야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 식별과 관리에 있어 자기 효능감이 매우 떨어지게 되므로 스스로 극심한 무능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무능감은 그 대상인 부적응 병사에 대해 분노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 경우 간부의 심리적 대처양식에 따라, 무능감이 큰 간부는 부적응 병사를 점점 ‘방치’하거나 ‘외면’하게 되고, 분노가 큰 간부는 ‘갈구고’ ‘혼내고’ ‘병신취급’ 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부적응 병사는 제거·응징되어야 할 ‘짐’ ‘쓰레기’ ‘골치거리’로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므로, 간부의 식별·관리의 어려움과 군 부적응 병사의 어려움이라는 쌍방의 어려움은 부적응 병사를 ‘두 번 죽이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부적응 병사에게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부에게 부적응 병사를 식별·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반면, 전체 응답의 1/3 가량은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군의 관리가 긍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간부들을 면담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부적응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간부들이 그만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선다형 설문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적응 병사의 사전 감별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의 반응에서 특히 긍정적 태도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간부 면접 결과에서도 부적응 병사 사전 감별과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대의 인사장교를 비롯한 간부들의 노하우가 다른 부대의 간부들보다 더 일관되고 심리학적 타당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연구진들에게 판단되었다. 추후 검증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간부들의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학문적 검증을 거쳐 표준화하는 작업은 상당한 실효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9) 인권모델 검증

병사 개인 소인이 군 부적응을 유발하는데 있어
병사들의 인권침해 경험은 중재된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군에서의 인권침해경험은
병사들이 군 부적응을 일으키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자,
복무 부적응 증상의 46%는
병사개인소인과 인권침해경험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병사들의 인권침해경험을 군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설정한 인권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동안의 군 사고내용과 부적응병사들의 면담 결과, 그리고 일반적인 적응모델(Moos & Schaefer, 1993)을 바탕으로 하여, 병사들의 인권침해경험정도는 군 부적응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과 부적응 정도를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지휘자 면접과 선임병면접 및 SCT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병사들의 개인변인(입대 전 적응수준)이 군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데 영향을 주며, 이러한 인권침해는 복무 부적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부적응 증상이 언제, 혹은 어떤 병사들에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상호작용 모델과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매개모델의 두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각각의 모델에서 병사들의 인권침해정도는 상호작용변수와 매개변수로 설정된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측정오차를 통제하고, 매개변수를 상정하여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잠재내생변수인 군 부적응은 SCL-90-R로 측정하고, 9개 임상차원의 총점을 잠재변수 군 부적응의 9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군 부적응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외생변수로 입대 전 적응을 나타내는 예비예측척도를 사용하고, 정신건강변인, 학교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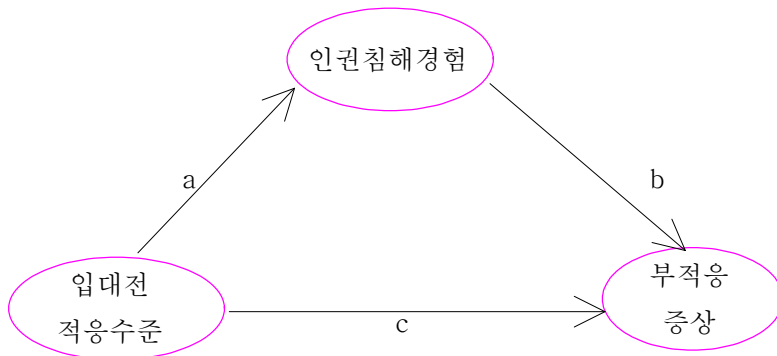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 변인, 행동문제의 4변수를 4개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잠재매개변수인 인권침해변수는 표 3-24에 제시된 (인권)침해정도, (인권)침해 영향, 은근한 압력을 각각 3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 적합도인 χ^2 검증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들인 Tucker 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이용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들은 χ^2 값과는 달리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지수들이며, TLI와 RMSEA는 모델의 간명성까지 고려하는 지수이다. TLI와 CFI 값은 .90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했으나 최근에는 .95이상을 그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RMSEA는 .08 이하는 모델의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가) 인권침해변수의 매개효과 검증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이전 적응수준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수준에 인과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병사들 면접에서 군 부적응의 원인으로 개인의 인권침해경험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간부 면접과 선임병들의 SCT에서는 병사들의 입대전 개인 요소가 군 부적응의 원인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따라서 군 부적응 현상은 병사의 입대전 적응수준이 인권침해경험정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군 부적응을 일으키게 되는 간접 경로가 설정되었다.

즉, 입대 전 적응수준이 낮은 병사들일수록 인권침해를 더 당하게 되며, 이런 병사들은 복무 부적응 증상을 더 일으키게 되는 메카니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인권침해경험이 입대 전 적응과 군 이미지가 군 부적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모델을 또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매개모델은 [그림 3-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3-12] 인권침해의 매개모델

[그림 3-12]의 부분매개모델을 사용하여 인권침해 매개모델이 설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매개모델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그림 3-12]의 부분매개모델 결과에서 경로 a, 경로 b, 경로 ab가 유의미하여야 한다(홍세희, 2001). 그 결과, 표 3-27에서 제시하였듯이 경로 a, b, ab가 유의미하므로 매개모델은 지지되었다($p > .05$)

<표 3-27> 매개모델 타당성 결과

경로	B	SE	z	β
a	.128	.011	11.67	.51*
b	.929	.104	8.91	.35*
ab	.119	.017	7.12	

주. $N = 940$. a = 입대 전 적응수준에서 인권침해경험으로 가는 경로 b = 인권침해경험에서 복무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 ab = a와 b의 상호작용효과. * $p < .001$.

다음 단계로 인권침해경험이 완전매개변수인지 부분매개변수인지를 검증하였다. 완전매개모델은 부분매개모델에 포함된 모델이므로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모델이 지지되었다. 모델검증결과는 <표3-38>에 제시하였다.

<표 3-28> 매개모델 검증 결과

모델	χ^2	df	RMSEA	TLI
부분매개모델	902.31*	101	.09	.97
완전매개모델	1040.03	102	.10	.96

주. $N = 940$.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 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모델: 입대전 적응수준이 복무 중 부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경험이 상호작용하는 모델. * $p < .001$.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입대 전 적응수준이 인권침해에 미치는 영향은 .51이고, 인권침해경험이 복무 부적응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43이었다. 그리고 입대 전 적응이 복무 부적응증상에 미치는 직접 경로의 계수는 .35였다. 나머지 경로계수는 <표3-29>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간부들과 선임병들의 보고에서처럼, 입대 전 적응수준이 낮았던 병사들이 주로 인권침해를 더 높게 경험하며, 이러한 측면이 군 부적응 증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즉, 병사들의 군 부적응이 일어나는 한 메카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병사들의 입대 전 적응수준은 복무부적응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무 부적응 증상과 병사들의 인권침해경험에 미치는 개인 변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 간부들이나 선임병들이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이 어느 정도 병사 개인 변인이 있다는 관점에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입대 전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복무 부적응 증상이 높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입대 전 적응수준이 복무부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인권침해에 영향을 줌으로써 복무부적응을 높인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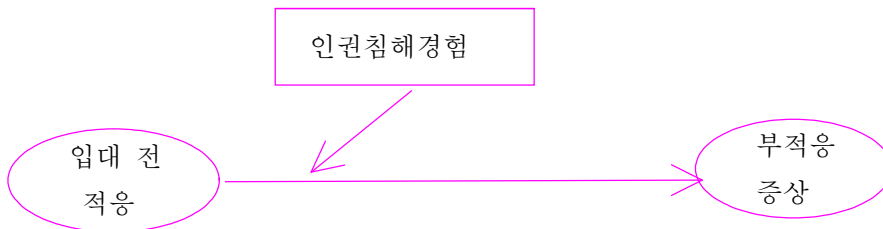
<표 3-29> 인권침해매개모델의 경로계수결과

	B	SE	z	β
인권침해경험				
→ 침해영향	1.00			.79
→ 침해정도	1.11	.05	21.94	.83
→ 은근한 압력	.52	.03	18.09	.63
입대 전 적응수준				
→ 정신건강	1.00			.91
→ 학교	.32	.04	7.46	.27
→ 사회적 관계	.70	.05	13.03	.49
→ 행동문제	.24	.02	12.81	.48
복무 부적응증상				
→ 신체화,	1.00			.74
→ 강박증	1.16	.04	27.69	.87
→ 대인민감성	.99	.04	28.54	.89
→ 불안증	.98	.04	28.19	.88
→ 우울증	1.49	.05	29.35	.91
→ 공포증	.30	.01	22.40	.72
→ 편집증	.69	.03	27.55	.86
→ 정신증	.83	.03	28.07	.88
→ 적대감	.59	.03	22.02	.70
입대 전 적응수준 → 인권침해경험	.12	.01	11.44	.51
인권침해경험 → 복무부적응	1.03	.12	8.91	.35
입대 전 적응수준 → 복무부적응	.29	.03	9.73	.43

주. N = 940.

나) 인권침해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이전 적응수준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수준에 인과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예측도구로 측정된 외생잠재변수 입대 전 적응수준은 SCL-90-R로 측정된 내생잠재변수 복무 중 부적응 증상과 인과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인권침해경험은 병사의 입대 전 적응수준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복무부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권침해 상호작용 모델은 [그림 3-13]에 제시하였다.



[그림 3-13] 인권침해의 상호작용 모델

먼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절차에 따라 먼저 측정모델이 자료에 잘 맞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한 뒤, 구조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측정 모델의 χ^2 검증 결과 $\chi^2(110, N = 940) = 1096.75, p = .000$ 으로 모델이 기각되었으나,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대다수의 표본일 때 모델은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다른 상대적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RMSEA = .098; TLI = .96; CFI = .97 이고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유의미하였으므로($p < .001$), 각 측정변수들의 수렴타당성도는 지지된 것으로 보인다(Anderson & Gerbing, 1988).

RMSEA가 .08을 넘는 이유는 이 연구의 예측척도문항들이 예비문항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표집수가 940명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현상인 군 부적응을 예측하는 모델을 단순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모델에서, 각 잠재변수간상관도 모두 유의미하였으므로($p < .001$), 측정모델의 수렴타당도는 지지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인권침해변수의 상호작용을 가정하는 이론모델을 검증한 결과, 측정 모델의 χ^2 검증 결과 $\chi^2(110, N = 940) = 1096.75, p = .000$ 으로 역시 모델이 기각되었으나,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이 연구에서처럼 대다수의 표본일 때 모델은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다른 상대적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표 3-30>에 제시하였듯이 $RMSEA = .098; TLI = .96; CFI = .97$ 로 모델을 수용하였다.

<표 3-30> 상호작용모델 검증 결과

χ^2	<i>df</i>	RMSEA	TLI	CFI
1096.75*	110	.098	.96	.97

주. $N = 940$.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 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모델: 입대 전 적응수준이 복무 중 부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경험이 상호작용하는 모델. * $p < .001$.

경로계수 검증결과 주효과인 입대 전 적응수준이 복무부적응에 미치는 영향($\beta = -.07, z = -1.56, p > .05$)과 인권침해정도가 복무부적응에 미치는 영향($\beta = .03, z = 1.00, p > .05$)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침해정도와 병사개인의 입대전 적응수준의 상호작용효과는 복무부적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beta = .68, z = 13.93, p > .001$). 마지막으로, 상호작용변수의 효과크기는 .46으로, 입대 전 적응이 복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46%를 인권환경변인이 설명한다. 최종모델의 경로계수는 <표 3-31>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군에서의 인권침해경험(인권환경)에 따라 병사들이 복무 부적응증상을 일으킬 수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부적응 증상이 얼마나 심각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권침해를 많이 당한 병사의 경우, 입대 전 적응수준이 높았더라도 복무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입대 전 적응수준이 낮았더라도 군에서의 인권환경이 좋다면 복무 부적응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인권환경은 병사개인변인인 입대 전 적응수준이 복무 부적응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buffer)한다. 따라서 병사들의 입대 전 적응수준은

군 복무 부적응 증상을 예측하는데 분명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군의 인권환경이 어떠한가를 무시한다면 일관된 예측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권침해의 상호작용모델이 지지된 결과는 군의 인권환경이 병사의 복무부적응 발생과 정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중재 변수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인권기구들이 인권환경이 군 부적응의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표 3-31> 상호작용모델의 경로계수

	B	SE	z	β
인권침해경험				
→ 침해영향	1.00			.79
→ 침해정도	1.06	.03	30.98	.80
→ 은근한압력	.53	.02	24.64	.66
입대전 적응수준				
→ 정신건강	1.00			.60
→ 학교	.90	.05	12.28	.50
→ 사회적관계	1.27	.06	20.42	.60
→ 행동문제	.31	.02	16.12	.42
복무 부적응증상				
→ 신체화,	1.00			.73
→ 강박증	1.19	.04	27.17	.87
→ 대인민감성	1.01	.04	28.17	.89
→ 불안증	.98	.04	27.70	.88
→ 우울증	1.52	.05	28.77	.91
→ 공포증	.31	.01	22.18	.72
→ 편집증	.71	.03	27.17	.87
→ 정신증	.85	.03	27.66	.88
→ 적대감	.63	.03	22.46	.72
입대 전 적응수준 → 복무부적응	.01	.00	1.00	.03
인권침해경험 → 복무부적응	-.21	.13	-1.56	-.07
입대전적응수준 × 인권침해경험 → 복무부적응	.01	.00	13.93	.68

주. N = 940

다) 전체 결과

인권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복무 부적응에 미치는 변수들인 병사들의 입대 전 부적응과 군대의 인권침해경험이 포함된 구조방정식 모델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인권침해정도가 상호작용변수와 매개변수로 각각 작용하는 두 인권모델의 타당성은 지지되었다. 즉, 인권침해정도는 입대 전 부적응 소인이 있는 병사들이 복무 부적응을 일으키는 여부와 심각성 정도를 결정한다. 동시에 병사의 입대 전 부적응정도는 복무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복무부적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복무 부적응이 군대의 인권환경 탓이라고 보는 군 외부의 입장과 병사 개인의 탓이라고 보는 군 내부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특히, 복무 부적응을 전적으로 개인 소인 때문 이라고 가정한 군의 부적응 병사에 대한 보상 부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며, 복무 부적응문제에 대한 개입은 병사 개인과 군 조직,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모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인권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이 모델은 추후 반복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임을 밝혀둔다.

10) 병사 면담 정리

설문 조사 후 약 1시간 동안 5-8명의 연구진이 병사들과 일대 일 면담을 하였다. 병사들은 관심병사인 경우가 1/3, 면담 자원병사인 경우가 1/3, 연구진이 즉석에서 요청한 병사인 경우가 1/3 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총 병사 인원은 38명이었으며, 주요 면담내용은 군 생활 어려움의 원인,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 현 군 부적응자 관련제도에 대한 의견, 군의 개선점 등 이었다. 면담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가)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병사 간 관계가 군 부적응의 가장 큰 요인이다: 소외와 같음.
→ 군생활의 적응수준은 군 내 사회적 지지체계 여부와 높은 관련이 있다.

▶ 선임병과의 갈등

- 간부보다는 선임병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 선임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후임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가 많다.
- 신체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 많다.

(폭행과 욕설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 부당명령은 부지기수이다.
- 이등병 시기는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낮선 부대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선임병의 짜증과 욕설을 받게 된다. 계속 야단맞다보면 정신적 기능(집중, 이해력)이 손상되어 무능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감정기복이 심해진다)

10) 연구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질적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 이러한 경우 강한 분노로 인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예: 선임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뭔가 가하고 싶은 느낌이다. GP에서 실탄을 지급받으면 “돌아버려?” 하는 심정 생긴다.)

기타 경우:

- 분대장: 간부들이 부적응 병사 관찰을 위임하여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된다.
간부와 병사간의 상호불신이 분대장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점이 어렵다.

▶ **병사 요인: 병사 개인적 특성**

- 외모: “눈꺼풀이 처짐 병사가 있었는데 왜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졸려하냐고 맨날 혼나고 맞았다. 변명하지 말라고.”
- 성격: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단체생활 자체가 힘들다.”
“실탄 지급 될 때 긴장이 많이 된다. 대처방식도 그냥 혼자 있는 것이다.”
- 신체: 신체적 장애(예: 언어적 장애, 허리디스크)있을 경우,
부상으로 입원할 경우 근무에서 제외되면 왕따 된다.

▶ **간부 요인**

- 부서관등 간부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꼬투리 잡는다.
자기 맘에 안들면 휴가도 안보내주고, 자유 시간에도 다른 일을 계속 시키고,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별로 신경 안 쓴다.
지휘자들은 병의 입장을 안 꺾어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
- 업무를 과중하게 시킨다.
- 단지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관심병사로 지목하여 왕따를 만든다.

▶ **휴가 복귀 후유증, 가정형편**

- 휴가 중에는 간섭을 받지 않다가 다시 부대복귀해서 간섭을 받으면 힘들다
- 여자 친구와 휴가 중 헤어지게 되는 경우, 여자 친구가 임신한 경우.
-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부대에서 계속 걱정이 된다.

나) 부적응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

Social support

-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힘든 점이다. 특히 일 이병 때는 더욱 그렇다.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자살은 안한다. 쌓아두었다가 터지게 되는 것 같다.
- 친한 선임이 있는 것이 힘이 된다. (예: 알미운 선임 육할 때 공감 받음)
- 부모님이나 여자 친구 등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것이 힘이 된다.
- 마음이 통하는 지휘자와는 속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지휘자의 특성은 권위의식이 없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는 사람이다.
그러나, 병사를 위하는 간부는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것이다.

다) 관심병사제에 대한 의견

- 공개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누구인지 알고 있음(자주 면담하러 불러다님)
-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병사이 되거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다.
- 관심병사입장: 스스로 관심병사라는 것 때문에 다른 병사에게 다가가지가 부끄럽고, 시선을 의식하게 되다보니 늘 긴장, 말을 더듬게 되는 증상이 생겼다.
- 적응병사 입장: 누가 관심병사인지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응 병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 마음의 편지에 대한 의견

-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거의 실질적인 이용을 하지 않는다.
(예: 맞았던 병사가 위에 보고해서 가해자인 선임병이 영창갔다고 소문나서 왕따. 부모님께 맞았다고 얘기한 이등병의 경우, 부모님이 걱정되어 부대에 전화. 선임병이 처벌받게 되자 다들 그 이등병이 잘못했다고 얘기함)

마) 부대 재배치에 대한 의견

-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있던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기는 것은 싫다.
소문나고 색안경 쓰고 보기 때문에 더 적응이 어렵다.

바) 상담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 부대 내부 상담자에게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 외부 상담자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별 효과 없을 것.
 - 상담 받는다는 자체에 대한 비밀보장 어려울 것.
 - 상담 받을 시간을 내기 어렵다.
- 힘들다고 도움 요청할 경우 부대의 조치는 거의 없다.
관찰하고 보호관심병사로 찍힐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조치가 효과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또한, 높은 간부에게 바로 얘기하면 보고체계를 무시했다고 오히려 더 갈굼 대상이 된다. 간부 눈에만 안 띄면 잠재부적응 병사도 계급이 높아갈수록 걸으려는 모범 병사로 취급된다.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부대 조치는 거의 없으며,
현행 제도는 비밀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효과가 거의 없다.
특히, 관심병사제는 오히려 관심병사의 적응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 군이 개선되어야 할 점

- 시설개선(적응 병사).
- 시설개선 효과는 몇 일 못간다. 결국 인간관계환경이 중요하다(부적응 병사)
- 너무 많은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부당 명령 안하고, 간부들이 리더쉽 있었으면 좋겠다. 간부들은 실적이 중요하고, 몸 사리기 바쁘다.
- 오래된 간부들은 그만둬야 한다. 병사는 변하는데 간부들의 생각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4. 복무단계 : 간부

군 간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효율적인 병력관리를 통해 전투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간부는 단순히 훈련과 전투준비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 개개인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징병제를 통해 군 조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병사들에게는 군 복무에 대한 동기를 높이며 군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군 간부의 사명과 책임은 막중하다.

군복무 부적응자에게 있어서도 군 간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데, 초급 간부들의 경우는 군대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적응 병사들을 발견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고급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들의 처우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 간부들이 부적응 병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부적응 병사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군은 군복무 부적응자나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병사들의 개입에 대한 세부 지침을 각 부대에 전달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3의 '군대는 부적응 병사에게 _____'. ' 문항의 내용분석(SCT)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부들에 따라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처방식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적응 병사의 원인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로 지나치게 해석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부족으로 보면서 방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부적응 병사가 부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극단적인 사고에 대한 염려, 사전에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정신과 입원·의병전역·부적합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려는 간부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노력과 대처에도 불구하고, 군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간부들의 지휘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간부와 병사 간 관계에 깊은 불신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결국 군의 최종목표인 강군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군 간부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간부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군 부적응자 실태, 개입, 인권 실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 및 조치사항, 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간부 자신의 정신건강 및 지휘부담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관리방법 및 노하우, 정책에 대한 제안 등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속 부대에서 병사들과 관련된 업무를 실행하고 병사들에 대한 지휘의 주체인 초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연구 방법

1) 참여자

육군 4개 사단 총 5개 부대의 군 간부 141명이 실태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각 부대는 전방 2개 부대, 후방 1개 부대, 최전방 2개 부대였으며,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등 부대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계급별, 학력별 분포는 <표 4-1>과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1> 계급분포

구분	빈도	%
장교	47	33.4
부사관	94	66.6
전체	141	100.0

<표 4-2> 학력분포

구분	빈도	%
고졸	53	37.6
전문대졸	30	21.3
대졸	48	34.0
대학원이상	9	6.4
무응답	1	.7
전체	141	100.0

2) 설문 및 면담도구

가) 간부용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 설문지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설문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지에 2문항, 군복무 부적응자의 실태와 부대에 미치는 영향에 6문항, 부적응자의 관리와 처우에 6문항, 군복무 부적응자의 인권실태와 개입 및 애로사항에 8문항, 군복무 부적응자와 관련된 현 제도에 대한 의견에 6문항, 군 간부의 정신건강 상태에 3문항으로 총 31문항(인적사항, 문장완성검사 제외된 문항수)이다. 설문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역 간부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군 용어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나)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간부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SCL-90-R은 Derogatis 등(1976)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목록 검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어판 SCL-90-R

을 사용하였다.

SCL-90-R은 9개 증상차원,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한다. 응답자는 지난 일주일동안 경험한 증상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부터 아주 심하다(4점)로 5점 척도 상에 표시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증상차원은 신체화, 강박,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이다.

이 검사의 장점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차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문항이 MMPI보다 적으면서도 환자의 증상을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90문항으로 구성된 SCL-90-R의 9개 각 척도값과 GSI(Global Severity Index)값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척도가 한국 성인 남자 기준을 넘어설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다) 면접도구

군복무 부적응자의 실태 및 인권 상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군 간부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군복무 부적응자 및 관심병사의 분류기준, 조치사항 및 개입, 지휘부담의 내용, 현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대안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3) 연구 절차

후방, 전방, 최전방으로 구분하여 연구팀이 선정한 5개 사단 7개 부대를 방문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간단히 설명한 후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간부용 부적응자 인권 실태 설문지, 군복무 부적응 예비척도 SCL-90-R, 학력문항, 계급문항 순으로 구성된 설문지(총 133문항)를 실시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부대별로 간부 1~3인을 선발하여 연구원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간부들의 심층면접 선발방식은 연구원이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나. 연구결과

1) 반응의 솔직성

솔직성 정도를 묻는 2개 문항을 실태문항 앞, 뒤에 포함시켰다. 두 문항의 평균값이 각각 5.36점(상당히 솔직할 것이다)과 5.20점(상당히 솔직했다)으로 간부들이 상당히 솔직하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응답의 솔직성

설문 전			설문 후		
척도	빈도	%	척도	빈도	%
전혀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0	0.0	전혀 솔직하지 않았다	0	0.0
거의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4	2.8	거의 솔직하지 않았다	3	2.1
별로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2	1.4	별로 솔직하지 않았다	3	2.1
약간 솔직할 것이다	8	5.7	약간 솔직했다	11	7.8
상당히 솔직할 것이다	54	38.3	상당히 솔직했다	70	49.6
매우 솔직할 것이다	73	51.8	매우 솔직했다	54	38.3
전체	141	100.0	전체	141	100.0

2) 군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가) 부적응 간부 실태 (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

간부 4명 중 1명 비율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적응 증상을 보이고 있다.
간부들은 신체화, 강박증, 편집증, 대인민감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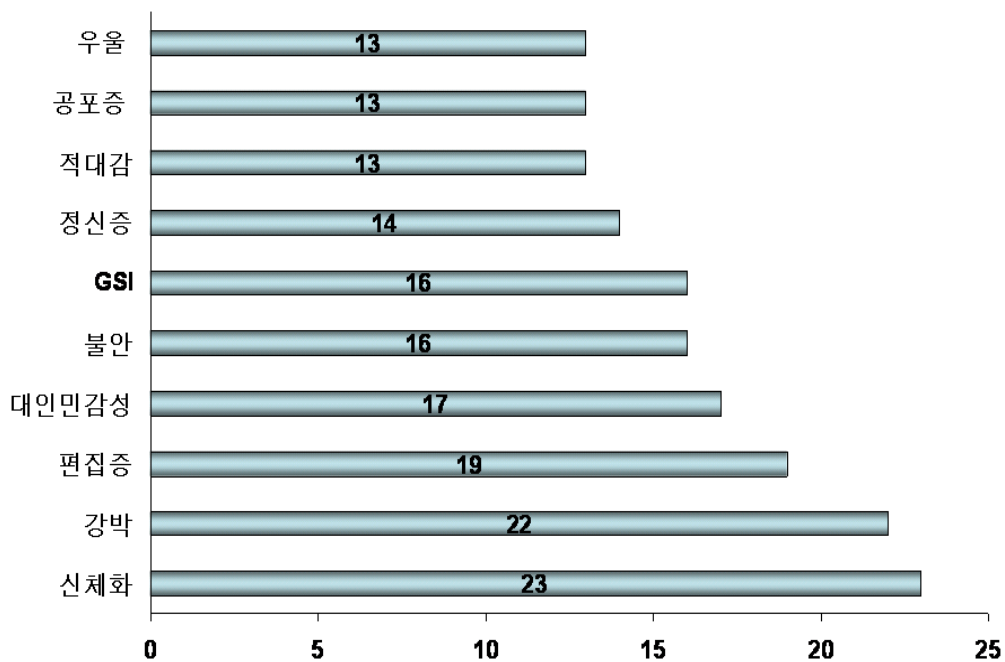
SCL-90-R의 9개 각 척도 값과 GSI값 중에서 한개 이상의 척도가 한국 성인 남자 기준을 넘어설 때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표 4-4>를 살펴보면, 척도별 중복을 제외한 부적응 간부 숫자는 전체 141명 중 40명(28.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 따라 각각의 척도 기준 값을 초과하는 해당척도 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척도별 빈도 합은 부적응 간부집단인 40명 보다 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증상은 신체화이며, 그 다음에는 강박, 편집증, 대인민감성 순이다.

이 결과가 군 간부 전체를 대표성 있게 반영하는 데는 표집수의 제한, 다양하지 못한 표집선정 등 커다란 한계점이 있다. 또한 한 개의 하위척도 이상에서 성인남자 기준을 넘어설 때 부적응집단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나치게 해석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41명의 결과는 현재 군 간부들이 심리적 어려움, 지휘 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4> 이상집단 증상유형 (N = 40)

	신체화	강박증	대인 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	GSI	전체
빈도	23	22	17	13	16	13	13	19	14	16	40

증상의 하위 척도를 상세히 살펴보면, 간부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신체화 증상이다. 신체화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와 두통, 동통 등 신체적 기능이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 강박증은 자신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되풀이 되는 사고, 행동을 반영한다. 대체로 원치 않는 생각들의 반복, 주의집중의 어려움, 결단력의 어려움,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행동, 정확하게 일을 수행하느라 제 때에 일을 해내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편집증은 투사적 사고, 적대감, 의심, 자율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및 망상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 불신, 타인에 의해 이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대인민감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적합감 및 열등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림 4-1] 간부 부적응자의 증상유형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신체화’, ‘강박증’, ‘편집증’, ‘대인민감성’에 대한 결과는 군 간부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어려움을 느끼는 구체적인 영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군 간부들은 병사와 군 간부 지휘 계통상의 인간관계에서 불편감, 적대감, 부적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업무에서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감,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신체증상 외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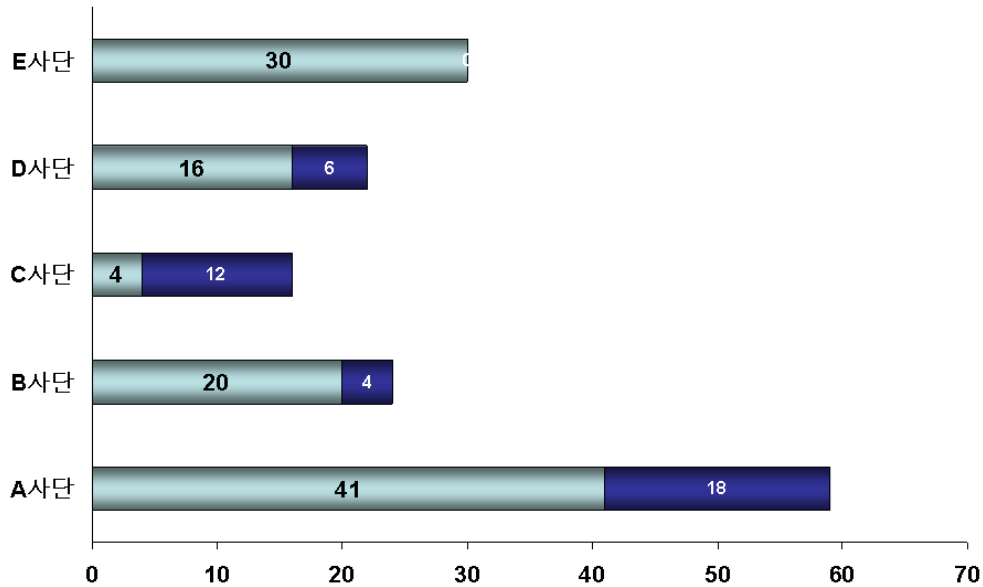
이것은 병사들의 부적응 실태 뿐 아니라 간부들의 부적응 실태 또한 군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부적응 증상을 보이는 간부집단(이하 부적응집단)의 계급별 실태를 <표 4-5>에 제시하였다. 장교가 32.5%이며, 부사관은 67.5%로 나타났다.

<표 4-5> 계급별 부적응 집단 실태

구분	빈도	%
장교	13	32.5
부사관	27	67.5
전체	40	100.0

나) 사단별 간부 부적응 실태

사단별 부적응집단 실태를 [그림 4-2]를 통해 살펴보면, 사단에 따라 부적응 간부가 전혀 없는 사단부터 사단 내 응답자의 75%가 부적응집단으로 구분된 사단까지 사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간부 부적응 증상의 부대별 차이는 병사 부적응 증상의 부대별 차이와 일치한다.



[그림 4-2]사단별 부적응 집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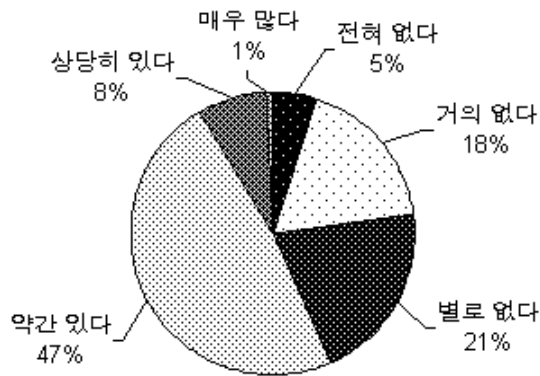
특히, C사단의 경우는 간부 대다수가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C사단이 최근 부대 내 사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응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내 내 비리와 악습을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부대 내 이러한 변화과정이 간부의 부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탐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군 간부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요약하면, 응답자 중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심리진단검사 중 하나 이상의 하위척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P 총기난사 사건, 군대 내 자살 등의 사건·사고로 병사들의 부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는 간부들의 부적응, 지휘부담, 정신건강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간부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3,294명의 직업군인들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건수는 9,507건 이었다(야후 뉴스, 2006.10.).

3)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가)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부대 내 군 부적응 병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간부 56%가 있다는 쪽에 응답하였으며 44%가 없다는 반응을 하였다. 간부들은 대체로 군 부적응 병사가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전체 병사들에게 주변에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물었을 때의 결과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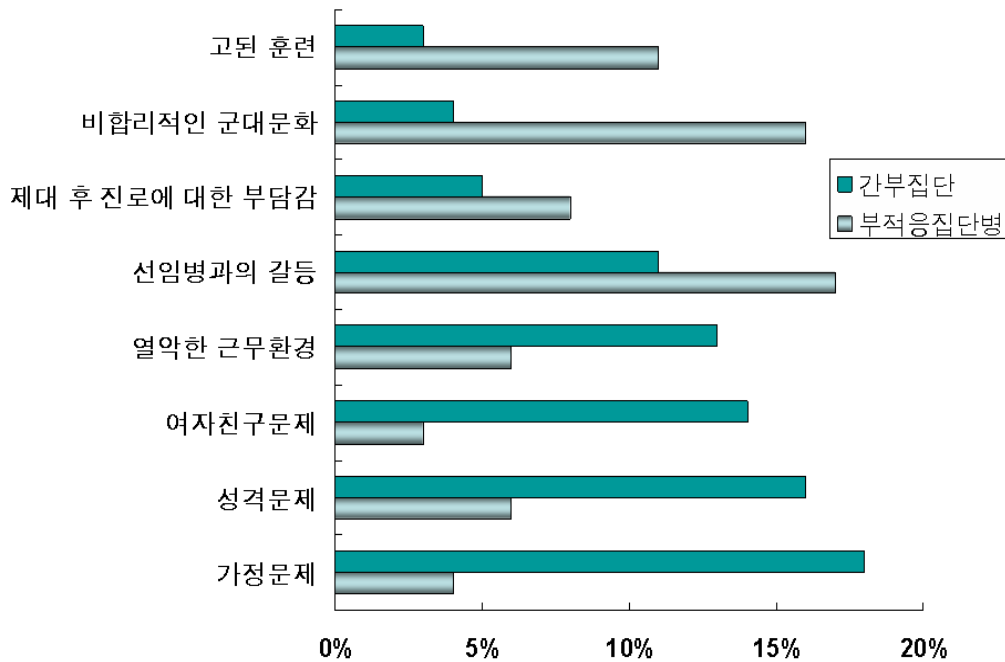
[그림 4-3] 군복무 부적응 병사 실태

나) 부적응의 이유

간부들은 병사 부적응 원인으로 개인요소(가정, 성격, 여자친구)를 들었으며, 부적응 병사들은 군대요소(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 군대문화, 고된 훈련)를 들었다.

이것은 간부와 부적응병사 당사자 간의 확연한 시각 차이를 나타낸다.

병사들의 군복무 부적응 원인으로 3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간부들은 ‘가정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격문제’, ‘여자친구 문제’ 등 개인적 요인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다음 ‘열악한 근무환경’을 선택하였다. 반면,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과 ‘부당한 명령과 처벌’은 상대적으로 적은 간부들이 부적응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림 4-4] 부적응 이유

<표 4-6> 군복무 부적응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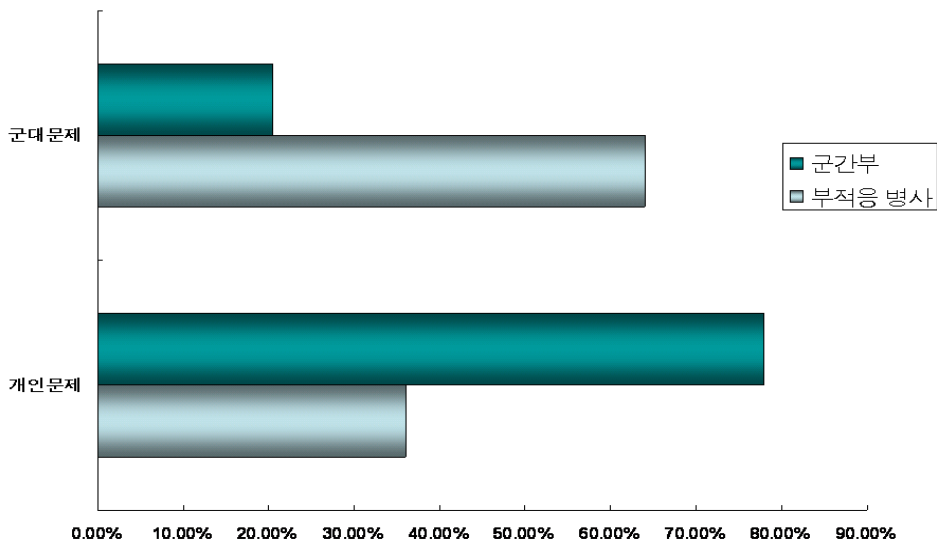
척도	간부집단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병사	병사
부당한 명령 및 처벌	10	29	199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17	47	290
열악한 근무환경	53	18	265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9	17	153
보직 불만족	13	15	60
고된 훈련	10	30	124
선임병과의 갈등	43	49	242
가정문제	72	12	117
여자친구문제	54	9	154
제대 후 진로에 대한 부담감	18	22	344
성격문제	64	16	166
많은 암기 및 교육	·	7	63
비자발적인 입대	25	10	153
성문제	3	4	22
기타	9	·	·
전체	400	285	2,352

간부들이 병사들의 부적응 이유를 개인적인 요인(가정문제, 여자친구문제, 성격문제)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부적응 병사들이 보는 자신들의 어려움 원인은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순이었다.

즉, 간부들은 병사들의 부적응 원인을 병사 개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적응을 겪고 있는 병사들은 군대 요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이 군대문제 때문인지 병사 개인문제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에 간부들의 77.9%가 부적응 병사 개인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군대문제라고 응답한 간부들은 20.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군 간부들이 군복무 부적응은 병사들의 개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구체적인 이유 항목과 일관된 결과이다.

같은 질문에 대한 병사들의 결과는 부적응집단 병사들의 68.0%, 적응집단 병사들의 51.1%가 군대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간부들의 응답과 비교할 때 역시 병사들과 간부들 간의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4-5]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

<표 4-7>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

척도	군 간부	
	빈도	%
전적으로 개인문제	15	10.6
좀 더 개인문제	48	34.0
개인문제	47	33.3
군대문제	22	15.6
좀 더 군대문제	5	3.5
전적으로 군대문제	2	1.4
무응답	2	1.6
전체	1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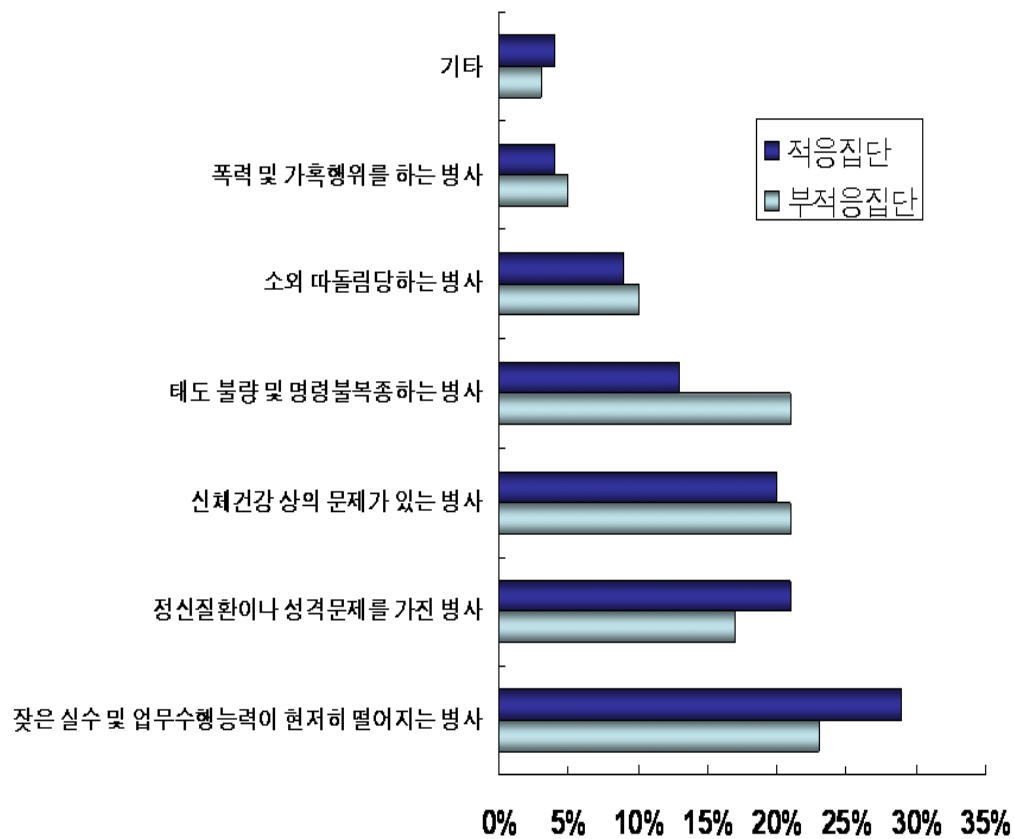
다) 간부가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

간부들이 주로 접하는 부적응 병사의 유형은 ‘잡은 실수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 와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이며, 부적응 간부들은 특히, ‘태도불량 및 명령 불복종 하는 병사’를 꼽았다.

간부들이 주로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 3가지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간부들은 ‘잡은 실수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신체 건

강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와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순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들은 지휘통솔 과정에서 정신질환, 신체건강 상의 문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들을 군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병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징병단계에서 정확히 감별되지 못한 병사들이 군대 조직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부적응 집단 간부들은 적응집단 간부들에 비해 태도불량 및 명령불복종 하는 병사를 부적응병사로 더 많이 꼽았다. 이것은 부적응 집단 간부들의 주요 증상이 대인관계에 관련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림 4-6] 부적응 병사의 유형

<표 4-8> 부적응 병사의 유형

척도	부적응집단 (N=40)	정상집단 (101)	전체 (N=141)
소외 · 따돌림 당하는 병사	12	24	36
태도 불량 및 명령불복종하는 병사	24	36	60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병사	6	11	17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20	60	80
잘못된 실수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27	81	108
신체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	25	57	82
기타	3	12	15
전체	117	281	398

기타의견으로는 지나치게 강한 개성, 개인주의적 성격, 어울리려 하지 않는 병사, 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무조건 거부감을 나타내는 병사, 조직에 융합하지 못하는 병사 등을 꼽았다.

라) 군 부적응자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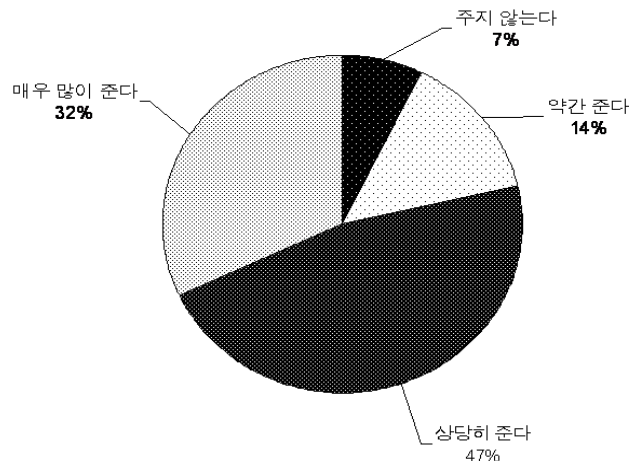
간부 대다수가 부적응 병사문제와 군대 사건·사고가 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군 부적응 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81.6%가 심각하다고 18.4%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군 부적응 병사가 부대 사기나 응집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간부들이 지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부들이 상당한 지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표 4-9> 군 부적응 병사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

척도	빈도	%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1.4
거의 심각하지 않다	4	2.8
별로 심각하지 않다	20	14.2
약간 심각하다	50	35.5
상당히 심각하다	43	30.5
매우 심각하다	22	15.6
합계	141	100.0

한편, 군대 사고(총기난사, 탈영, 자살 등)소식은 부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92.9%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여 간부들이 군대 사고 소식에 병사들보다 예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7] 군대 사고 소식이 부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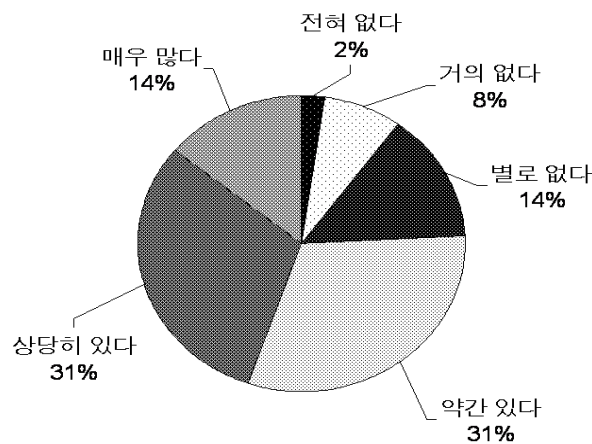
마)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분류 기준 및 교육 경험

‘부적응 병사 분류 기준이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 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80.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병사들의 SCT문항의 내용분석 결과 간부들이 부적응 병사를 잘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응답과는 대조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부적응 병사 분류 기준의 도움 정도

척도	빈도	%
1: 전혀 도움이 안된다	3	2.1
2: 거의 도움이 안된다	6	4.3
3: 별로 도움이 안된다	18	12.8
4: 약간 도움이 된다	64	45.4
5: 상당히 도움이 된다	39	27.7
6: 매우 도움이 된다	11	7.8
전체	141	100.0

‘부적응 병사의 이해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에 대해 24%가 없다고 했으며, 76%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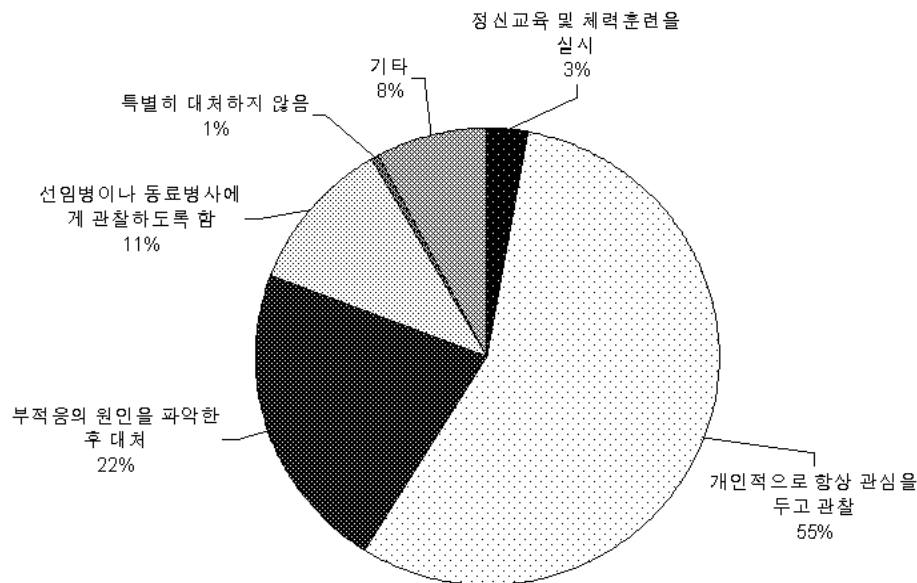


[그림 4-8] 부적응 병사 이해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바)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처 및 관리의 어려움

간부들의 부적응자 관리 방법은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관리 시 어려운 점은 부적응 간부들의 경우 부적응 병사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으며, 전문 인력 및 제도 미비가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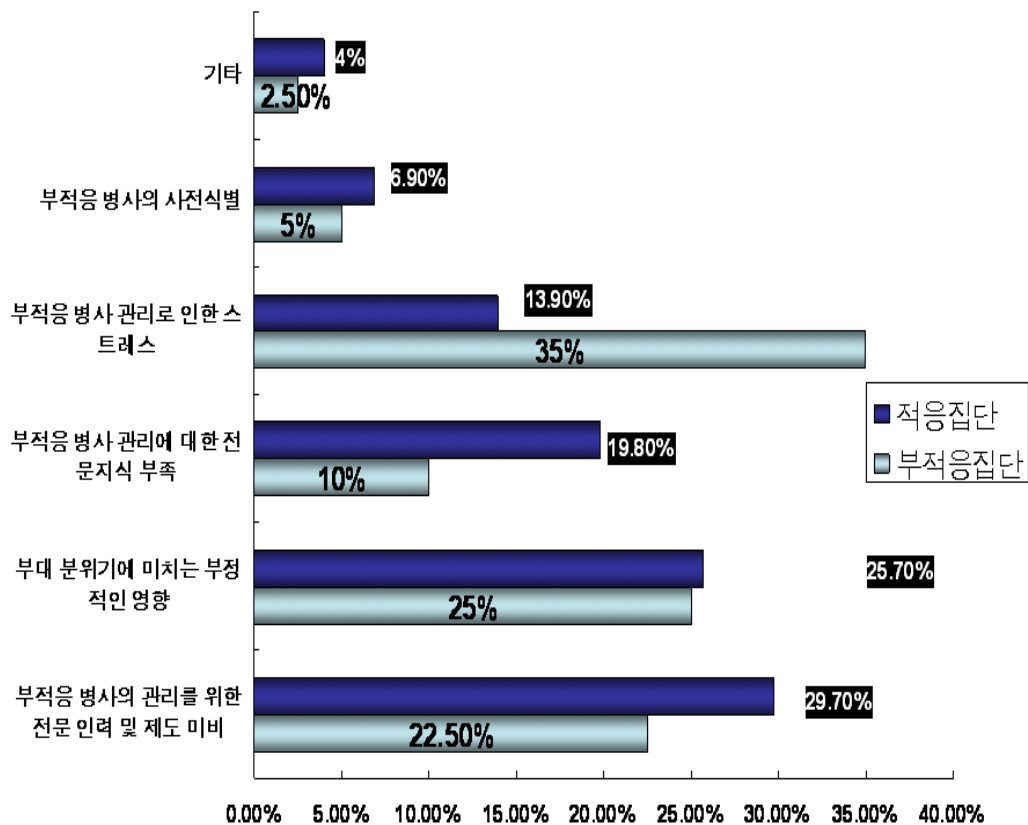
‘부대에서 부적응 병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내용’을 묻는 질문에 55%는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 한다’에 응답하였으며, 22%가 ‘부적응의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 한다’에 응답하였다. 현재 군은 군 부적응자나 잠재 부적응자를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부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찰기록을 근거를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항상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관리 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부적응 병사 대처

기타의견으로는 ‘병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부적응이 일어났을 때 원인은 파악할 수 있으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 관심을 두고 관찰할 수 밖에 없음’,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상급자의 조언을 구함’, ‘부모님과 연락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 ‘모범병사를 곁에 두어 항시 같이 생활하도록 함’ 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 이 무엇인지 군 간부들에게 물었을 때 부적응 집단 간부들에게는 부적응 병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적응집단 간부들에게는 ‘부적응 병사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제도미비’ 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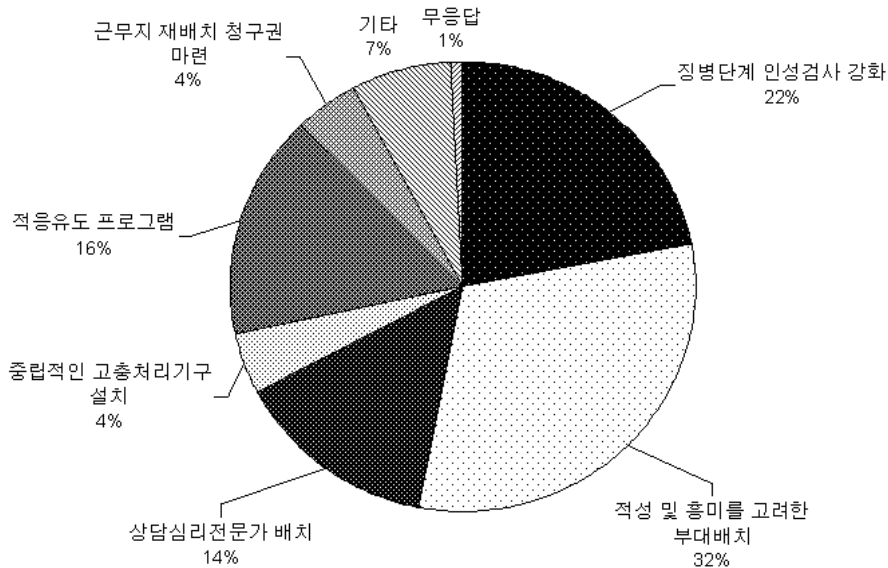
[그림 4-10] 부적응 병사의 관리에서 어려운 점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재 군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들을 관리하는데 전문 인력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부적응 병사를 관리할 때 낙인의 문제’,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느라 타병사들에게 관리 소홀’, ‘부적응 병사에게만 맞출 수 없는 현실’, ‘부적응 병사는 작업을 열외 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타병사에게 피해를 줌’ 이 나타났다.

사)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정책 대안

‘군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에 대해 물었을 때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한 부대배치’에 32%가 응답하였으며, ‘징병단계 인성검사 강화’에 22%가 응답하였다.

군 간부들은 부대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징병단계에서 부적응이 예상되는 잠재 부적응자를 사전에 감별하는 방안과 부대 배치 시 병사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부대마다 상담전문가 배치’, ‘인성교육이 필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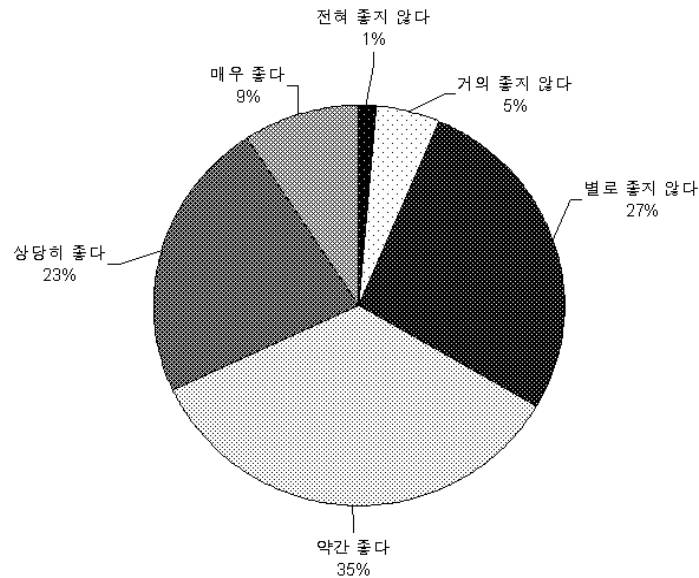
[그림 4-11]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정책 대안

4)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가) 부적응 병사 처우 및 부당대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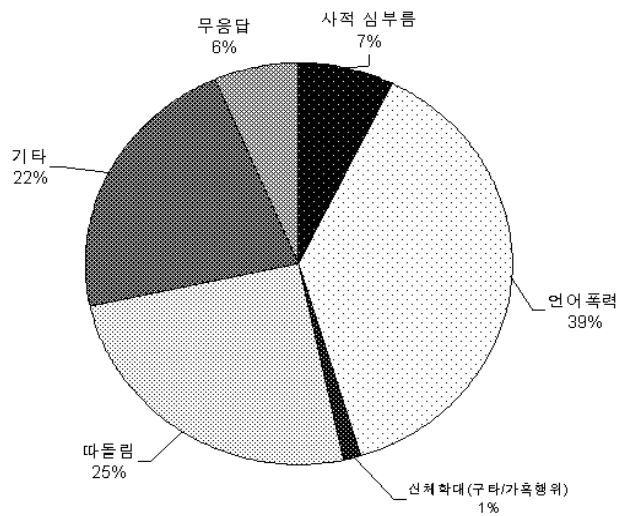
간부들의 67%가 현재 부적응 병사의 처우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적응 병사의 부당대우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따돌림을 꼽았다.

‘현재 군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33%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67%이 좋다고 반응하였다. 즉, 군 간부의 절반 이상이 부적응 병사의 처우는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적응 병사들은 부대 조치의 효과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SCT결과에서도 전체응답의 2/3가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군대의 처우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분치 못하다고 여기는 것과 대조된다.



[그림 4-12] 부적응자 처우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 유형' 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부들의 39%가 '언어폭력'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가 '따돌림' , 22%가 '기타' 에 응답하였다.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많이 사라졌지만 이것이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결과이다. 중요한 점은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은 그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며 병사 개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지만 쉽게 목격되거나 관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응답으로 보면, '사고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 , '부당한 대우 없음' , '차별' 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에서는 '부당한 대우가 없음' 에 대한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림 4-13] 부적응자 부당대우 유형

‘군 부적응 병사의 처우 개선과 간부의 지휘권과의 대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간부들의 55.4%가 대립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42.5%가 대립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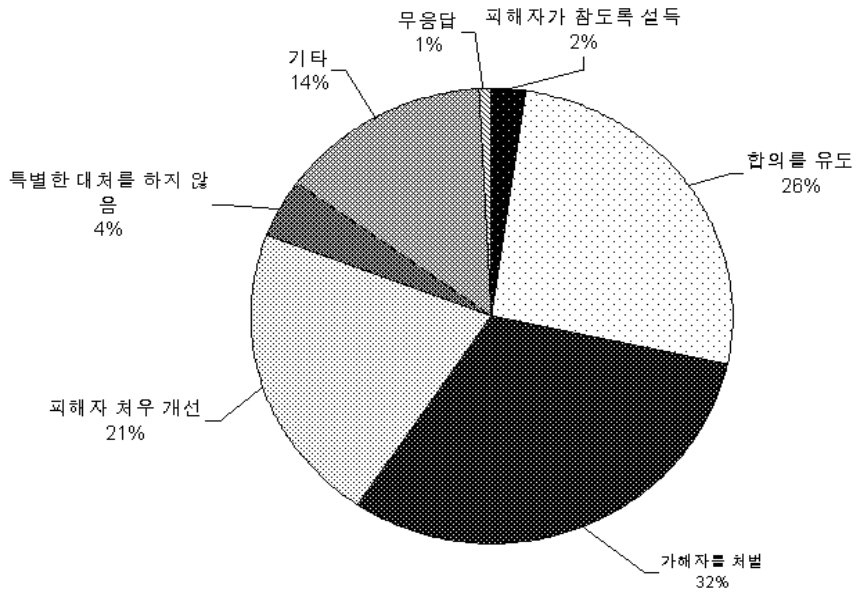
<표 4-11> 군 부적응 병사의 처우 개선과 간부의 지휘권 대립

척도	빈도	%
1: 전혀 대립되지 않는다	10	7.1
2: 거의 대립되지 않는다	17	12.1
3: 별로 대립되지 않는다	51	36.2
4: 약간 대립된다	35	24.8
5: 상당히 대립된다	13	9.2
6: 매우 대립된다	12	8.5
무응답	3	2.1
합계	1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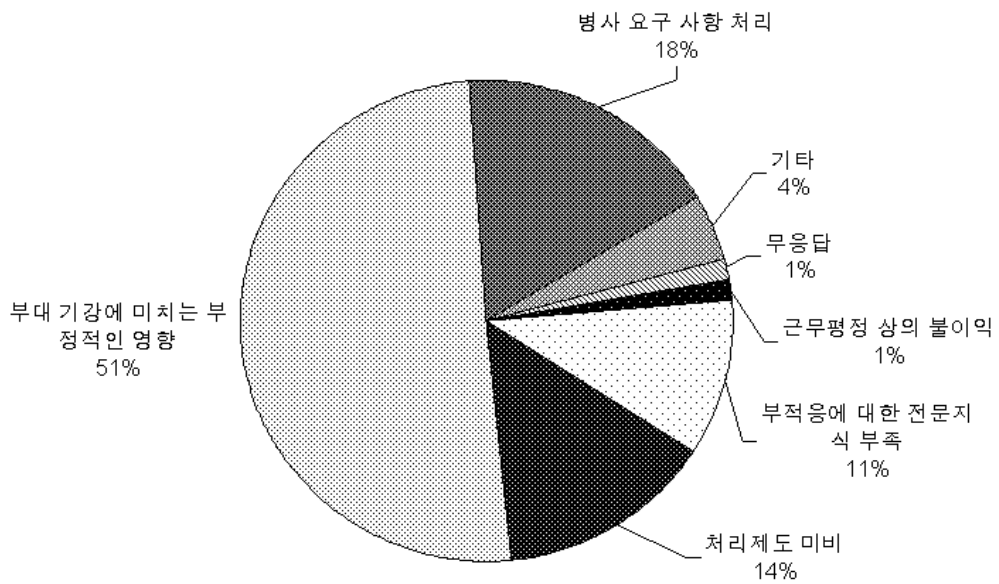
나)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대처 및 어려움

‘부적응 병사에게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해자를 처벌’에 32%, ‘합의를 유도’에 26.2%,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에 21.3%가 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사실 조사 후 고의성이 있으면 모두 처벌’, ‘가해자를 충고, 피해자를 격려’, ‘가해자 처벌, 원인제공 부적응 병사도 처벌’, ‘부대 사정을 고려한 규정 집행’, ‘끝없는 정신교육’, ‘면담 후 상급부대 보고 후 재분류’ 등이 나타났다.

부적응 병사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를 처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51%가 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부적응 병사에 대해서 권한은 없고 책임은 크다’, ‘공개되었을 때 병사 관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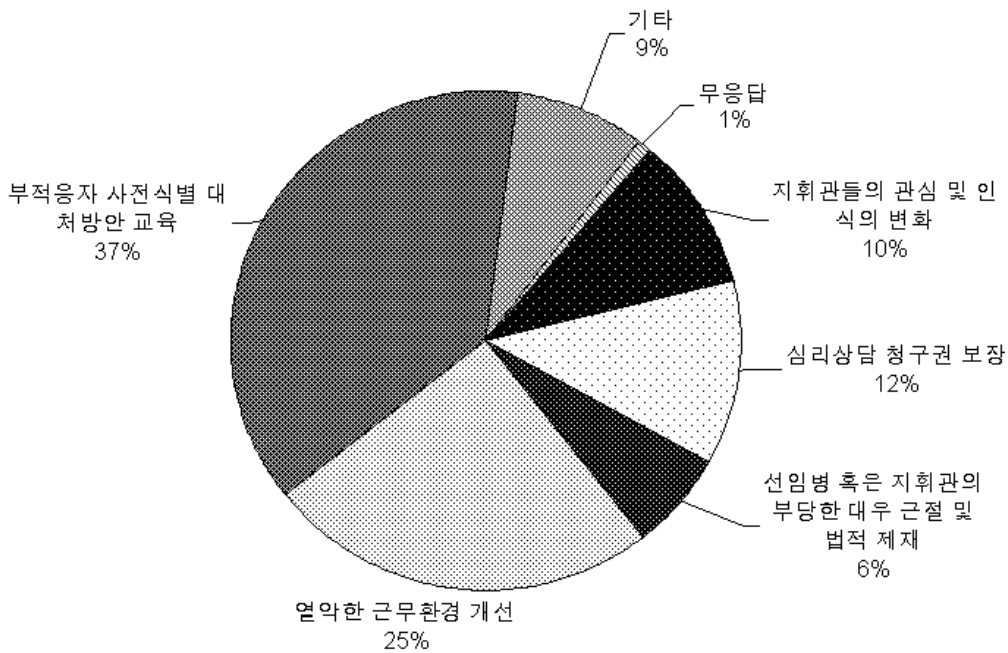


[그림 4-14]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대처



[그림 4-15] 부적응 병사의 인권문제 처리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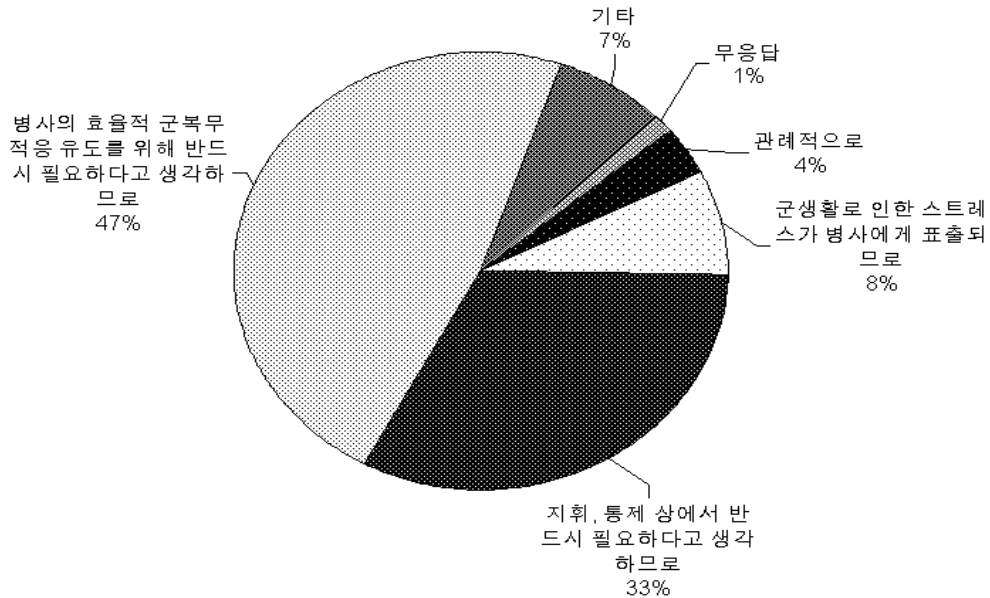
‘부적응 병사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입’에 대해 ‘부적응자 사전식별을 위한 대처 방안 교육’에 37%가 응답하였으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24.8%가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입대 전부터 철저한 감별’, ‘사전 식별하여 국민역으로 대치’ 등으로 징병 단계에서의 철저한 감별에 대한 욕구가 컸다.



[그림 4-16] 부적응 병사의 인권개선을 위한 개입

다)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인권침해 이유

‘간부가 부적응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지휘 통제 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33%가 있었으며, ‘병사의 효율적 군복무 적응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47%가 응답하였다.



[그림 4-17] 간부들의 부적응 병사 인권 침해 이유

‘병사가 군복무 부적합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부에 알리는 것을 꺼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4.4%가 없다, 25.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2> 군복무 부적합 판정이 요구되는 병사의 상부 보고

척도	빈도	%
1: 전혀 없다	48	34
2: 거의 없다	31	22
3: 별로 없다	26	18.4
4: 약간 있다	24	17
5: 상당히 있다	6	4.3
6: 매우 많다	6	4.3
합계	141	100.0

‘상부에 보고를 꺼린 이유’ 를 묻는 질문에 29.8%가 ‘부대적응을 위한 병사 자신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므로’ 에 응답하였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전역이 거의 불가능’ 에 12.1%가 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부적합 관정을 내리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스트레스’ , ‘교육만으로 가능’ , ‘부적응 병사의 노출로 인한 역효과 우려’ , ‘인권이라는 범위가 모호하고 인권이 침해당할 만큼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이 있다.

<표 4-13> 상부 보고 꺼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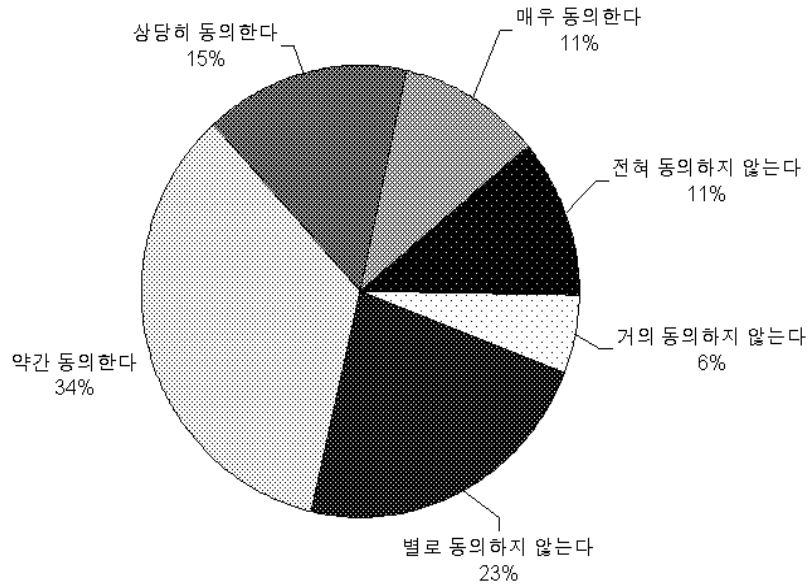
척도	빈도	%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전역이 거의 불가능	17	12.1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3	9.2
부대적응을 위한 병사 자신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므로	42	29.8
근무평정 불이익 우려	4	2.8
기타	17	12.1
무응답	48	34
합계	141	100.0

5) 군복무 부적응자 전역 및 현 제도에 대한 간부 인식

가) 심리적 질환에 대한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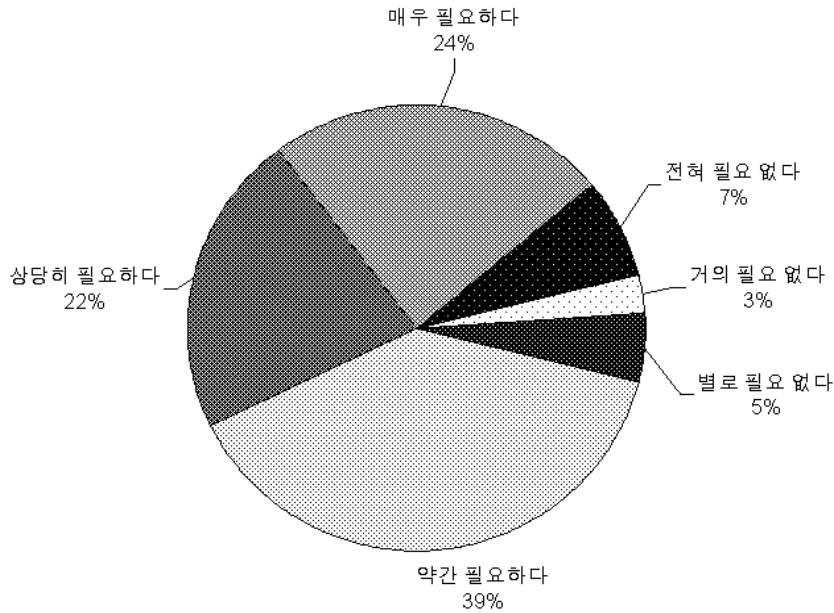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전역 심사과정에서 부적응 및 정신장애와 군복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 라는 응답에 동의한다에 60.4%가 응답하였고, 39.6%가 동의하

지 않는다'에 응답하였다.



[그림 4-18] 군복무 부적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신체적 질병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적응(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85.1%가 필요하다, 14.9%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군복무 중에 일어난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병전역에 대해 군 간부들의 상당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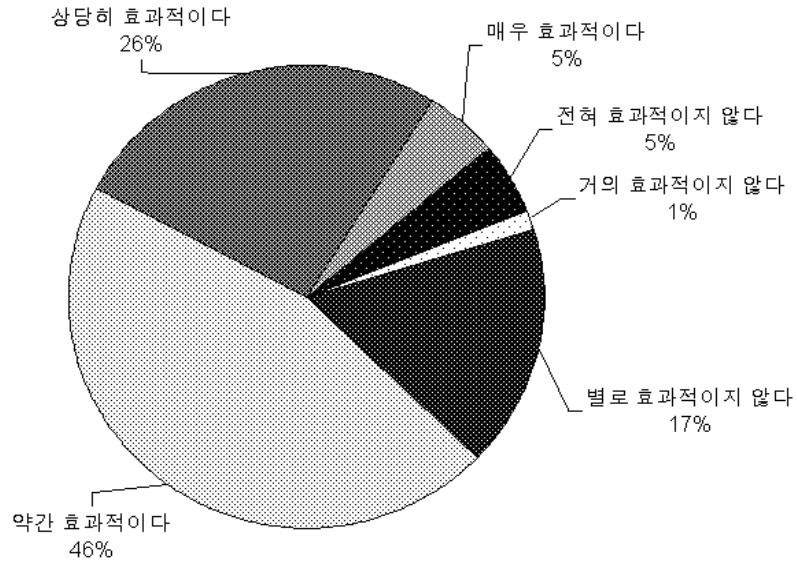


[그림 4-19] 심리적 부적응(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병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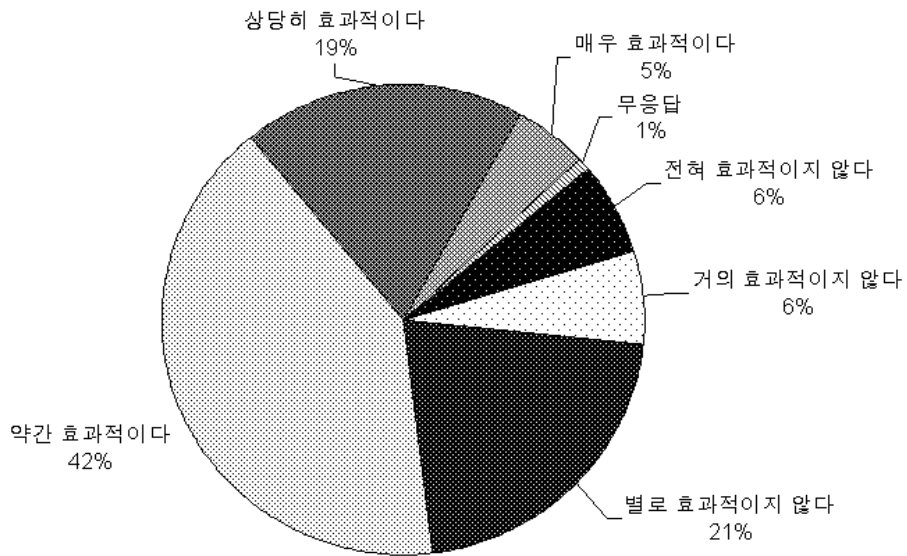
나) 제도 평가

‘관심병사제가 부적응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6.6%가 효과가 있다고, 23.4%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비전캠프가 부적응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인지 묻는 질문에 역시 34.1%가 효과 없다, 65.9%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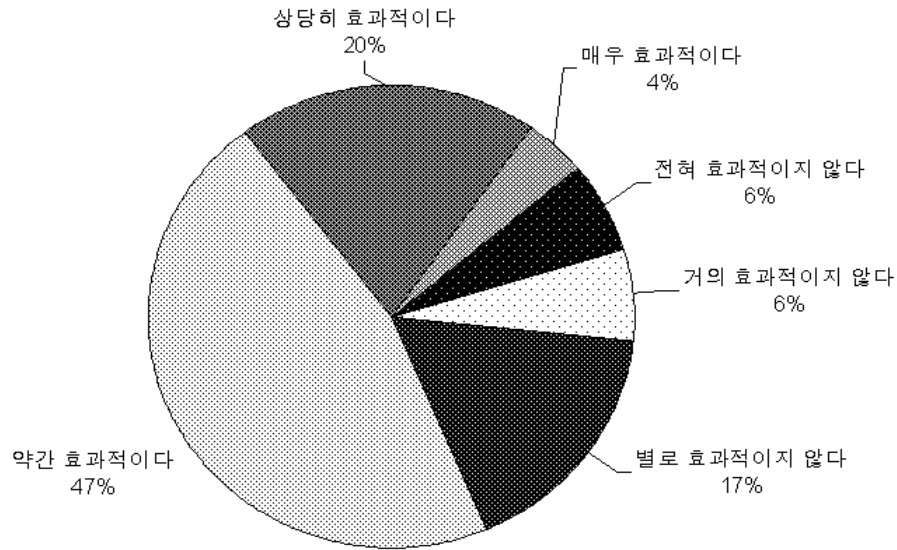


[그림 4-20] 관심병사제에 대한 의견



[그림 4-21] 비전캠프에 대한 군 간부의 의견

‘인권 상담관 제도는 부적응 병사들의 적응도를 높이는데 효과적’ 인지를 묻는 질문에 71%가 효과 있다, 29%가 효과 없다고 응답하였다. 19.9%의 간부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에 응답하였다.



[그림 4-22] 인권 상담관 제도에 대한 군 간부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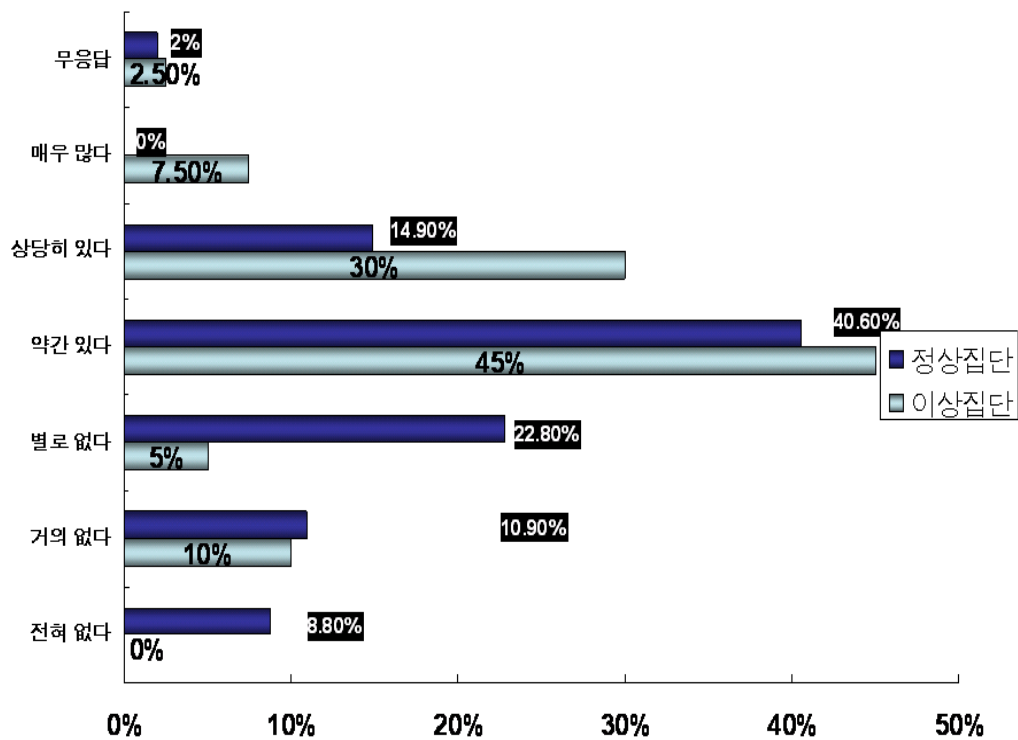
요약하면, 부적응 병사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관심 병사제’, ‘비전캠프’, ‘인권상담관 제도’ 는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도 전체의 20% 가량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각 제도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요구된다. 관심병사와 비전캠프 대상 인원 선발 시 이등병 혹은 생활기록부상 부모가 안계시거나 가정형편, 학교생활에 나타난 문제점만이 기준이 되고 있어 군 간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인권 상담관 제도 또한 ‘시설이나 전문성의 부재’ 혹은 ‘일과시간 이후 이용의 어려움’, ‘병력통제로 인한 어려움’ 으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도는 마련해 놓았지만 전문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시설미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 또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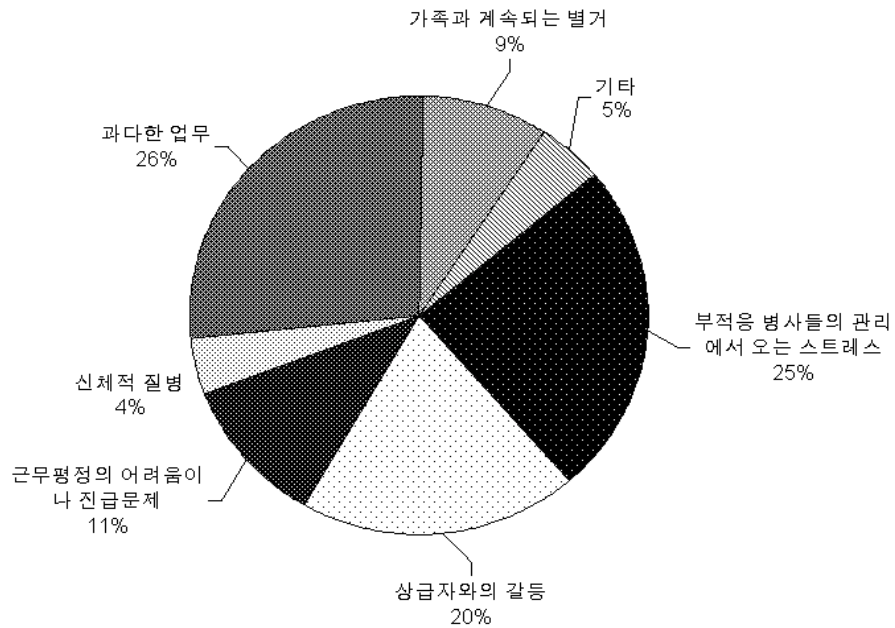
6) 간부들의 지휘부담 실태

‘현재 간부로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인지 묻는 질문에 적응집단 간부들이 55.5%, 부적응 집단 간부들의 82.5%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부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가 어렵다는 초반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4-23] 군 간부의 지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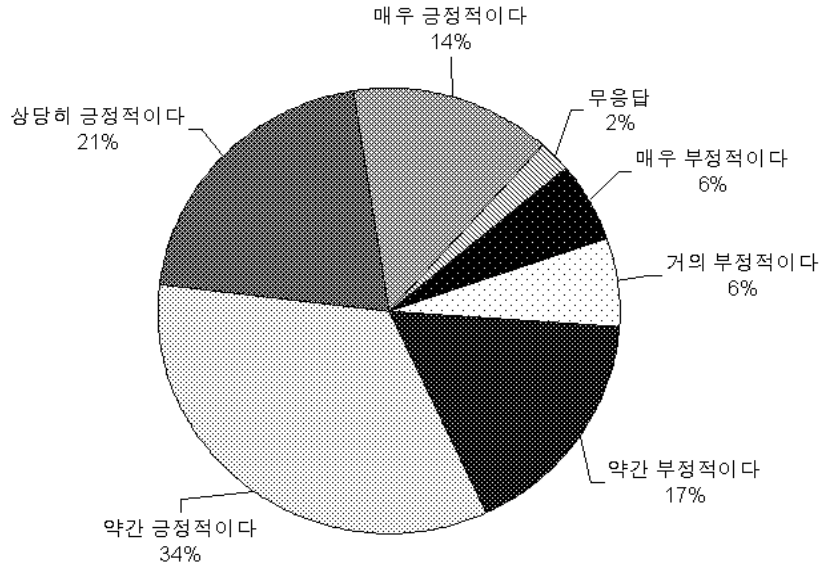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가지를 선택’ 하도록 했을 때 ‘과다한 업무’가 가장 높았으며, ‘부적응 병사들의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급자와의 갈등’ 순서로 반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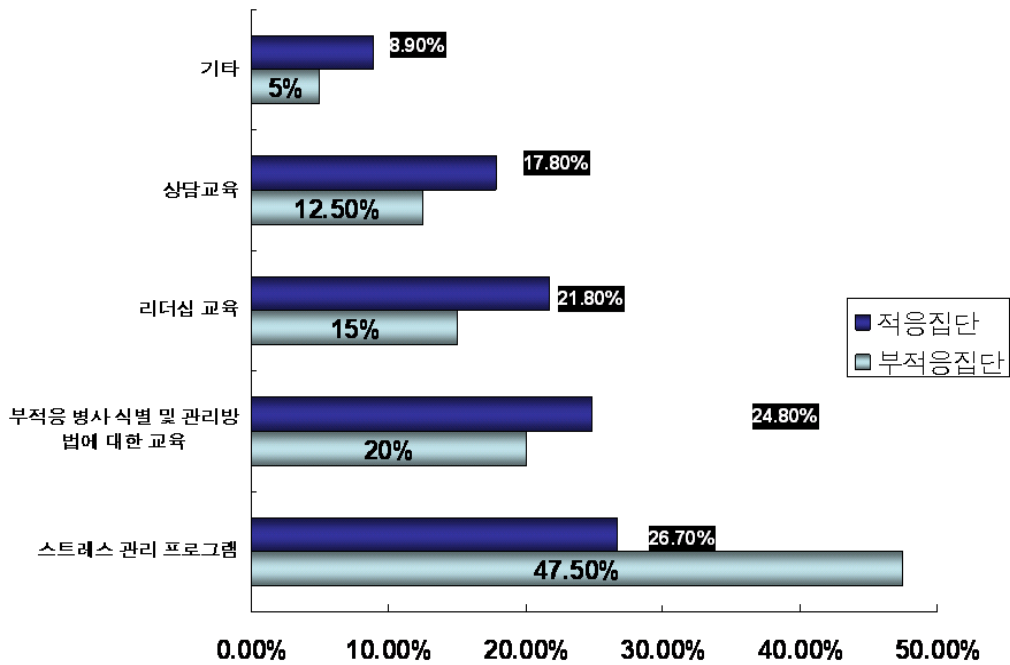
[그림 4-24] 군 간부의 어려움 유형

‘지휘 어려움으로 본인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의견에 간부들의 6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간부 정신건강 결과와 관련하여 간부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간부들의 지휘곤란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움’에서 부적응 군 간부 집단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47.5%가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권한의 부여 및 권한에 준하는 책임’,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행정적 간소화’ 등이 있었다.



[그림 4-25] 군 간부의 심리상담에 대한 의견



[그림 4-26] 간부들의 지휘곤란 해결을 위한 도움

다. 면접조사 결과

1) 부적응 병사 및 관심병사 분류 기준

신체허약, 내성적 성격, 컴퓨터 등 한가지에만 취미가 있는 경우, 가정결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상황, 어두운 얼굴표정,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A사단> 병사들 1/3 정도가 결손가정인데, 문제행동 이해에 어려움이 많다. 대체로 병사 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예를 들어, 결손가정 여부나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가장 눈에 띄는 관심병사는 입영 전 컴퓨터만 한 병사들 중 동료 병사들과 대화를 거의 안하고, 혼자만 동떨어져서 별개의 세상에 사는 병사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을 모르겠고 어떻게 접근해 관리해야할지 모르겠다. 잠재부적응병사 감별과 조치는 생각도 못한다.

<B사단> 위에서 내려오는 서류에 A, B, C급으로 분류 준거가 나와 있다. 복무부적응, 구타 및 가혹행위, 정신질환에서 쪽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면 A이고, B이고, C이고, 구체적인 것은 잘 기억 못하지만 복무부적응이라고 해도 A, B+, B, C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지침이 있고 분류기준이 있고, 복무부적응병사는 통상 C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복무부적응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추가되면 B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복무부적응 정도가 심하면 A급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100일 미만자는 통상 B급으로 관리한다. C급은 100일 미만도 아니면서 부적응경우, 심각한 경우는 아니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반드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다고 B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류는 상급부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긴 하는데 소대장 입장에서 보면 그 지침대로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재량 것 하기도 한다. A급은 자살 우려자, 위험한 병사는 많지는 않고, 우리 소

대는 A급 한명에 B급 2명, C급은 2명 관리하고 있다.

<C사단> 생활지도기록부 +KMPI를 통해 판단한다. A급 병사는 대대장이 관리하고, B급 관리하는 중대장, C급은 소대장 선에서 관리한다. 신교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소대장이 작성한 관찰기록과 군인성검사를 준거로 삼는다. 성격, KMPI 결과가 결정에 영향을 준다.

2) 부적응 병사 및 관심병사 관리 내용 및 노하우

특별한 노하우 없다.

생활지도기록부 활용하여 면담하고, 관리하지만 비밀보장이 어려워 힘들다.

눈에 띄고 공개적으로 노출된 경우 식별은 가능하지만 조치가 어렵다.

검사결과를 해석할 줄 몰라 거의 사용 못하고 있다.

답만 가르쳐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전입 후 100일은 특별 관리한다.

<A사단> 대인기피증, 두통호소. 이러한 병사들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무조건 감싸주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다.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보직배정에서 쉬운 것을 준다. 전문가도 아니니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지만 다른 인원을 붙여주고 나의 경험을 들려준다. 전입 후 100일은 특별 관리한다.

〈B사단〉 생활지도기록부가 있는데 면담을 해서 적고, A급은 거의 매일 면담. B급은 일주일에 한번. 근거유지를 해야 한다. A급은 2-3일에 한 번씩 쓰고, B급과 B+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한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적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소대장 한번, 행정본부에서 한번, 대장한테 보고한다. B+ 이상은 늘 관리하고 항상 관찰한다. 분대장이 보고하고, 소대장이 보고하는 형식이다. 면담을 할 때는 티가 나니까 담배를 편다든가 먹을 것 사러가면서 말을 하거나, 훈련 중에 말을 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눈에 안 띄게 관리를 해야 한다. 본인이 관심병사인줄 알고 있다. (낙인의 문제는 없는가?) 어쩔 수 없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챙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내 시야를 벗어났을 때가 항상 염려된다. 몰래 감시하거나 잘 지나, 옥하는 아이가 없는 괴롭히는 아이는 없나 늘 관리한다. 자고 있을 때도 확인한다.

〈C사단〉 대체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한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 다른 병사들한테 관심병사로 부각이 되니까 오며 가며 관리 점검을 하는 식이다. 부모님과도 가끔 통화를 해서 병사의 상황을 알려주고 궁금한 것을 묻는 식이다. 이 병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심병사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수시로 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렵다. 밖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대체로 비전캠프를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 면담을 실시한다. 선임 병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직접 써보기도 한다. 꾸짖기보다는 타이르는 식이다. 인권의 촉매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척결작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병사들의 특기를 살려주고 잠재력 개발, 토익, 한자 학습, 하루에 한 시간은 책 읽는 시간을 마련하여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관심병사들에게는 상담전공으로 석사를 마친 병사가 있어 실제로 담당하고 있다. 신체적 문제가 있어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옮겨간 경우의 병사 관리 중. 8가지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입대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의무대에 입실해 있고, 특별한 조치는 없다. 파견부대로 뺏다가 복귀된 후 악몽을 꾸다고 호소했다. TV라도 보고 안정한 후 자라고 했다. 절대 질책 안하고 다독인다. 그러나 효과는 없고, 모든 에너지는 다 이 병사에게 쏟고 해서 힘들다. 아들이 군대에서 힘들어 한다며 하루걸러 한 번씩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이다. 또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의 병사를 관리한다.

3) 어려운 점

비밀보장, 통제가 어렵다. 시간, 업무상 부담이 크다.

<A 사단> 부적응자 공개가 문제가 많은데 비밀유지 자체가 힘들다. 대인기피증, 두통호소. 이러한 병사들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입장. 감싸주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다. 면접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B 사단>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인원도 똑같이 혼내줘야 한다는 점이 힘들다. 그 인원만 혼낼 수 없고, 다른 병사들까지도 혼이 나고, 그 병사는 왜 혼나는지 모르고. 그것이 가장 힘들다. 자꾸 빠질 수 없고 그럴 때 시키면 계속 태도가 불량하고 계속 그러면 간부라고 해도 화가 날 때가 있다. 폭력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사고를 치니까 전방 사단은 피해야 할 것 같다. 실탄 지급이 안 되는 보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심병사를 파악하는 이유도 실탄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군대 내 간부는 선생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한다.

<C사단> 간부의 통제를 따라주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다. 관심병사가 이 병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모든 에너지가 이 병사에게만 쏟릴 수밖에 없을 때가 힘들다.

4) 제도의 문제점 및 제안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간소화,
징병단계 감별 강화
상담 및 인성교육담당시 전문가 활용.
대체복무제 실시.

<A사단>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많이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간부들에게는 부담스럽다. 적응장애가 주로 복무부적합심의회에서 확인되는데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징병단계에서 너무 허술하게 한다. 군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지만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효과적이지 않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실태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상담인력이 투입되면 좋겠다. 부적응병사를 식별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전역시키는 방법이 없다. 병이 아니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부대 내 전문가가 없고, 진찰받을 기회를 줄 수가 없다. 전문관리자가 필요하다. 병사의 성향, 가치관을 바꿔줄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징병단계부터 강도 높은 심리검사가 필요하다. 부적응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대처방법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부대로 보내져 오는 KMPI 자료를 어떻게 판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교육이 필요하다. 대대급으로 상담관이 의무화된다면 훨씬 지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병 시절에 상담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B사단>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 힘들다. 악용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시스템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병단계를 강화를 해야 할 것 같다.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 것이다. 너무 허술한 상황이다. 징병제도에서 신검의 체계를 바꿔야 한

다. (전문 상담관 투입은 어떤가?) 전문상담관이 와서 보내게 되면 낙인의 문제가 있다. 군대문화는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없을 뿐더러 그 상담관이 실질적 상담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잘 모를 수 있다. 형식적이 되면 안 된다. 전문상담자가 들어와도 간부들이 할 일은 별로 줄지 않을 것 같다. 대체 근무제가 좋을 것 같다. 군경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C사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지휘자들이 병사를 데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서류도 복잡하다. 하지만 얼마 전에 여성적 경향을 보이는 병사를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통해 전역을 도운 적이 있다. 상담요원 자체가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전문상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징병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입대를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중대 내 상담실 요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적응을 못하는 병사는 자기 문제다. 간부가 너무 보살피주면 주위사람들에게 눈에 가시다. 일주일에 한번 정신교육을 하지만 다 형식적이다. 지휘관들은 실제로 병사들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초급간부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 이등병 때는 야단을 안치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다. 상담병에게 상담 받으면 위로 보고가 올라가고 간부들 자체가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 지휘부담사례 예 >

성격장애로 의심되는 병사. 수시로 자살기도 하였으나 정말로 자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누가 조금만 노력봐도 바로 관리 간부에게 보고하고 죽고 싶다고 말함. 24시간 밀착 관찰하도록 상부명령을 받는 간부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해보일 정도로 의중 자살 사고 병사에게 영향을 받음.

가) 기본권 전문 상담관 제도

(1) 운영배경 및 현황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는 ‘복무 부적응 병사 보호’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군입장에서 보면 복무 부적응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군 사건·사고 예방과 같은 군차원의 당면 현안으로부터 병사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나아가 병영문화 개선에까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김광식 외, 2004).

‘기본권 전문상담관 제도’ 취지는 병사의 전문적 정신상담청구권을 보장하면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차원에서 군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권 전문상담관의 역할은 병영내의 기본권 침해 등 복무 중 제반 고충사항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여 부적응 병사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각급 지휘자들이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다(김광식 외, 2004).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차원에서, 육군에서는 7명의 기본권 전문상담관을 선발했다. 선발된 7명의 배경을 살펴보면,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의 민간 상담인력과 10년 이상 근무한 예비역이다. 2005년 초 국방부는 2006년까지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120여명, 2007년까지 연대급 이상 부대에 400여명을 확보 운영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김완일, 2006).

(2) 문제점 및 대안

• 전문 상담관 선발 주무 기관의 문제

현재 활동 중인 기본권 전문 상담관은 국방부가 주관하여 선발한 인원이 아니고, 각 군 차원에서 선발한 인원이다.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 이후 확대 시행하게 된다면, 전문 상담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선발 및 관리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

한, 국방부에 전문 상담관 업무를 관리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타당한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상향식 의사전달체계를 갖추어 상담활동 이후 겪게 되는 다양한 현장 고충들을 수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상담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가칭 ‘기본권 전문 상담관 자문위원회’ 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팀웍이 아닌 1인 근무체제의 문제

시범운영에 대한 엄정한 평가분석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상담심리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선발된 기본권 전문 상담관들의 영역과 전문성에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배경과 수련정도에 따른 것이다. 상담심리사는 병사의 심리적·정신적 적응에 관한 전문 조력자이고, 임상심리사는 각종 진단검사에 전문가이며, 사회복지사는 적응을 위해 병사의 주변 환경 조건 파악과 개선에 관한 전문가라 생각된다. 각 영역별 자격증에서는 2급보다는 1급이 전문성을 더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들 인력 모두가 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통합적이지는 못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5인 1조 구성, 즉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 군 경력자가 한 팀으로 연대급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5인 1조 팀웍 시스템이 예산확보와 기타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면, 각 연대급에 약물치료를 위한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배치하고, 대대급에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사가 한조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군 경력자는 연대급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대급에서 전문 상담관들이 도움을 요청할 시 파견 나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복무 부적응 병사의 감별, 진단, 치료를 위해 1인보다는 각기 전문 영역이 다른 2인 이상의 의견을 통합할 때, 개입내용과 방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군 상담 모델 부재

시범 운영 중이라 그런지, 현재 기본권 전문 상담관의 구체적인 업무, 권한, 책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3월 한국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본권 전문 상담관으로 육군과 해군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상담심리사들이 그간 업무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상담관련 업무라 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육군과 해군의 차이, 육군 내에서도 소속 군조직의 특성의 차이 등으로 각자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해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상담업무수행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군 상담에 대한 모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상담모델은 많은 효과적인 사례를 통해 개발되고 지속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군 상담 모델 부재는 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한 평가분석의 기준 부재와 맞물려 제도 운영과 검증에 있어서 주먹구구일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만약 전문 상담관 제도의 확대 시행이 결정된다면, 각 학계 관련자, 군 관련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상담관으로서 책임과 한계¹¹⁾, 실제적 개선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¹²⁾ 등을 제공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안정된 상담실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 상담관 제도 운영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 중 다른 하나는 전문 상담관과 해당 병사의 간부간의 협력 문제이다. 이 관계는 미묘한데, 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면 섭섭하듯이 자신이 관리하는 병사가 자신이 아닌 상담관에게만 가서 고충을 호소하고 돈독한 지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간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관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상담관과 간부들과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조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11) 예를 들어, 타당한 사유 없는 지휘관의 병사 상담자료 요구에 대한 거부권, 자살징후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처리 등.

12) 부적응 병사 상태에 따라 휴가, 외부 진료(약물치료, 신체질환 검사 등) 등을 해당 지휘자에게 요청, 실제적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상담시간 제공 요구 권한 등.

• 군 경력자 상담관 선발 문제

군 경력자는 다년간의 군복무로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 군 세부적인 실태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군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상담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 중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최소 6년의 학교교육, 수퍼비전, 개인분석, 공개상담사례 발표 수회,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수많은 상담경험과 워십 등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하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상담과 무관한 업무를 해온 경력자를 예비역 취업차원에서 선발한다면, ‘기본권 상담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군이 기대한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병사들로부터는 상담에 대한 불신 풍조를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접근성 문제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제도가 된다. 전문상담관제도는 사회에서 검증된 상담의 효과를 군에 적용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군의 특수한 상황, 병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전문상담관제도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사들과의 면담에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은 부적응 병사로 낙인찍힐 우려, 근무시간 중 상담을 하는 것의 어려움, 비밀보장의 어려움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군에서는 병사의 상담이나 상담으로 인한 조치 등에 대해 비밀이 지켜지기 어렵다. 사소한 개입도 병간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왕따나 갈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담실 이용 및 관련 조치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 특성, 병사 여건에 맞는 운영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병사들이 상담제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Vision Camp

비전캠프는 군 부적응을 겪고 있거나 군 부적응이 예상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응유도 프로그램으로서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군생활의 자신감을 키워주며 군복무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1) 운영현황

사단급과 군단급 부대에서 실시하며, 주관 부서는 인사처에서 관리한다. 사단급과 군단급의 운영 주기는 다소 상이하게 대체로 2달에 한번 혹은 분기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3박 4일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에 맞게 군복무 부적응자나 자살우려자로 예상되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대에 따라 군복무 부적응자나 자살 우려자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입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목적은 낙인의 문제로부터 부적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전캠프의 운영은 군종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 프로그램 내용

비전캠프에서는 명상의 시간, 심리극, 가계도 그리기, 심리 상담, 쏫불의식 등의 심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나 실제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은 전체의 25.5%(97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40명은 상황이 악화돼 전역하는 등 교육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영선의원 자료). 그러나 이러한 효과성 검증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검증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간부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에 6.4%,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에 6.4%,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에 21.3%, '효과적이다'에는 6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간부들에 비전캠프에 대해서 대체로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도 34.1%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부대별로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군 간부들과의 면담에서는 비전캠프를 갔다 온 당시에는 좀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의 효과성, 운영자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 문제점 및 대안

• 낙인의 문제

육군 관계자는 "입소 병사들이 캠프의 목적을 이미 알고 있어 입소자로 선정된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입소 병사 자신이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비전캠프에 입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나 자발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간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비전캠프의 입소 이유와 과정을 소개하고, 부대 내에서 비전캠프 체험 병사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병사들은 비전캠프 참가로 인한 낙인문제를 해소하고자 간부들이 적응 병사들을 함께 가도록 한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 전문성의 부족

비전캠프 운영 전문요원 부족으로 대부분 군종장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교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복무 부적응자나 자살 우려자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인 만큼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장애에 대한 전문 경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타종교를 믿고 있는 병사들의 경우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캠프에 대한 거부감 혹은 심리적인 위축도 교육 효과 감소의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상담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전캠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예산 활용의 문제

실제로 비전캠프의 운영 예산을 통해 살펴보면, 육군본부의 연간 예산이 585만원이며 대부분 군중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형식적인 운영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새로운 캠프를 운영할 경우 예산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론과 검증이 뒷받침되지 못한 비체계성을 알 수 있다. 군 부적응 병사들의 문제는 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이다. SCL-90-R의 증상 순위 상으로도, 병사들이 선택한 어려움 유형에서도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임이 드러난다. 군자살사고의 원인도 개인 내적 갈등보다는 개인 간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사 면담에서도 가장 큰 군적응요소, 또는 보호요소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개입은 대인관계 측면에 맞추어 지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현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볼 때 명상, 가계도 그리기, egogram 등 프로그램 대부분이 부적응 병사 자신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심리변화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2박 3일 만에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기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병영 내 지지관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적응 병사들에게 자신과 다른 병사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대인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부적응 병사들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은 “나와 남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남도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변화를 통해 다른 병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목상으로는 자살예방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행 비전캠프의 프로그램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한 효과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 퇴소 후 전문상담 관리 부족

3박 4일 이라는 짧은 시간은 부적응 병사나 자살우려자의 성향이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사 비전캠프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치유하거나 변화에 대한 동기가 형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복무 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 체제로는 비전캠프가 효과적이어도 부대 후 생활에서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에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 내 전문상담자를 배치하거나 지역 내 전문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부적응병사의 부대 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5. 전역단계

병사는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군사행정기관 구성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을 가지는 동시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장병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특별권력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본권의 제한 또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와 같이 헌법에 근거해서 장병에게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에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정신적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경제권(연금청구권, 배상책임 등), 정치권, 청구권, 사회적 기본권이 있다.

하지만 군이라는 조직의 존재목적과 특수성으로 인해 장병들의 기본권이 제한 혹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기본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입대 전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나 소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통제, 새로운 기술 및 암호체계, 안정된 지지기반(가정)에서 떨어져 경험하게 되는 낙후된 부대환경,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한 정보 이용의 갑작스러운 차단, 병 내부의 위협적인 위계질서, 간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비자발적인 충성 등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병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경험된다.

특히 이병시절 문제나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는 일시적인 적응장애를 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이어지지만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울, 불안, 충동적인 행동, 자해, 공격적인 행동, 정신병의 발병, 자살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이나 군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군복무부적응 병사들에 대해 현재 군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뛰어 넘어,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부적응자를 위한 시스템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징병단계의 정확한 감별, 복

무단계에서의 식별 및 관리,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역단계에서 적시적인 전역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정책이 그것이다.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병사를 사전에 감별하고, 복무 중 부적응 병사를 식별·관리하며, 몹시 어려운 병사들은 빠른 전역과 전역 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응 병사관리 시스템에서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전역 및 보상정책은 해당 병사와 동료 병사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복무 부적응자들의 전역 과정에 대한 합당한 법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징병 및 복무 단계에서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법, 제도의 마련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적응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당한 전역과 보상 체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것이며, 비자발적인 징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부적응자와 관련된 전역과 보상정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부적응자로 인한 지휘부담, 군 사건·사고, 인권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초 단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군복무 부적응자의 전역은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전역과 심신장애 전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처리절차, 실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기술할 것이며, 심신장애로 전역을 할 경우 질환에 대한 공상인정 실태와 보상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¹³⁾.

13) 현역복무부적합처리와 심신장애 전역은 매우 다양한 이유와 질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적응자와 정신질환자의 전역과 보상제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기술할 것이다.

가. 군복무 부적응자의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전역

1) 내용 및 근거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군복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군복무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전역시킴으로써 군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7 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육군 규정에 해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군복무 부적합자 대상 기준

법령 상 복무 부적응자의 정확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적응자의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또한 찾을 수 없다. 다만, 육군규정에 ‘군복무 부적합자’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부적응의 정도가 심해 군에서 복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표 5-1>에 제시된 군복무 부적합자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나항에 심신장애자로서 신체등위 5급~6급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서 군복무 불가능한 자를 기술하고 있다. 동시에 다항, 자항, 차항, 카항의 내용 역시 심신장애자로서 신체 등위 5급 미만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반복해 기술하고 있다. 즉, 대상기준의 특성에 대한 기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그 의미가 애매하고 중복 기술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 간부들이 이 대상기준 지침을 가지고 부적응 병사의 부적합 처리를 돕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판단이 분명한 질환(야맹, 야뇨, 간질)이나 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 에 속하는 가정 사유 이외에는 소극적인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근거에 기초한 군복무 부적합자 대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표 5-1> 군복무 부적합자 대상기준

- 가. 2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나. 심신장애자로서 신체등위 5급~6급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 군복무 불가능한 자
- 다. 간질, 야뇨, 야맹증,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이 있는 자
- 라.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등
- 마.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 바.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자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영아 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자
- 사.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아.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 자. 군 생활 적응이 심히 곤란한 자(저능, 문제아)
- 차. 동일 병명으로 3회 이상 후송입원한자
- 카. 기타 사고 우려자 (주벽, 난폭, 알코올 중독, 심신박약)

- 육군규정 102, 제 58조 -

3) 처리 절차

소속부대장은 군복무 부적합자에 대하여 장관급 부대장에게 근거서류를 붙임 하여 보고하고 보고서를 접수한 장관급 부대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역심의 부대장에게 보고한다. 군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한 전역심의 부대장은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전역심사위원회

인사처장, 일반참모부 과장급 장교(2명), 부관(인사처리)과장,
군 의(의무과장 또는 중령급 장교), 헌병, 법무(중령급 장교), 부사관 대표,
인사처리 장교(부관)
2/3이상 위원의 출석을 개최, 전원 찬성으로 의결

↑ 7일 이내에 의결

군복무부적합자 조사 위원회

참모장, 일반참모, 법무참모, 헌병대장, 의무대장, 부사관 대표, 부관참모
2/3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접수 10일 이내에 조사, 7일 이내 보고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 보고,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

구비서류 : 지휘관 확인서, 동료확인서(2인), 전문군의관 관찰 소견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

소속부대장 부적합자 발견

질병/심신장애, 근무부적격자, 수형자 구분

[그림 5-1]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절차

4)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가)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 위원회

위원회는 사단급에서 이루어지며 소속부대에서 제출한 부적합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접수 10일 이내에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 후, 전역 심사권 부대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조

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참모장, 일반참모, 법무참모, 헌병대장, 의무대장, 부사관 대표, 부관 참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2/3 이상이 참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에 군 의관(의무대장)이 참여하지만 정신과 군의관이 아니며, 정신건강상 문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전문 위원도 참여하지 않는다.

비록 조사위원회가 최후 전역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적응자의 초기 개입에 참여하여 전역심사위원회로 이후 지속 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관련 질병 전공 군의관을 조사위원회에 모두 배치할 수 없는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정신과 군의관 이외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역심사 위원회

사단급에서 부적합자로 접수된 병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전역심사 위원회는 육군본부 및 군사령부(1, 2, 3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사처장, 일반참모부 과장급 장교(2명), 부관(인사처리)과장, 군의(의무과장 또는 중령급 장교), 헌병, 법무(중령급 장교), 부사관 대표, 인사처리 장교(부관)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 개최는 위원들 전체의 2/3이상 위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2/3이상(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주 1회씩 이루어지며 필요시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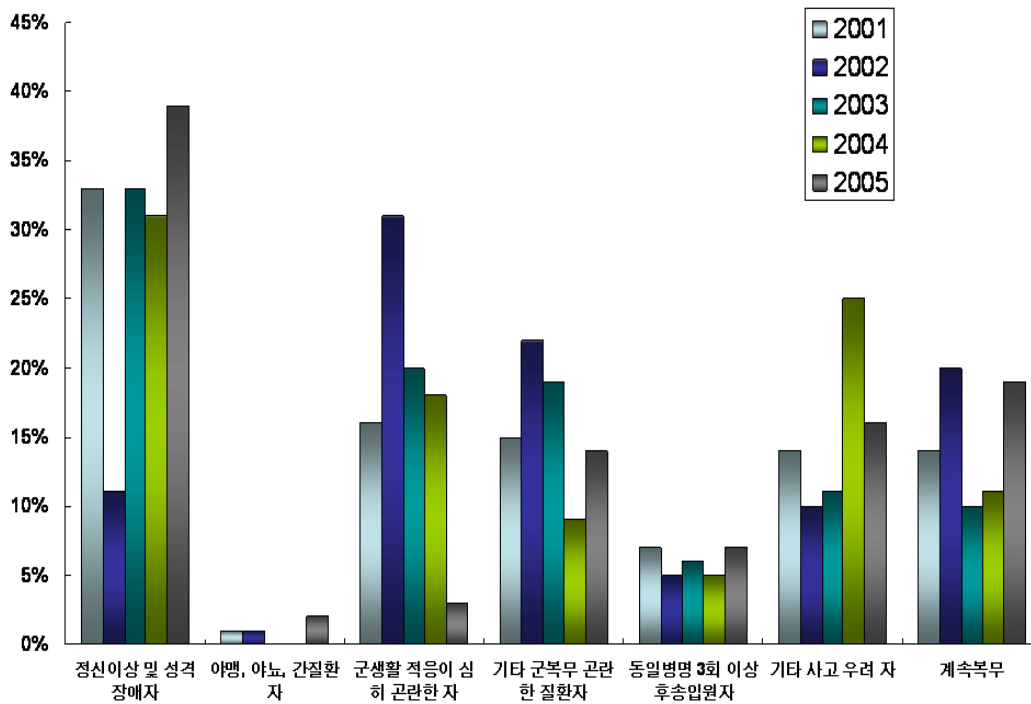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역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무과장(군의관)이 부적응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하는데 이들 역시, 정신과 군의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현역복무부적합처리의 최후 전역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전역 결정 시 전문성의 보강은 매우 중요하다. 심신장애의 전역에서 신체 등위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의 전공 군의관들이 실시하고 있듯이 현역복무부적합처리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심신장애에서 5급에 이르지 못한 병사들의 많은 수가 사실상 현역복무부적합처리 대상으로 흡수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원들의 전문성 보강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5)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실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실태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자 1,155명 중 86.3%가 전역하였다. 전역 사유에는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가 가장 383명으로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으며, ‘군 생활 적응이 심히 곤란한 자’에 187명으로 전체의 19%가 해당된다.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와 ‘군 생활 적응이 곤란한 자’, ‘기타 군복무가 곤란한 질환자’, ‘기타 사고 우려자’, ‘동일 병명 3회 후송 입원자’는 그 개념상 서로 중첩된다. 그 중에서 ‘군 생활 적응이 곤란한 자’, ‘기타 군복무가 곤란한 질환자’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육군규정의 대상기준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그림 5-2] 2001-2005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실태

<표 5-2>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병 처리 실태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1,155	154	210	236	307	248
전 원	소 계	997	123	190	210	249	225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	383	17	70	74	120	102
	야맹, 야노, 간질환자	11	1	1	1	5	3
	군 생활 적응이 심히 곤란한 자	187	47	43	42	9	46
	기타 군복무가 곤란한 질환자	170	34	39	21	43	33
	동일병명 3회 이상 후송 입원자	85	8	13	12	22	30
	기타 사고 우려 자	161	16	24	60	50	11
계속 복무		158	31	20	26	58	23

2005년 한 해 동안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심사과정에서 불가처리된 병사 23명의 불가 사유를 살펴본 결과 자대조치 미흡과 고의성(약용) 내재에 각각 7명과 8명이 해당되며, 병원 후송 후 재심사가 7명이었다.

<표 5-3> 복무 부적합 처리 불가 사유별 현황 (2005년도)

구분	자대조치 미흡	질병 상태 경미	고의성 내재	수형자	군병원후송 재심사	계
불가 이유	7	1	8	.	7	23

04년부터 05년까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복무 결정된 자의 근무실태를 살펴보면 총 60명 중 '보직조정 및 특별관리 지도' 로 근무를 지속한 인원이 27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보호관심병으로 특별 관리' 되고 있는 인원이 23명으

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특별 관리나 보호관심병의 형태로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대부분이며, 자살과 의병전역도 4명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대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며, 실제로 병 자신의 인권 및 고충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에게도 지속되는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병력 감소를 염려한 군의 무리한 징병,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역으로 군 병력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5-4> 전역 심의 결과 ‘복무’ 결정자에 대한 근무실태(04~05년)

근 무 실태	계(60명)
· 입/퇴원 및 보직조정, 특별관리 지도 등으로 근무	27(45%)
· 복무기피/불복종으로 구속 수감	3(5%)
· 지속적인 지휘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심병으로 특별관리	23(38%)
· 부적합 재심의를 통한 전역/심의대기자	3(5%)
· 기타(자살 1, 의병3)	4(7%)

- 출처: 21세기 강군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개선 연구백서 -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제도 개선안

군은 현재 “21세기 강군육성”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모두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현역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병 교육 중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 활성화

부적합자를 징병단계에서 정확하게 감별하여 입대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과 신병교육

수료 전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치 제도를 신설하여 병무청 검사자료와 군인성검사, 그리고 신병교육에서의 행동관찰을 종합하여 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나) 현역복무부적합 정도에 따라 병역처분 다양화 개선

현역복무부적합자 역종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부적합 판정 시 제 국민역에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보충역 처분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입영 후 현역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충역 기간을 단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 권한 위임

각 군 실정에 맞게 판정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를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각 군(군사령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역처리를 장관급 부대로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부대별 시준이 상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는 점과 부조리와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적시적인 부적합 처리와 예하 부대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적합 대상 기준이나 전역 결정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권한 위임은 의도와 달리 효과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신장애 전역 제도

1) 내용 및 법적근거

심신장애전역은 징병 및 신체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가 5, 6급인 자의 전역제도로서

군복무중 외상과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군복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역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로는 ‘징병 및 신체검사 검사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전역기준

현역병인 경우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군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하고,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5급의 경우는 제 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하게 된다. 군복무 부적응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 검사규칙’을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표 5-5>를 살펴보면 정신과 질환과 관련하여 총 13개 질환에 대해 각각 관찰요망,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하고 있다. 질환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급수를 설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중등도는 3~4급을 부여하며, 고도는 5급 ~ 6급으로 전역 대상자들에 해당한다. ‘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이 나타나는’의 경우에는 7급 혹은 3~4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거력이 있으면서 현재 증상이 나타나는’인 경우에 5급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어려운 점은 정신과의 경우 4급과 5급의 경계가 애매하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진단이 서로 상이하여 정신질환에서 5급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진으로 정확하게 판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병사들을 식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군병원 정신과에서는 비교적 증상이 분명한 정신지체, 정신분열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몇몇의 질환을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다는 증거가 분명하고, 현중인 경우가 확인될 때 5급 이상의 판정을 내리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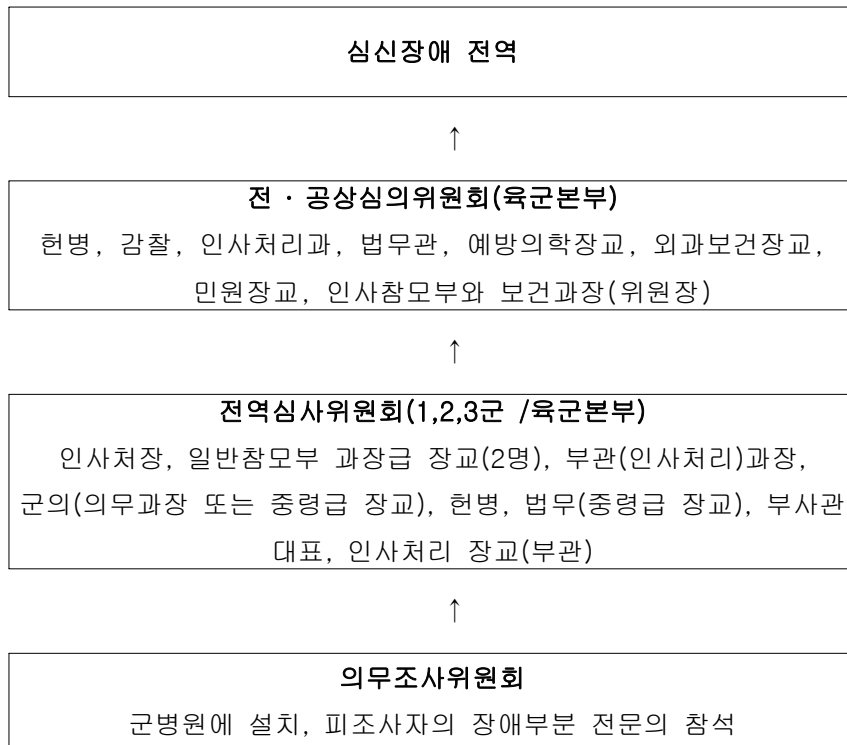
위와 같은 실태로 인해, 하루에 군병원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는 병사들의 20-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응장애 및 적응장애(의증)을 진단받고 있지만 이들의 세밀한 진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심신장애 전역 대상에서도 배제되면서 이들을 관리할 전문 인력 또한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5-5> 질병 신체검사 검사규칙 내용 (정신과)

질병·심신장애 내용	정도 구분 /평가기준의 예
<p>1. 기질성 정신장애 (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p> <p>2. 물질관련장애 (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p> <p>3. 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p> <p>4. 기타 정신병적 장애</p> <p>5.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p> <p>6. 주요 우울장애</p> <p>7. 그 밖의 기분장애</p> <p>8. 신경증적 장애</p> <p>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 장애등)</p> <p>10.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장애, 성적선호장애 등)</p> <p>11.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IQ 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을 판단)</p> <p>12.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유소아기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p> <p>13. 신경정신과적 관찰(특정불능의 정신장애)</p>	<p>(7급)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p> <p>(3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p> <p>(4급)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p> <p>(5급) · 고도(1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거나 1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자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p> <p>-장애에 따라 정도내용은 다소 상이. 위자료는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의 예</p>

3) 심신장애 전역 절차

심신장애 전역은 환자 진료 종결권이 있는 군병원에 설치된 의무조사 위원회의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전역 상신이 된 자에 한하여 각 군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1군, 2군, 3군, 육본 모두 4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급수가 1-7급에 해당하는 병사들은 중앙 전·공상 심의위원회에서 공상여부를 판정한 후에 군병원을 통해 최종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사실상 전역결정이 마무리된다.



[그림 5-3] 전역절차 및 각 위원회의 구성

4)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가) 의무조사위원회

군병원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료종결 병원인 군단지원병원, 군지원병원, 국군후방병원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담당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중에는 피조사 대상자의 장애부분에 대한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조사위원회의 가장 주된 업무는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한 심신장애등급판정,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의한 심신장애등급 판정, 군인연금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보상등급의 판정이다. 반면, 전·공상 판정 권한은 의무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전역심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는 인사처장(위원장), 일반참모부 과장급 장교(2명), 부관(인사관리)과장, 군의(의무과장 또는 중령급 장교), 헌병, 법무(중령급 장교), 부사관 대표,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입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7일 이내에 전역심사권 부대에 보고하고 1차 의무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7일 이내 의결 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998년 군의관 병무비리문제로 인해 의무병과만이 갖고 있는 전역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정된 신체급수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기능을 할 수 없으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 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

전·공상심의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받은 신체급수가 1-7급(보상대상등급)이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전역결정이 된 병사들에 대해 전·공상에 대한 판정을 한다. 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는 현재 헌병, 감찰, 인사 처리과, 법무관, 예방의학 장교, 외과보건의료, 민원장교, 인사참모부와 보건과장(위원장)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2/3이 참석하면 개최할 수 있다. 개최 간격은 월 1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시 2회 실시한다. 월 1회 실시 시 2시간 정도 이루어지며 약 200명 정도의 공상판정을 처리하고 있다.

5) 심신장애 전역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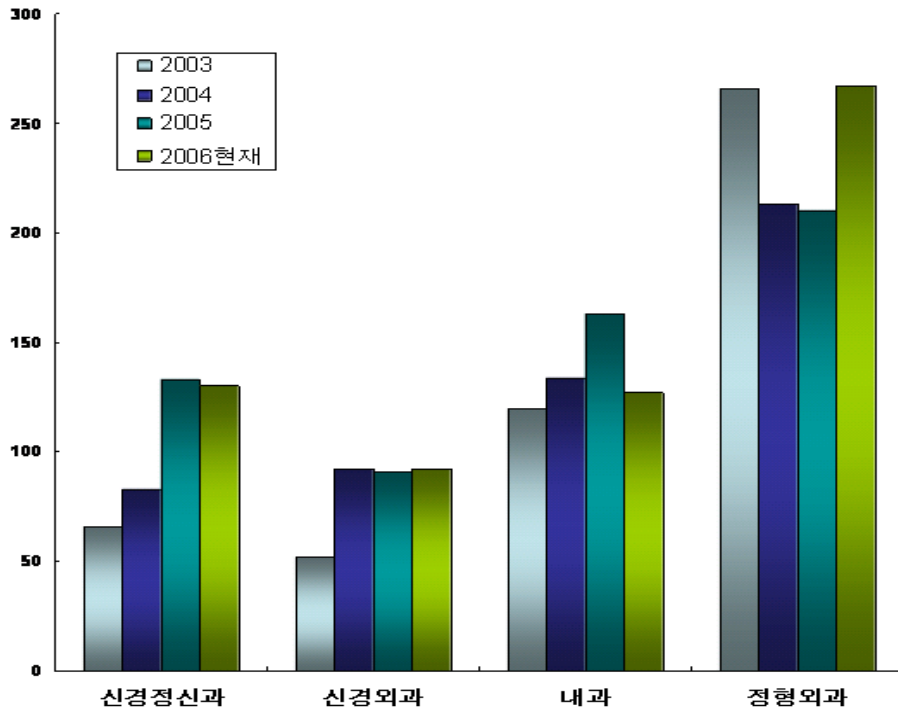
최근 5년 간 심신장애 전역실태<표 5-6>를 살펴보면 모두 18,224명이며 이 중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부동의하여 계속 복무를 신청한 186명을 제외한 17,906명이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다.

<표 5-6>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 실태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총계	3,909	3,826	3,548	3,537	3,404	18,224
전역	3,909	3,826	3,548	3,405	3,218	17,906
*계속복무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132	186	318

*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판정에 부동의한 자

<표 5-7>은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를 주요 과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외상환자들이 가장 많은 신경외과, 정형외과와 질병 해당이 가장 많은 내과, 군복무 부적응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경정신과를 비교해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 순이다. 신경정신과의 심신장애 전역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4] 2003 ~ 2006 현재 주요 진료과목별 심신장애 전역처리 대상자수

<표 5-7> 2003 ~ 2006 현재 주요 진료과목별 심신장애 전역처리 대상자수

진료과목	2003	2004	2005	2006~현재
신경정신과	66	83	133	130
신경외과	52	92	91	92
내과	120	134	163	127
정형외과	266	213	210	267

6) 심신장애 전역자에 대한 전·공상 처리 및 보상체계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를 위해 사건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처리체계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 현재 군은 전·공상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표 5-8>, 규정에 따라 군과 관련하여 일어난 모든 상해는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상이한 보상과 예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전·공상 정의

심신장애는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상은 교육·훈련 기타 공무로 인해 생긴 장애를 말하며, ‘비전공상’이라 함은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교육훈련 및 병영생활 중 타인의 과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공상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입영 전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는 비공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전·공상 정의에는 입영 전 질병이 군에 와서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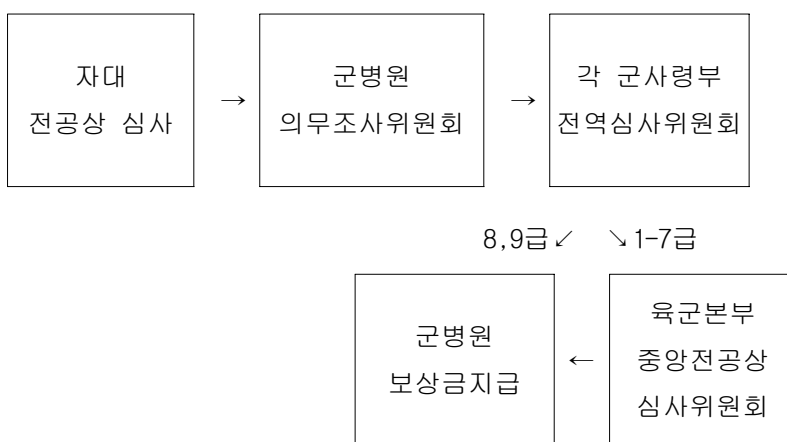
<표 5-8> 전·공상 구분 및 정의 (육규 102, 61조)

구분	정의
전상	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작업 중 입은 상이
공상	가. 교육훈련 및 기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심신장애(상관 지휘하의 단체 행동 중 발생한 심신장애를 포함하되 고의, 중대한 과실 및 비신사적 행위에 기인된 경우는 제외) 나. 공용(전속, 전입 포함) 및 특별휴가(업무와 관련시) 기간 중 발생한 심신장애(단, 연가, 청원휴가, 무단이탈 및 비근무시간 중 발생한 심신장애에는 제외) 다. 교육훈련 및 병영생활 중 타인의 과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심신장애 라. 출·퇴근 시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의하여 입은 심신장애
비전·공상	가. 구금 및 복역 중 발생한 심신장애 나. 입영 전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다. 기타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심신장애

나) 전 · 공상 판정 절차

전 · 공상 판정은 1차적으로 소속 부대의 간부들이 ‘전 · 공상심의의결서’ 를 작성할 때 전 · 공상을 판정하여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간부들은 ‘전 · 공상분류기준표’ <표 5-9>에 근거하여 병사의 심신장애의 공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군 간부가 전 · 공상의 판단을 1차적으로 실시할 경우, 질병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갖기 어려워 정확한 판정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민원을 의식한 군 간부들이 무조건 공상처리로 작성을 해주거나 혹은 이와는 반대로 정신과 질환의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병사 개인의 몫으로 돌리면서 대부분 비공상 처리로 작성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는 전공상을 검토하기는 하지만 이를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급수확인을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전역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전역절차가 모두 끝이 나면 그 이후 전 · 공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상판정 여부가 결정된다. 위에서 기술된 이러한 현 절차의 경우에는 전역 후 전 · 공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상처리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뒤늦게 ‘비공상’ 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 · 공상 처리 절차는 [그림 5-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5] 전 · 공상 판정의 세부절차

<표 5-9> 전공상 심의 분류 기준표

구분	기준 번호	내용	비고
전사 및 전상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보훈대상 ※재해 보상대상
	1-2	· 1-1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된 사망자	"
	1-3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순직 및 공상	2-1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상이자	"
	2-2	·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4	· 군에서 공급한 음식물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및 공용시간의 공무수행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
	2-5	·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및 공용시간의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포함)	"
	2-6	·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7	· 출, 퇴근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8	· 출장기간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9	·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0	·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1	· 소속관련 통제하의 행사참가, 체력단련, 기타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2	· 휴가, 외출, 외박기간 중 강, 절도범 및 재해시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2- 1	·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 하여 그로 인한 사망, 상이자(무단이탈자 제외)	"
2-12- 2	· 독신자 숙소 또는 관사에서 취침 중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사고자	"	
2-13	·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 사망 및 비전 공상	3-1	· 장난,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사망 보상대상
	3-2	·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 조사 중 질병 및 장애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3-3	· 휴가, 외출, 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망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
	3-4	· 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
	3-5	·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무 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	"
	4-1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	※ 비해당
	5-1	·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

다) 전공상 분류 기준의 문제점

전공상 분류기준표를 살펴보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해서는 공상인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자살자의 경우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군의 입장과 유가족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어 있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은 한 개인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행동으로 한 개인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그 자체로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또 다른 하나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극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인해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또한 환경이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역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환경이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취약한 개인의 소인이 결합할 때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고통 또한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 관계에서

극단적인 고통과 관계의 상실, 단절을 경험할 때 개인은 소외와 고립이라는 고통을 견디는 대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살은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 구조적인 측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군자살자 역시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개인의 몫으로 돌리거나 개인과 무관한 조직만의 책임 차원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1) 군자살자 실태

현재 군의 자살 사고 실태는 <표 5-10>에 제시되어 있다. 2000년 이후로 군자살자는 다행스럽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자살자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관계로 인한 인원이 39명이며, 부대관계로 인한 자살이 무려 12명에 이른다. 원인별로 세부적인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를 받아볼 수 없어 개인 관계 내의 세부적인 사항과 군대 관계에서 세부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인 인원은 알 수 없었다. 복무 이후에 시기별로 자살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받아볼 수 없어 자살자에 관한 자료접근의 한계를 실감할 수 있었다.

<표 5-10> 자살자 통계

구분(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0월 현재
군자살사고	82	66	79	69	66	38	30

<표 5-11> 자살 원인별 현황

구분	부대관계	개인관계	부대/개인 복합문제
	(구타가혹행위, 복무부적응 군탈 처벌 우려, 복무부적응에 의한 정신질환)	(부채, 내성적 성격, 가정불우, 지병비관, 애인문제, 삶의 비관 등)	
2005	12	39	.
2006 10월 현재	17	26	6
계	29	65	6

(2) 군자살자에 대한 현행 보상체계

각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살자에 대한 공상인정과 보상체계<표 5-12>를 살펴보면, 모두 자살자는 공상인정과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사고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망위로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반면 공무사망으로 분류되는 사망사고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 보훈연금,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표 5-12> 보상체계

구분	내용
군인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와 관련된 사망 시 사망일시금/유족연금/재해보상금등 지급 · 일반 사망 시 퇴직연금/재해보상금 지급 ·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 시 보상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자 제외 조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기 원인이 된 경우 ·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국립묘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 사망한자 다 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 · 자해자, 순직자 이외의 변사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
군인사법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상”이라 함은 교육, 훈련 기타 공무로 인해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 “비전공상”은 “전상”과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를 말한다.
전공사상분류기준 5-1 (국방부훈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5-1.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 시 공상에서 제외

(3) 판례

이렇게 법적으로 자살자의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전무한 결과로 유가족들은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기를 원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여러 가지이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유가족에서 많은 시간과 금전적 지출을 강요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상 분류기준의 개정이 시급하고 관련법의 개정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군대 내 동료들의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서울고법 2002)
- 군대 내 선임병의 상습적인 폭행을 못 이겨 자살한 현역병의 부모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광주지법 2004)
-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에 해당(99두3331)
- 대구지법 행정합의부 : 영내 가혹행위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판단함에 있어 영내 가혹행위에 따른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부대의 책임이 큰 만큼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기에 순직에 해당됨

이러한 절차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5-13>과 같다.

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이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공상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표 5-13> 유사 법규 비교

구분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p>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항목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라) 전 · 공상처리 실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주요 진료과목별 공상 및 비공상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표 5-14>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신체급수 1-7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전역자 중 공상인정이 각각 72%, 70.4% 씩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신과의 경우 1급 -7급의 심신장애 전역자들 중 공상인정이 2%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2%에 해당하는 정신과 질환은 전투나 군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관련 질환이 발생했을 때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 정신질환이나 심리장애의 경우는 사실상 공상인정이 불가능하다.

극심한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PTSD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장애만 공상인정을 하는 군의 입장은 정신과 질환의 대부분이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있으며, 군복무 중 개인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킨다는 정신과 질환 또는 장애의 상호작용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정신과 질환이나 심리장애가 유전적 소인이 있는 면도 있으나 가장 유전적 소인이 큰 질환 중 하나인 Schizophrenia(정신분열증)조차 환경의 영향에 따라 발병시기와 병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Gabbard, 2002).

<표 5-14> 2002~2006현재 주요 진료과목별 공상처리 대상자 수

	진료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보상여부	공상	비공상	공상	비공상	공상	비공상
2002년	가	91	7	66	2	2	12
	부	※	59	※	4	※	1
2003년	가	71	8	18	3	0	23
	부	※	15	※	8	※	36
2004년	가	47	8	39	12	0	13
	부	※	8	※	9	※	54
2005년	가	61	3	34	7	0	28
	부	※	16	※	17	※	98
2006년 9월	가	92	4	43	5	6	26
	부	※	14	※	17	※	91
누계 총계		362	142	200	84	8	382

※ 심신장애 등급이 1~7급 이외의 경우(8급이하)의 인원수.
전·공상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음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전역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까지의 비공상 관례를 깨고 공상인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숨은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발병을 늦추고 혹은 발병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부적응자들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책임에 군의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이러한 군의 입장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병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신과 진단명 별 공상처리 대상자를 살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정신과 진단명 별 공상 처리 대상자 수는 모두 11명이며, 전체 인원 414명 중 2.6%로 나타났다. 세부 진단명을 살펴보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에 2명, 우울증으로 2명, 정신분열증으로 1명, 공황장애, 해리장애, 섭식장애, PTSD, 치매, 기

다 정신병적 장애에 각각 1명씩 공상인정을 받았다. 적응장애로는 모두 2명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였으나 이들 모두 공상 인정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정신적 질환과 심리장애의 유전적 소인 입장을 군이 채택함으로써 군이 갖는 환경적 스트레스 소인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에서 발병하는 정신과 질환과 심리장애에 미치는 유전적 소인과 군대환경적 소인의 비율을 밝히는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심신장애 전역자들의 공상처리에서 왜 공상이 아니고 비공상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할 만큼 군복무 중 발생하는 외상 및 질병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 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공상 처리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

<표 5-15> 2003~2006 현재 정신과 진단명별 심신장애 공상처리 대상자 수

년도	2003		2004		2005		2006현재		
	전체인원	공상자	전체인원	공상자	전체인원	공상자	전체인원	공상자	
정신지체	11	0	12	0	13	0	16	0	
정신분열증	28	0	42	0	72	0	59	1	
기분 장애	우울증	7	0	9	1	17	0	25	1
	양극성장애	11	0	16	0	16	0	21	0
인격장애	0	0	1(경계선)	0	1	0	0	0	
적응장애	0	0	1	0	1	0	0	0	
공황장애	0	0	3(강박)	0	0	0	1(공황)	1	
해리장애	0	0	0	0	1	0	1	1	
PTSD	0	0	0	0	0	0	1	1	
섭식장애	0	0	0	0	3	0	1	1	
치매	0	0	0	0	0	0	1	1	
뇌손상에 의한 정신장애	1	1	0	0	0	0	1	1	
기질성 정신장애	6	0	0	0	0	0	0	0	
기타 정신병적 장애	4	0	0	0	9	0	2	1	
계	68	1	84	1	133	0	129	9	

마) 신체장애등급 및 장애 보상금 지급

공상 판정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군병원을 통해 상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보상등급과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표 5-16>에 제시되어 있다.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경우 심신장애등급표 및 심신장애종합등급표에 의해 1급 내지 7급은 전상 또는 공상 혹은 비전공상으로 구분하여 처리된다. 8급 또는 9급의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급 및 2급은 신체장애등급 1급으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장애등급 2급으로, 6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장애등급 3급에 해당된다.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며 신체장애 등급이 제 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 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3급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장애등급을 받게 된 자가 전역 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애에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표 5-16> 보상등급 및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심신장애 등급 및 심신장애 종합평가 등급	장애 보상금	지급액
보상 제 1급	1급 ~ 2급	중사 최저 호봉액의 12배 상당	1천만원 수준
보상 제 2급	3급 ~ 5급	중사 최저 호봉액의 8배 상당	약 6백 60만원 수준
보상 제 3급	6급 ~ 7급	중사 최저 호봉액의 6배 상당	약 5백만원 수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75조에는 재해보상금의 급여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세부항목을 <표 5-17>에서 살펴보면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서 공무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즉, 1년 미만인 병사들의 경우 비공상일 때는 보상금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복무기간이 1년이 이후에는 비공상이라고 해도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제시된 <표 5-14>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과 질환인 경우 비공상이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바로 복무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신과 질환의 경우 비공상으로 되어도 1년이 넘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비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적이다. 하지만 공상인정을 받는다는 점은 군내에서 질병이 발병 및 악화된 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이후에 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물론 보훈처에서 별도로 심사 운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표 5-17> 재해보상금의 급여 제한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배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군무이탈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4. 복무기간이 1년 미만(입원기간을 제외한다)인 자로서 공무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자 5. 외국에 파견된 자로서 그 파견기간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중 정부로부터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금 외의 재해보상금을 받게 된 자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75조 -

6. 향후 제안

이 연구는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새로운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인간의 모든 부적응 양상은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전제 하에, 군복무 부적응자의 정의를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 로 내렸고, 이와 같은 부적응의 책임은 군입대자 개인과 군대 조직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영단계, 복무단계, 전역단계, 그리고 군대 밖 사회의 네 단계로 나뉘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부적응 문제는 개인, 조직,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에 모두 초점을 맞춘 개입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DeFrank, & Cooper, 1987), 이중 가장 효과가 큰 개입은 조직에 초점을 둔 개입이다. 따라서 군 부적응 문제에 있어 가장 효과가 큰 개입은 부적응을 일으키는 군조직에 대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이나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개인의 적응 기술만을 증진하고자 의도하는 개입들은 일회용 반창고나 예방주사의 역할로 치부된다. 이 경우 개인은 자신을 조직에 “잘 맞도록” 학습하거나 조직으로부터 자신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초점을 둔 개입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변화시키고, 적응기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미 스트레스가 심한 개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직에서 개인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입은 개인적 관계 개선, 역할 개선 등이 있다 (Murphy, 1988).

각 단계에서의 정책제안을 하기에 연구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모든 정책제안은 더 세밀한 실태조사, 기초연구, 프로그램 개발, 중단 연구, 효과성 검증 연구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제안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만이 수십만 병력 관리상의 혼란을 막고, 목표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모든 정책 제안은 개별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가. 징병단계

1) 인성검사 사용과 해석의 신중성 필요

군대 밖에서도 인성검사는 흔히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심리검사는 철저한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심리검사가 가장 적절한지, 심리검사의 실시자와 해석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가라 하더라도 심리검사 해석에 신중하고 정확한지 등을 엄격하게 고려한다.

이에 비하면 현재 징병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문가의 검사 실시 및 컴퓨터에 의한 일괄적인 해석은 허술하고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단을 내릴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기존의 인성검사보다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검사도구를 개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을 함께 수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검사 실시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동일한 검사를 당일에 재검사하는 식의 절차를 유지한다면 새로운 인성검사가 잠재적 부적응자를 걸러내는 좋은 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검사도구의 개발과 함께 실시하고 해석하는 절차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반드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당화 연구가 잘 되어 있는 현 검사도구를 잘 활용하여, 현재 군 부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척도들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 채점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리검사 전문가의 채용

심리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나 심리상담자들 가운데서도 심리검사와 관련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징병단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문가는 정신과 군의관인데, 의과대학에서는 심리검사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의관의 경력으로는 심리검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징병단계에서의 잠재적 부적응자의 선별과정이 그 어느 단계에서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훈련이 잘 된 군의관을 활용하거나, 외부 심리검사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성검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조심하고, 경험적 지표를 활용

단일한 지필검사로 잠재적 부적응자를 걸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인성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군의관 면담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한 명당 약 5~10분 이루어지는 현 면담실태는 누가 봐도 형식적이다. 따라서 인성검사와 더불어 오랜 시간 군대에 속한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험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전방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인사장교의 경우 부적응을 예측하는 이론과 상당히 일치하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징병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인사장교들이나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경험에 근거한 부적응자 식별 지표들(입대전 개인사, 가정환경, 행동적 표식, 대인관계적 표식 등)을 조사하여,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목록을 체크리스트 검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4) 학생생활기록부의 활용

기존의 문헌에서나 본 연구의 결과상으로도 개인의 과거 경험이 부적응의 중요한 예언 변인이었다. 또한, 연구진이 면접한 병무청 군의관이나 인사장교들도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소한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만이라도 당사자나 학교에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논란의 여

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군입대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에 대한 의무로 보고 있는 경우, 국가가 방위와 사회의 안보를 목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군 부적응자가 국가방위나 사회안보에 해를 입히지 않을 목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학생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군 부적응자를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개인의 삶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유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연구에서도 그렇고 본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하였듯이 학생생활기록부가 군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입영부터 전역까지 인성검사들의 데이터베이스화

입영단계에서부터 개개인에 대한 인성적 판단 자료가 전역까지 기록이 되고, 그 개인이 가는 곳마다 지휘하는 담당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인사관리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 개인의 취약성을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의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후에 군대 내 부적응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초·중·고등학교, 대학, 의료분야, 행정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일선 부대를 방문해보니 여전히 개인의 자료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군대가 기술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인사관리를 매우 낙후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 개인의 자료를 징병단계에서 실시한 인/적성검사 결과에서부터 복무 기간 동안의 주요 변화, 그리고 전역단계에서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면 그 개인이 중간에 어디로 이동하든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군대에서 부적응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휘관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게 해준다. 또한 군 부적응자가 아닌, 군 입대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한 이들의 추이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군에 입대하는 이들에게 보다 적응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가능성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병사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능성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논의하는 등의 공론의 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6) 부적합 판정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한한 입영 전 정밀진단 캠프 활용

징병단계 인성검사(지능검사 실시될 경우 지능검사결과 포함)에서 복무면제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되지는 않으나, 잠재 부적응이 심히 우려되는 자들이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대부분 감별되지 않고 군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실제로 군사고 유발자가 된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징병시스템으로는 군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입대 전 징병단계에서 복무 부적응이 심히 우려되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정밀진단을 위해 감별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진단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일주일 가량 잠재 부적응자로 분류된 자들을 관찰하면서, 부적응 감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면담,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평가자들에 의한 집중적으로 관찰 진단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복무 기피하려는 자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

7) 징병단계에서의 군 이미지 홍보

본 연구에서 입대전 군 이미지는 입대 후 적응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p. 58). 즉, 입대전에 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병사일수록 입대 후 적응수준이 더 높고, 인권침해가 적으며, 부대조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 반면, 군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병무청 단계에서 각종 검사 실시자와 군의관들의 경직되고 명령조로 일관하는 태도

는 군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선배나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과거의 군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현 입영대상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는 불안을 낳고, 입대 후 낯선 상황에서의 다양한 자극들을 부정적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에 따른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군에 대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장 처음 형성하게 되는 병무청 단계에서 각종 검사진행과 더불어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군복무와 군 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로운 정보를 주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입영 대상자들의 불안을 낮추고, 군에 대한 신뢰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군복무 부적응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나. 복무단계

이 연구에서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결과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는 병사들로,
“ 현재 상당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병사” 들로 해석하였다.

cf. 유의미한 반응이란 9개 척도와 GSI 중 1개 이상에서 성인 일반 남성 100명 중 상위 2. 5명에 해당하는 주관적 증상과 고통을 호소한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 간부들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하였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결과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는 간부들로,
“ 현재 상당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간부” 들로 해석하였다.

cf. 유의미한 반응이란 9개 척도와 GSI 중 1개 이상에서 성인 일반 남성 100명 중 상위 2. 5명에 해당하는 주관적 증상과 고통을 호소한 것을 말한다.

복무단계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제안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군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은 그 특성상 대외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 군대도 사람을 다루는 곳이고, 사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자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건물을 수리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머리를 깎고, 물품을 만드는 것은 자체 공급이 가능할지라도,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군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지휘관을 교육시키고, 내부자를 상담자로 고용하고, 내부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을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욱 큰 문제를 떠안게 하고, 그것은 이미 매스컴에서 소개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말해주고 있다.

보안이 문제가 된다면, 외부자의 보안문제와 관련된 법규를 새로이 설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철저히 주지시킨 후에 활용하면 될 것이다. 즉, 최대한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누가 부적응병사인지, 부적응의 실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이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적응병사를 발견하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 것은 부적응병사들이 입대 후에 도움을 받을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부적응병사를 도우려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도들이 실제 병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프로그램과 시책에 관하여 느끼고 있는 바를 고위급 군관계자를 면담하고 이후에 병사들을 면담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고위계급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일반 병사들은 그러한 프로그램과 시책에 대해 냉담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군대와 같은 엄격한 위계조직에서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과 시책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순응과 응종이 요구되는 조직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군대가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이다. 외부에서 군대의 프로그램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없으면 무엇이 효과적으로 또는 비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당장 부적응자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겠지만, 군대에서 병사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도움 방략들을 찾아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예방 프로그램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부적응자를 발견해내고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모든 부대에서 부적응자의 수를 최소화하거나 부적응적 증상을 덜 심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부적응자가 된 이들에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앞으로 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의 병사를 돕는 길이다.

아래에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 소개된 제안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먼저 밝힌다.

1) 간부의 지휘부담 감소

본 연구에서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high-risk)를 식별 ·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매우 큰 지휘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조직은 조직원의 전반적인 기능 뿐 아니라, 조직의 기능효율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rtwright & Cooper, 1996). 조직관련 스트레스가 막대한 인간적, 재정적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 부적응과 관련된 간부들의 지휘부담은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인권

침해를 유발할 우려와 함께 전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부들에게 부적응 병사 식별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휘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심리검사에 대한 간단한 해석지식, 군복무 부적응자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내용, 가장 지휘부담이 큰 몇 가지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 위기개입기술,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조치 성공사례의 요인, 상담기술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 내 부적응자 문제를 전담하고,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간부의 부적응 병사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지휘자 보직 전에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에서는 군 부적응자 이해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3,294명의 직업군인들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건수는 9,507건 이었다는 보도(야후 뉴스, 2006.10.)와 일관된 점을 반영한다. 간부들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군내부에 보고하고 개입을 요청하기 보다는 군 외부 민간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동안 군내부에서 간부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많은 간부들이 자신의 역할을 병사들의 선생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였던 것처럼,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간부 1명은 많은 병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군은 자체적으로 간부들의 심리적 건강상태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 해소

가) 대부분의 군 부적응 병사들은 면담과 설문에서 군복무 부적응의 원인으로 병사 간

갈등, 특히 선임병과의 갈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었다. 그리고 선임병들은 면담에서 자신이 당한대로 하게 된다는 보고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부대에서 군 부적응의 중요한 한 요인인 인권침해가 계속 대물림 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군대 사건·사고의 가해자 대부분은 이전에 피해자였던 병사였음을 각종 보도에서 접할 수 있다. 억울함, 분노의 강한 정서가 밖으로 향하면 타인을 공격하고 해치는 원인이 되며, 자기 안으로 향하면 우울이나 자살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적 대물림이 군대 내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주요 원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악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미 각인된 피해경험에 대한 정서적 치유를 하는 것도 정서적 대물림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서적 피해는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으나,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

현재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첫째는 2003년부터 실시한 병영생활강령에 의해 인권침해 행동 자체를 규제하는 행동적 개입이다. 둘째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실시를 통해 병사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고자 국방부 인권팀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인지적 개입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정서적 개입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개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행동상으로 규제하고 인식을 바꾸도록 교육하여도, 이미 쌓여있는 분노와 억울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적 개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방식으로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부적응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정화(카타르시스) 후 인지적 정리로 마무리 되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 군복무 적응 병사들의 가장 큰 적응요인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였다. 즉, 병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고충을 깊이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사람만 있어도 극단적인 사고나 자살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부적응 병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화상대가 없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대화기술이 부족하거나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군 부적응 병사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개발된 의사소통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군 상황에 맞게 연구·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비전캠프 프로그램에서 병사 자신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을 줄이고, 다른 병사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기술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다) 본 실태조사에서 전체 병사들의 군복무상의 어려움 원인 1위는 진로문제였다. 그리고 군 생활의 개인적 의미가 높은 병사일수록 군 부적응 증상이 낮았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군복무 경험을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군에 입대하는 것이 인생의 낭비로 여겨지기 보다는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년기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인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 집단프로그램을 군에 맞게 개발·실시하여 군대에 있는 동안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깨닫게 되고, 제대 후 자신이 찾아갈 수 있는 진로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 프로그램은 이미 일반사회에서 기업체나 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3) 상호 의사소통의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 연구자들은 군과 사회의 인식차이, 병사와 간부의 인식차이, 병 상호간 선임과 후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상호불신과 대화단절을 낳는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각 체계간의 열린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입장과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연구, 효과

성 검증이 필요한 것들이다.

가) 군에서는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식별과 관리에 많은 애를 쓰고 있으나 사회에서는 군대측이 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 내 인권침해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사회의 군에 대한 인식은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차이는 군이 부적응자에 대한 정보와 사고를 개방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병사 개인의 부적응 소인과 군대의 인권환경은 모두 군 부적응을 유발하는 타당한 변인임이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군과 사회 양측은 서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적 측면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나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국방 음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에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군 부적응자는 사회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입대 전 부적응자는 입대 후 부적응자가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국가 이슈로 간주하여 국방부, 병무청,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이 정보교환,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부 전문가들은 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며, 넷째, 군은 부적응병사 관련 사례와 통계를 이들에게 개방하고, 군대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밖에 군 복무 부적응자의 가정과 연계하여, 이들의 주요 문제가 가정문제일 경우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나) 병사들은 간부들이 구태의연하고, 실적에만 신경 쓰며, 요즘 병사들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병사들은 대부분 군 생활의 어려움이 군대 탓이라고 여긴다. 반면, 간부들은 요즘 병사들이 당돌하고, 나약하다고 여기며, 병사들의 군 생활 어려움은 대부분 병사 개인 탓이라고 여긴다. 너무도 확연한 이런 인식차이는 부적응 병사관리에 애쓰는 간부들의 조치 · 관리에 대한 병사들의 불신과 현행 제도에 대한 이용 부재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령체계를 무시하지 않고서도 서로의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공군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사대표제를 들 수 있다. 각 계급별로 대표병사를 선발하여 이들이 동료 병사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발언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병사와 지휘자 간에 원활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병사대표제는 본 연구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간부들이 군 내에 매우 많은 것과 관련하여, 일부 간부들이 부당명령이나 지휘를 할 경우 대표병사들의 회의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언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역복무부적합처리가 간소화되어 사단단위로 내려갈 경우, 동료 병사들을 대신해서 부적응 병사에 대해 같은 병의 입장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병사대표제 외에도 다양한 간부와 병사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체계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

다) 병사들 간의 인식차이문제는 본 연구에서 부적응 병사들은 다가가고 싶어도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주위병사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적응 병사들은 부적응 병사로 인한 사고 등의 피해를 당할까봐 왕따를 시킨다는 사실을 면담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같군다고 두려워하고, 선임병들은 후임들이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미워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왕따와 같굼 등의 인권침해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병사의 사건·사고소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병사들 간의 인식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전체 병사교육 프로그램에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는 리더’ 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서 삶의 주도자(self-leader)가 되도록 하고, 진정한 리더십은 하급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또한, 부대 내 운영과 생활에 있어 각 병사들이 가진 장점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계급이 다양성의 일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안¹⁵⁾도 생각할 수 있다.

14) 국방대 개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이수 부대의 경우 욕설이 없어지는 등 병영문화가 혁신되고,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이러한 시도는 0사단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각 병사는 계급에 상관없이 해당 능력과 특기가 있는 병사에게 도움과 배움을 구할 수 있어 계급이 절대화되는 것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방안으로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군대에서 실시하는 것도 병사들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병사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같은 병사로부터 제공받는 개입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미 중등학교 및 대학에서는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또래상담자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교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또래는 가장 먼저 발견하고 도움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대 내에서도 이와 같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현 제도 보완 및 ‘관심병사’ 분류 기준의 타당성

가) 현재 군 부적응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상담제도, 마음의 편지 등은 그 이용실태가 미비하거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병사들 간에 인식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비밀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군 부적응 제도에 관련한 단기 과제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의 장점을 살리되 비밀보장측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현행 각종 제도를 군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병사의 신분노출통로를 막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운영 방식에서 비밀보장 측면을 강조한 홍보를 병사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현행 관심병사제는 눈에 띄는 부적응자나 의증 부적응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본 연구실태에 근거하여 관심병사 분류의 타당성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부적응 병사의 비율은 현재 각 부대 관심병사의 비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한 대부분의 부적응 병사들이 군 부적응에 대한 부대조치를 매우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 측에 자신의 부적응을 알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p. 55 참고). 이러한 측면은 현재 간부들에게 상당한 지휘부담이 되고 있는 부적응 병사의 식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심병사의 타당성에 대한 횡단적, 종단적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관심병사로 지목될 경우, 비밀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미 관심병사로 낙인찍힌 병사들의 인권침해가 상당한 것을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관심병사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역시 수행되어야 한다.

다) 부적응자 관리 및 조치 활동의 부대 간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단 별로 자체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대안이 아닐 뿐 아니라 유용한 정보의 교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심포지움의 개최 등으로 부대 간 정보 교류가 필요할 것이고, 군대의 상부에서는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적응자 관리 및 조치 활동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5) 군 부적응자 식별·개입·관리를 위한 기관과 제도마련

연구자들은 군 부적응자 문제에 대한 중 장기 과제로, 군 복무 부적응자들을 전문적으로 식별·관찰·개입 하는 기관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의증(피병) 부적응자와 잠재 부적응자를 적절히 식별하고, 초기 군 부적응자에게 정기적으로 신속한 치료적 개입을 하며, 상태가 호전될 경우 이들에게 적합한 근무형태를 제안할 수 있으며, 호전이 어려울 경우 타당한 전역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하는 별도의 기관과 이들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이 타당한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군은 이러한 기관을 보유함으로써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여러 성공사례를 통해 군 부적응 문제에 대한 예방과 조치 방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군의 전투력 강화와 사회의 군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6) 대체복무제

군 생활이 불가능한 개인은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군복무는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대체복무제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의 판단으로는 군과 사회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에서는 구체적인 기획안까지 상정된 것으로 연구자들은 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병사들의 69%와 간부들의 85%가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의병전역제도에 대해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사도, 간부도 모두 군복무 부적응 병사는 군 생활에서 제외시켜주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이므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군 부적응 병사에 대한 사전 감별과 복무 시 신속한 식별을 통해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인권과 이들의 국방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로, 면접에서 부적응 병사와 일반 병사 대부분은 타 부대로 재배치되는 것에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근무지 재배치제도에 대해서는 병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연구제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적응자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병무청 및 신교대 등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시 열람(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단결과와 실제 군 생활과정에서의 부적응 발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최종적으로는 한국군에 적합한 부적응자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양한 변화 시도를 하기 이전에 사전 검증을 통하여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연구하는 것이 예산 낭비와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군대에서도 기초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연구 주제들로는 군 적응장애 정의, 분류기준, 치료적 개입, 부적응 유형별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성 검증연구, 군 홍보를 위한 군 적응 프로그램 개발, 군 적응(유연성)의 위험요인과 적응 요인 및 대처방식 연구, 징병검사 결과와 복무 중 관심병사의 일치여부, 관심병사와 사고 간의 관련성에 대한 중단연구, 적응전략에 대한 연구(적응전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사용 가능) 등이 있다.

8) 군대문화 개선

본 연구에서 비합리적 명령, 은근한 압력 문항에 대해 병사들은 매우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즉, 대다수의 병사들이 현재 군대 명령이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선임병이나 간부의 은근한 압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체 병사들은 군 생활의 어려움 원인 중 비합리적인 군대문화를 두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것은 현재의 군대 문화가 병사들에게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고 조직원들이 인식하는 해당 조직의 효율은 결코 높을 수 없다. 또한, 조직 내 부적응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해당 조직에 초점을 둔 개입이다. 그러므로 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군대는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개선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좀 더 높이길 제안한다.

다. 전역단계

1)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 기준(육군규정 102)의 개선

소속부대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표5-1>에 제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참고하여 선별하게 된다. 하지만 <표5-1>의 조항들은 그 의미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가정환경 사유로 인한 부적합 대상자와 5급에 이르지 않는 심신장애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어 혼란스러우며, 체계적인 면에서 미흡하다. 이에 대해 심신장애와 가정환경 및 수형자 기준을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5급 미만의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술하며 각각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특징을 활용자료로 첨부하여 사단마다 통일되고 일관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전역 결정 시 별도의 세부규정 마련

현재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 처리 시 정확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역결정이 애매한 병사들의 질환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경험적 자료에 근거를 두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군의관 소견 시 각 장애에 대한 등급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규정 혹은 장애등급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처리 과정 시 발생하는 부적합 병사의 처우 문제 개선

부대장이 부적합 대상을 발견한 후 서류 준비를 위한 소요시간으로부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조치 결정까지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동안 부적합 병사는 소속부대의 간부 지휘 하에 있으면서 처리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동안 적절한 관

리나 치료 도움을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전역심사 결과 군복무 지속 판정이 내려지면 사단 또는 군내에서 보직 및 근무 환경을 조정하여 근무 분위기를 변화시켜 주기는 하지만 부적합 심사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부대 내 낙인의 문제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시적인 부적합 처리 절차와 익명성 보장, 처리 과정 중 적절한 관리나 전문적인 치료 제공이 필요하다.

4)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의관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관련영역의 전문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과 질병에 대해 전문적 소견을 가질 수 없다. 정신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하나의 질환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개인의 ‘정신나약’ 이나 ‘의지박약’ 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서는 항명, 군무이탈, 복무기피 목적 상해 등의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현 여건 상 수급되기 힘든 정신과 군의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민간 전문가(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5) 군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확립

정신의학적으로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 또는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일반적으로 3개월)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내지 행동적 장애 또는 비적응적 장애를 말한다. 따라서 군 적응장애는 입영 전에는 특별한 심리적 장애가 발견된 적이 없었지만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심리적 준비 없이 경험하는 병사들이나 부대에서 맡은 주특기 임무가 자신의 전혀 맞지 않을 때, 생활

관 내의 인간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할만한 상황을 경험할 때 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대다수의 복무 부적응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장애로 정의할 수 있다.

소속 부대에서는 눈에 띄는 적응장애병사들을 일반적으로 관심병사로 분류한다. 심각함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대체로 이들은 군 생활에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본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주변 병사들, 간부, 부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적응장애자들이 군병원의 신경정신과를 찾아간다고 한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속 부대로 돌아오게 된다.

현재 군 적응장애 병사들의 경우 일반 정신의학기준으로 보아서는 진단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증상들이 등장하고 있어, 부적응자들을 위한 관리와 치료에 군 당국과 군의관들의 일관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정신의학적 기준과 다른 특수한 우리나라 군 적응장애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실시하여 군 적응장애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군 병원의 신경정신과 의료 인력 수준에서 군 적응장애 기준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인다. 연구를 위한 인력과, 군 병원의 자료 개방, 예산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팀이 군 적응장애 병사들을 직접 면담·치료하면서 군적응장애의 기준을 체계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6) ‘군적응장애’ 에 대한 개입 및 치료 방안 마련 시급

현재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적응장애를 경험할 때 군병원을 방문하게 되지만 정신과 군의관만으로 군적응장애 병사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군병원 입장에서는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려 하지 않고, 자대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입원을 시키고자 하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군 병원 방문조사 결과, 기존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

다는 점과 군정신과 전문의들이 전공의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자증상에 대해 군 의관들마저도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군적응 장애의 치료와 개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적응장애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주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면 바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군 적응장애 병사는 군 병원 입원 시에는 증상이 미미해지며, 부대로 복귀하는 즉시 심각한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상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는 부대측과 입원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병원 사이에서 군 적응장애 병사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군적응 장애 병사들만을 전문적으로 개입·치료·관리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군 적응장애 병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우울, 불안, 인간관계 갈등 등 성격상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약물치료보다는 상담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치료 비해, 상담치료는 군 부적응 병사들의 증상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군 적응장애 병사들의 복무 유도과 인권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장기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

7) 군에서 악화 혹은 발병된 정신과 질환에 대한 군의 관점 변화 필요

의병제대나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통해 전역을 결정할 때 병사와 군 사이에 종종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는 정신과적 질환이 군대복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입영 전에 이미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에서 생겨난다. 정신질환이 군복무라는 이유 때문에 발병했다면 군이 그에 대한 공상처리와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군은 구타나 가혹행위와 같이 증거가 분명한 원인으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공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정신분열증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비공상 처리 질환인데 이는 청년기에 발병하는 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군에 오지 않았어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

었을 질병이라는 이유로 군은 정신분열증을 공상인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질환은 군에 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군이 주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일찍 발병하지 않았거나 그 증상이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군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질환의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발병 후 적절한 치료개입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군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또한 거세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정신적 질환과 심리장애의 유전적 소인 입장을 군이 채택함으로써 군이 갖는 환경적 스트레스 소인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군 복무 부적응은 군에서의 인권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p. 78). 따라서 군에서 발병하는 정신과 질환과 심리장애에 미치는 유전적 소인과 군대환경적 소인의 비율을 밝히는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8) 자살자 공상인정 및 보상 마련

우선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분류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에 명시된 업무상 사고와 비교하여 볼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공상 분류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자 중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자살한 자는 자신의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라는 의식인 국립묘지령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공사상분류기준의 개정을 전제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심리학 전문가, 군의관 이외의 외부 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자살자와 관련하여 각 부대의 수사 및 조사 시 참석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살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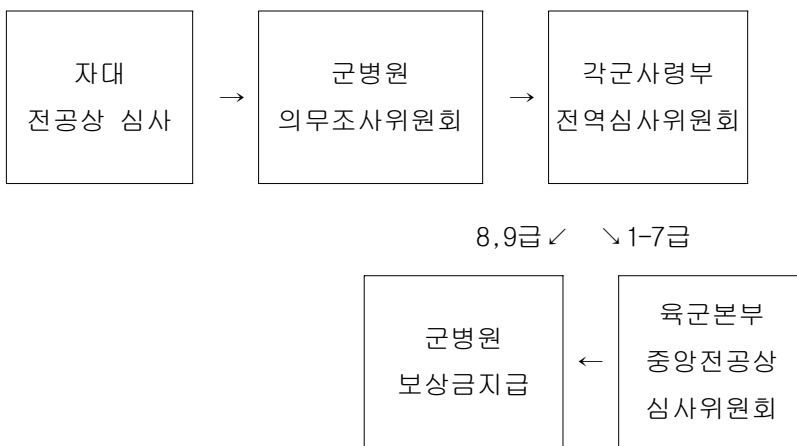
9) 전역 절차의 개선

현재의 경로로 심신장애 전역이 지속될 경우 공상판정이 전역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대에서 이루어진 전공상 판정이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반복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을 변경할 경우 관례적으로 전공상심의의결서를 소속부대에 다시 돌려보내 재작성도록 하는데 병사는 이미 전역을 한 후이기 때문에 서류 절차가 지연되며 공상처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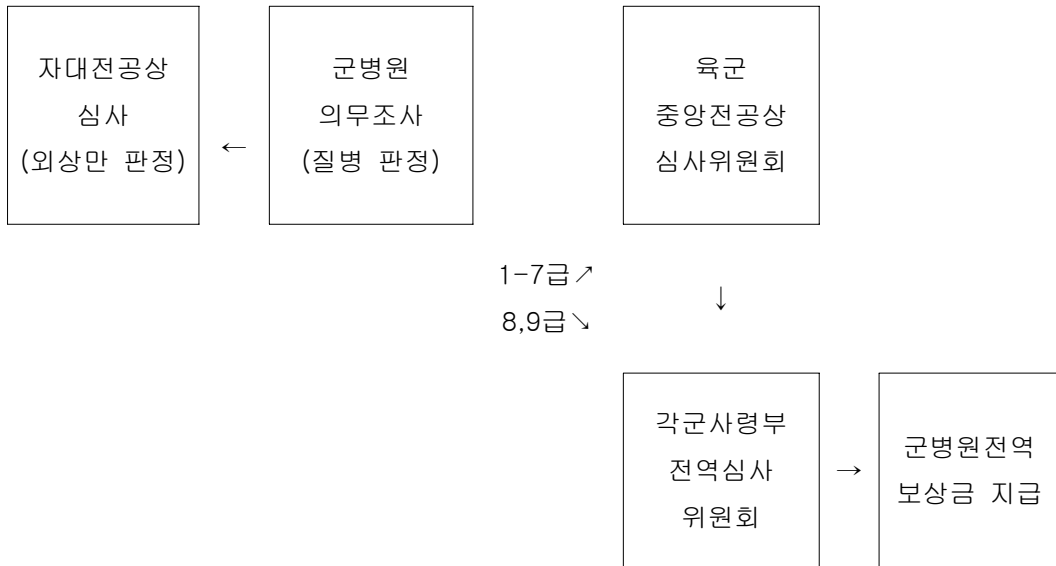
따라서, 전역 판정 전에 전공상심의가 이루어져야 절차상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역 전에 전공상심의를 하다보면 전공상심의와 전역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병사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상심의 위원회를 중앙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단별로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전역심사위의 회의 소집일을 지금의 한 달에 1회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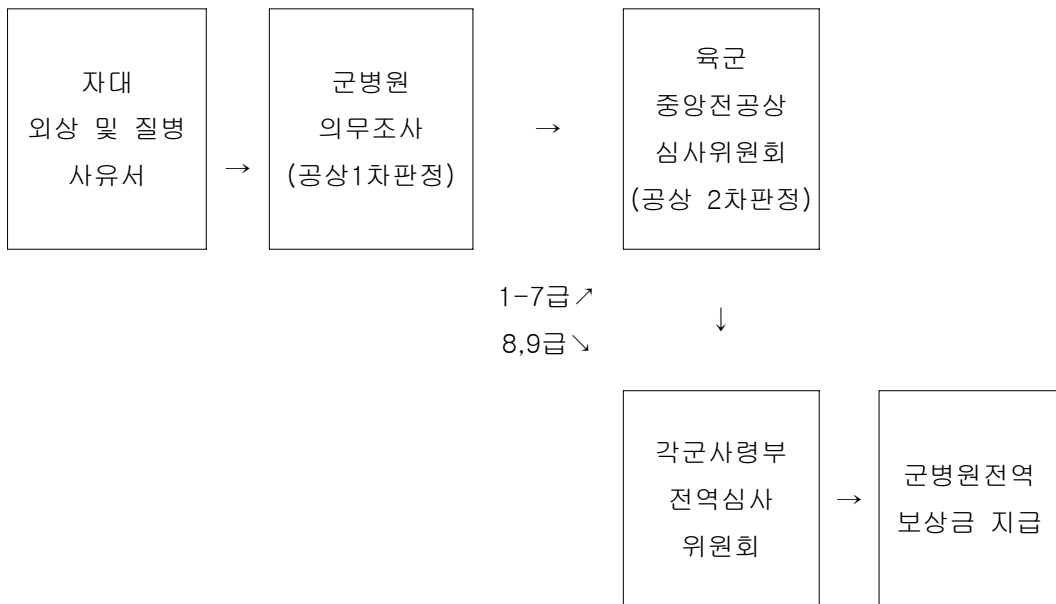
<현재 절차>



<개선 1안>



<개선 2안>



<개선 3안>



10) 전역심사위원회의 권한의 개선

현재 전역심사위원회는 병사의 관련 질병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전역심사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의무조사위원회를 견제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오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무사령부에서 병원장급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11) 전 · 공상의 제 1차 판정자(부대간부)들을 위한 교육 마련

현 제도에서는 공상 처리를 부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때문에 공상 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간부들은 민원을 의식해서 무조건 공상처리를 하거나, 정신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 군병원 차원에서 의무조사 위원회가 열리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군의관들은 사실상 공상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속부대에서는 외상에 대해서만 공상판정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질병에 대해서는 권한을 의무조사위원회로 이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상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사례별로 교육시키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공상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구분하여 그 이유와 판정 근거를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새로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면 간부들의 공상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 군대 밖 사회에서의 노력

1) 군 이미지 홍보

군 이미지 홍보를 통하여 군에 대한 일반인의 긍정적 인식을 도모해야 한다. 대체로 입영전의 청년들이 듣는 군대 이야기는 훨씬 앞 세대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많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좋은 방법은 긍정적 정보로 부정적 정보를 대체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부터 제대까지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인식을 줄여주는 것이다.

군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TV 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현재 세대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하여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자신의 회사를 알리고 홍보하듯이, 군대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청년들에게 먼저 친근하게 접근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입영을 앞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야 한다.

2) 군 부적응 관련 도움내용 홍보

군대 내에서 부적응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책자나 홍보자료를 통하여 현재 군대가 인권개선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노력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군대에 대해 보다 신뢰하고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IV. 결론

오늘 날 군대는 과거에 문제시되었던 신체적 학대나 의식주와 관련된 처우와 같은 일차적인 인간존엄성의 침해는 많이 감소한 반면,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에서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고차원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적 안전과 의식주의 충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아존중과 존엄성, 타인과의 성숙한 교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과 같은 정신적인 욕구를 갖게 된다는 실존주의적 심리학자 Maslow(1968)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6.25 전쟁 이후의 우리 사회는 일차적인 욕구, 생존과 직결된 욕구가 더욱 시급히 충족되어야 하는 곳이었고, 그 시대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계급층에서는 국민들의 일차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고 여겼다. 그 당시 군대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2006년의 우리 사회는 인간존엄성의 문제에 대해 매우 세련되어졌고 시야가 넓어졌다. 즉, 먹고, 입고, 자고, 신체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권리가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오늘 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가져왔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증가와 사회 곳곳에서 당당하게 인권 고발과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는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발달은 더욱 개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부조리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느낀 점이다. 2006년에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의 욕구와 인식 수준은 50년 전의 청년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한국의 군대는 아직 고민을 더 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 날 군대도 많은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인정과 격려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변화의 노력은 위에서 언급한 일차적 욕구 충족에 여전히 머물러있고 (그것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즉, 군대의 지도층이 갖고 있는 “인권”의 정의와 2000년대 군대를 구성하고 청년들

이 기대하는 “인권” 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군복무 부적응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령 군대가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결국 외부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현재 군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긍정적인 결실로 이어질 잠재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매우 희망적이다.

정부의 어느 부처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방부 또한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군대가 부적응자들을 대상으로 top-down 방식의 (상위조직에서 하위조직으로 내려오는 방식) 체계적인 개입을 하기 보다는 각 부대단위에서 bottom-up 식의 접근을 해오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부적응자들의 식별과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하면서 중간 지휘관급의 고충과 스트레스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진이 다양한 계급의 군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군대내 개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도, 부적응자 감별 절차를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전문적으로 줄 수 있는 심리상담전문가를 많이 고용할 수 없는 이유도,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군 부적응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는 이유도 모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부터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고 겉에서 새어나오는 부분들을 메우는 접근은 결국엔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만든다. 아래의 사례가 그 한 가지 예다.

“유족에 3억 국가배상”

[경향신문 2006.05.24 18:07:57]

지명 수배된 병사를 아무런 조치 없이 휴가를 내보내 살인을 저지르도록 방조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6월 인천 모 경찰서에 한 여성으로부터 ‘동거남 천모씨가 강간하고 집안의 물건을 들고 가버렸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경찰은 천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석 달 뒤인 9월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천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기 사흘

전 또 다른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군에 입대한 상태였다. 공병대대로 배치된 천씨의 중대장에게 지명수배 사실이 통보됐다. 그러나 해당 중대장은 천씨에게 “당신이 지명 수배됐으니, 피해자와 잘 합의하라”고 오히려 알려주고, 이듬해 1월 말 천씨에게 4박5일간의 신병 위로휴가까지 허락했다.

휴가를 나온 천씨는 군대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에 PC방을 전전하다 강도, 강간, 살인 등 5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피해자 중 한명인 장모씨(32·여)는 천씨의 손에 남편이 죽고 본인도 강간당하는 등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은 천씨 사건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해 군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고, 군은 천씨의 2차 범행을 막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군·경의 의무위반으로 장씨가 피해를 당한 만큼 국가는 유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의 사례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징병단계에서 이가해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그것도 우발적으로 한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저지른 사람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군대가 외부 사회와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분명 나타냈을 것이고, 그것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 이미 지명 수배된 사람을 입영단계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설령 위의 개인이 인성검사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속이고 입대했다고 하자. 그 다음 문제는 해당 부대의 중대장의 조치였다. 이후에 지명수배 사실을 발견하고는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므로써 문제 당사자를 달래려고 했다. 아마도 중대장은 이와 같은 병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당황했을 것이고, 군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인 휴가로서 해결하려 하였던 모양이다. 만약 해당 부대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이 개인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포장하여 상대방에게 속

이는지 심리적 전문가가 발견해냈을지도 모르고 사건은 방지되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심리적 전문가 또한 이 개인의 인성적 문제를 완벽하게 찾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과거에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을 아무런 대안없이 휴가를 보내는 결정에는 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한 개인이 군대에 입힌 손실은 3억여원. 만약 이 범 죄자가 군대 내에 남았다면 더 큰 인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3억여원 정도의 금액이면 현재 국방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예방적 대안들 가운데 일부라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경제효율적인 대처방안은 예방적 방안이다.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고도 체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군 이미지를 고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대 부적응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방부. (2006). **병영문화개선 연구 백서**. 국방부.
- 김광식, 정길호, 김혜인, 신범철. (2004).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 연구**. 한국 국방 연구원.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
- 김완석, 손명자 역. (1995). **심리검사론**(Anastasi 저). 서울: 율곡.
- 성주목. (2006). **장병 기본권 지침서**. 국방부.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신웅섭. (1995). **군의 정신장애 진단체계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 신웅섭. (1997). **군 복무 부적응자의 심리적 특성 분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 안석기, 정주성, 독고순. (2003). **군 복무중 사망자(자살)의 국가책임론과 예우의 한계**. 한국국방연구원.
- 중앙교육연구소. (1995). **K-WAIS 검사메뉴얼**.
- 한국 가이던스 & 대구대학교 응용심리 연구소. (2005). **육군 인성검사 체계 연구보고서**. 국방부
- 원호택, 한덕웅, 신웅섭, 박광배, 이영호. (1998). **군 인성검사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 국방부.
- 하정우. (1995). **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논문.
- 한홍구, 김성전, 김정식, 박원석, 이재승, 임태훈. (2005).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홍길대. (1995). **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논문.
- Benbenishty, R., Zirlin-Shemesh, N. (1993). Policy capturing: discharge from the Israeli army due to mental difficulties. *Military Psychology*, 5, 159-172.
- Cartwright, S., & Cooper, C. L. (1993). The psychological impact of merger

- and acquisition on the individual: A study of building society managers. *Human Relations*, 46, 327–347.
- Cartwright, S., & Cooper, C. L. (1996). Coping in occupational settings. In M. Zeidner & N. S. Endler (Eds.),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DeFrank, R. S., & Cooper, C. L. (1987). Worksite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s: Their effectiveness and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 4–10.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New York: Guilford.
- Leonard, S. F., & Richard, A. Charter. (2003). *Psychological methods*, 8, 102–109.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Princeton, NJ: Van Nostrand.
- Murphy, L. R. (1988). Workplace interventions for stress reduction and prevention. In C. L. Cooper & R. Payne (Eds.),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of stress at work*. Chichester: Wiley.
- Zeidner, M., & Endler, N. S. (1996).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부록 1> 병사용 질문지

※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각 숫자는 정도차이를 의미하며, 중간에 해당하는 숫자는 없으니, 약간이라도 더 동의하는 쪽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이 설문에

전혀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1 ----- 2 ----- 3 ----- 4 ----- 5 ----- 6
 대체로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솔직할 것이다 상당히 솔직할 것이다 매우 솔직할 것이다

2. 입대 전, 군대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쁘다 1 ----- 2 ----- 3 ----- 4 ----- 5 ----- 6
 거의 나쁘다 약간 나쁘다 약간 좋았다 상당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3. 군대생활은 나에게

전혀 의미없다 1 ----- 2 ----- 3 ----- 4 ----- 5 ----- 6
 거의 의미없다 별로 의미없다 약간 의미있다 상당히 의미있다 매우 의미 있다

4. 나는 현재 군대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 1 ----- 2 ----- 3 ----- 4 ----- 5 ----- 6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5. 내 주변에 군대 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는

전혀 없다 1 ----- 2 ----- 3 ----- 4 ----- 5 ----- 6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6. 군대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 2 ----- 3 ----- 4 ----- 5 ----- 6
 거의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7.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른 병사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1 ----- 2 ----- 3 ----- 4 ----- 5 ----- 6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8. 군대 사고(총기난사, 탈영, 자살 등)소식은 나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1 ----- 2 ----- 3 ----- 4 ----- 5 ----- 6
 거의 주지 않는다 별로 주지 않는다 약간 준다 상당히 준다 매우 많이 준다

9. 다른 병사들이 군대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10. 내가 군대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11. 만약 조금이라도 군대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중에서 **3 개만 골라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부당한 명령 및 처벌 | ⑧ 가정문제 |
| ②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 ⑨ 여자친구 문제 |
| ③ 열악한 근무환경 | ⑩ 제대 후 진로에 대한 부담감 |
| ④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 ⑪ 성격문제 |
| ⑤ 보직 불만족 | ⑫ 많은 양기 및 교육 |
| ⑥ 고된 훈련 | ⑬ 비자발적 입대 |
| ⑦ 선임병과의 갈등 | ⑭ 성문제 |
| ⑮ 기타(써주십시오) _____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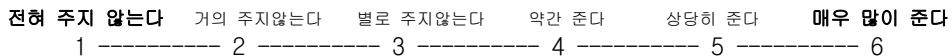
12. 나는 군대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휘관이나 부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13. 나는 군대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식구들이나 친구 및 군대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14.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은근한 압력은 나에게 영향을



15.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명령에는 복종하더라도, 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가



16. 군 생활의 어려움을 보고할 경우, 군대의 조치는 대체로

전혀 효과없다	거의 효과없다	별로 효과없다	약간 효과있다	상당히 효과있다	매우 효과있다
1 -----	2 -----	3 -----	4 -----	5 -----	6 -----

17. 군대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는

전혀 필요없다	거의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	2 -----	3 -----	4 -----	5 -----	6 -----

18. 군대 부적응으로 의병전역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별로 모른다	약간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1 -----	2 -----	3 -----	4 -----	5 -----	6 -----

19. 만약, 군대 부적응으로 의병전역 할 경우 군대 보상체계를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 -----	2 -----	3 -----	4 -----	5 -----	6 -----

부당한 대우의 예: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 기타

20. 주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병사를 본 적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 -----	2 -----	3 -----	4 -----	5 -----	6 -----

21. 다른 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면을 보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전혀 안준다	거의 안준다	별로 안준다	약간 준다	상당히 준다	매우 많이 준다
1 -----	2 -----	3 -----	4 -----	5 -----	6 -----

22. 나는 군대생활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 -----	2 -----	3 -----	4 -----	5 -----	6 -----

23.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 -----	2 -----	3 -----	4 -----	5 -----	6 -----

24.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는 _____ 이다(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사적인 명령 ② 언어폭력 ③ 신체폭력
- ④ 따돌림 ⑤ 성희롱 ⑥ 차별
- ⑦ 기타(써주십시오) _____

25. 나는 이 설문에서

전혀 솔직하지 않았다	대체로 솔직하지 않았다	별로 솔직하지 않았다	약간 솔직했다	상당히 솔직했다	매우 솔직했다
1 -----	2 -----	3 -----	4 -----	5 -----	6

※ 다음 문장의 빈 칸을 완성해주시오.

26. 군대와 사회는

_____ 점에서 다르다.

27. 군대이기 때문에

_____ 가능하다.

28. 선임병이란(상병·병장 경우: 후임병이란)

_____ .

29. 지휘관에 대해 나는

_____ .

30. 군대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_____ 때문이다.

31. 군대에서 내가 겪은 가장 부당한 일은

_____ 이다.

32. 군대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_____ .

※ 다음 문항을 읽고 입대 전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숫자에 표시(0)해 주십시오.

33. 학교 다닐 때 결석을 자주 한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34.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35. 초등학교 때 말썽을 부리는 아이였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36. 초등학교 때 성적은 상위권이였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37.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자주 싸웠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38. 학교 규칙을 어긴 적이 자주 있었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39. 선생님께 반항하는 편이였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0. 고등학교 때 공부는 반에서 하위권이였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1. 학교 다닐 때 지각을 자주하는 편이였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2.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3. 고등학교 때 모범적인 학생이였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4.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5.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왕따 시킨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6. 가출해본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7. 숙제를 잘 해가는 편이였다.

전혀 아니다 1 ----- 거의 아니다 2 ----- 별로 아니다 3 ----- 약간 그렇다 4 ----- 상당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6

48. 외향적인 성격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49. 소심한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0.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인기 있는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1. 적은 수의 친구하고만 가깝게 지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2. 항상 외로웠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3. 수업시간에는 발표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4. 부모님께 반항을 한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5.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6.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7. 학교 다닐 때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8.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59. 자해를 해본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0. 우울했던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1. 지나치게 불안했던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2.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3.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좋지 않았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4.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성격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5.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6. 다혈질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7. 본드나 부탄가스를 한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8. 예민한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69. 친구로부터 여자 같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70. 혼자 있을 때 더 편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71. 내 문제를 스스로 잘 깨닫는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72. 어릴 적에 형제나 친척과 종종 다투곤 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73. 입대 전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74. 내 감정을 스스로 잘 깨닫는 편이었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2 ----- 3 ----- 4 ----- 5 ----- 6

※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75. 머리가 아프다.					
76.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77.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78.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79. 성욕이 감퇴되었다.					
80.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81. 누가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 같다.					
82.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83. 기억력이 좋지 않다.					
84.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85.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86.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87.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렵다.					
88.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89.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90.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헛소리가 들린다.					
91.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92. 사람들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든다.					
93. 입맛이 없다.					
94. 울기를 잘한다.					
95.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96.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97.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98. 자신도 걸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99.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무섭다.					
100. 자책을 잘한다.					
101. 허리가 아프다.					
102.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103. 외롭다.					
104. 기분이 울적하다.					
105. 매사에 걱정이 많다.					
106.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07. 두려운 느낌이 든다.					
108. 쉽게 기분이 상한다.					
109.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다.					
1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11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112.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113.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114. 구역질이 나거나 계운다.					
115.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116.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117.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게 관해서 쑥덕거리는 것 같다.					
118. 잠들기가 어렵다.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19.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120. 결단력이 부족하다.					
121. 자동차나 기차를 타기가 두렵다.					
122. 숨쉬기가 거북하다.					
123.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124. 어떤 물건이나 장소 혹은 행위가 겁나서 피해야 했다.					
125. 마음 속이 텅 빈 것 같다.					
126.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127.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128. 장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129.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130.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131. 긴장이 된다.					
132. 팔다리가 묵직하다.					
133.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다.					
134. 과식한다.					
135.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게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진다.					
136.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다.					
137.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38. 새벽에 일찍 잠을 깬다.					
139. 만지고 셈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140. 잠을 설친다.					
141.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42.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다.					
143.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144. 시장이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하다.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45. 매사가 힘들다.					
146.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147.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148. 잘 다룬다.					
149.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두렵다.					
150.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151.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낀다.					
152. 안절부절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53. 허무한 느낌이 든다.					
154. 낮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155.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다.					
156. 사람들 앞에 쓰러질까봐 걱정이다.					
157.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 같다.					
158. 성 문제로 고민한다.					
159.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160. 무슨 일이든 조금해서 안절부절 한다.					
161. 내 몸 어딘가가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162. 늘 남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163.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낀다.					
164. 내 마음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165.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중퇴포함) ② 전문대졸(재학포함) ③ 대졸(대재포함) ④ 대학원이상

166. 귀하의 계급은?

-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부록 2> 간부용 설문지

※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각 숫자는 정도차이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숫자는 없으니,
 약간이라도 더 동의하는 쪽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이 설문에

전혀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솔직할 것이다 상당히 솔직할 것이다 매우 솔직할 것이다
 1 ----- 2 ----- 3 ----- 4 ----- 5 ----- 6

2. 현재 부대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 2 ----- 3 ----- 4 ----- 5 ----- 6

3. 만약 조금이라도 군대 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중에서 **3 개만 골라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부당한 명령 및 처벌 | ⑧ 가정문제 |
| ②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 ⑨ 여자친구 문제 |
| ③ 열악한 근무환경 | ⑩ 제대 후 진로에 대한 부담감 |
| ④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 ⑪ 성격문제 |
| ⑤ 보직 불만족 | ⑫ 많은 양기 및 교육 |
| ⑥ 고된 훈련 | ⑬ 비자발적 입대 |
| ⑦ 선임병과의 갈등 | ⑭ 성문제 |
| ⑮ 기타(써주십시오) _____ | |

4.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은 주로

전적으로 개인 문제 좀 더 개인문제 <----- 3 -----> 좀 더 군대문제 -----> 전적으로 군대문제
 1----- 2 ----- 3 ----- 4 ----- 5 ----- 6

5. 군 부적응병사 문제가 부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 거의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 2 ----- 3 ----- 4 ----- 5 ----- 6

6. 군대 사고(총기난사, 탈영, 자살 등)소식은 부대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거의 주지 않는다 별로 주지 않는다 약간 준다 상당히 준다 매우 많이 준다.
 1 ----- 2 ----- 3 ----- 4 ----- 5 ----- 6

7. 귀하가 주로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을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소외·따돌림 당하는 병사
- ② 태도불량 및 명령불복종 하는 병사
- ③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는 병사
- ④ 정신질환이나 성격문제를 가진 병사
- ⑤ 잦은 실수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사
- ⑥ 신체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병사
- ⑦ 기타()

8. 현재 부적응 병사 분류 기준은 이들의 관리에

전혀 도움 안된다 거의 도움 안된다 별로 도움 안된다 약간 도움된다 상당히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1-----2-----3-----4-----5-----6

9. 부적응 병사의 이해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2-----3-----4-----5-----6

10. 부대에서 부적응 병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정신교육 및 체력훈련을 실시한다.
- ②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한다.
- ③ 부적응의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한다.(군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 ④ 선임병이나 동료 병사에게 관찰하도록 한다.
- ⑤ 특별히 대처하지 않는다.
- ⑥ 기타()

11.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부적응 병사 사전식별
- ② 부적응 병사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 ③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 ④ 부대 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⑤ 부적응 병사의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제도 미비
- ⑥ 기타 ()

12. 부적응 병사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징병단계 인성검사 강화
- ②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한 부대배치
- ③ 상담심리전문가 배치

- ④ 중립적인 고충처리기구 설치
- ⑤ 적응유도 프로그램
- ⑥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마련
- ⑦ 기타()

13. 현재 군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처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부당한 대우의 예: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 기타

14. 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는 무엇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적 심부름
- ② 언어폭력
- ③ 신체폭력(구타 및 가혹행위)
- ④ 따돌림
- ⑤ 성희롱
- ⑥ 기타 ()

15. 군 부적응자의 처우개선과 간부의 지휘권은

전혀 대립되지 않는다	거의 대립되지 않는다	별로 대립되지 않는다	약간 대립되지 않는다	상당히 대립되지 않는다	매우 대립된다
1-----	2-----	3-----	4-----	5-----	6-----

16. 부적응 병사에게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피해자에게 참도록 설득
- ②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합의를 유도
- ③ 피해자의 피해상황 파악 후 가해자를 처벌
- ④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처우개선
- ⑤ 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
- ⑥ 기타()

17. 부적응 병사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를 처리할 때 가장 어려움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근무평정에 대한 불이익
- ② 부적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 ③ 처리제도 미비
- ④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⑤ 병사 요구사항(보직변경, 전역요구 등) 처리
- ⑥ 기타()

18. 부적응 병사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휘관들의 관심 및 인식의 변화
- ② 심리상담 청구권 보장
- ③ 선임병 혹은 지휘관의 부당한 대우 근절 및 법적 제재
- ④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⑤ 부적응자 사전식별 및 대처방안 교육
- ⑥ 기타()

19.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부적응 병사의 인권이 불가피하게 침해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례적으로
- ②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사에게 표출되므로
- ③ 지휘, 통제 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 ④ 병사의 효율적 군복무 적응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 ⑤ 기타()

20. 병사가 군복무 부적합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부에 알리는 것을 꺼린 적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 2 ----- 3 ----- 4 ----- 5 ----- 6

21. 상부에 보고를 꺼린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전역이 거의 불가능
- ② 부대 기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③ 부대적응을 위한 병사 자신의 노력이 우선 필요
- ④ 근무평정 불이익 우려
- ⑤ 기타()

22.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전역 심사과정에서, 부적응 및 정신장애와 군복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 3 ----- 4 ----- 5 ----- 6

23.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뿐 아니라,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는

전혀 필요하다 거의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 3 ----- 4 ----- 5 ----- 6

24. '관심병사제'가 부적응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약간 효과적이다	상당히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1-----	2-----	3-----	4-----	5-----	6-----

25. '비전캠프'가 부적응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약간 효과적이다	상당히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1-----	2-----	3-----	4-----	5-----	6-----

26. '인권 상담관 제도'는 부적응 병사들의 적응도를 높이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약간 효과적이다	상당히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1-----	2-----	3-----	4-----	5-----	6-----

27. 위 26번에서 '효과적이지 않다'에 표시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약한 병사들을 양산
- ② 인권 상담관의 전문성 의심
- ③ 따돌림의 원인이 되어 병사에게 이중 부담
- ④ 비밀보장의 문제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
- ⑤ 기타()

28. 귀하는 현재 지휘관으로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매우 많다
1-----	2-----	3-----	4-----	5-----	6-----

29. 위 28번에서 '어려움 있다'에 표시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부적응 병사들의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 ② 상급자와의 갈등
- ③ 근무평정의 어려움이나 진급문제
- ④ 신체적 질병
- ⑤ 과도한 업무
- ⑥ 가족과 계속되는 별거
- ⑦ 기타()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6.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헛소리가 들린다.					
17.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18. 사람들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든다.					
19. 입맛이 없다.					
20. 울기를 잘한다.					
21.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22. 어떤 상황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23.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24.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25.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무섭다.					
26. 자책을 잘한다.					
27. 허리가 아프다.					
28.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29. 외롭다.					
30. 기분이 울적하다.					
31. 매사에 걱정이 많다.					
3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33. 두려운 느낌이 든다.					
34. 쉽게 기분이 상한다.					
35.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다.					
3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37.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38.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39. 심장(가슴)이 마구 뒹다.					
40.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41.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42.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43.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속닥거리는 것 같다.					
44. 잠들기가 어렵다.					
45.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46. 결단력이 부족하다.					
47. 자동차나 기차를 타기가 두렵다.					
48. 숨쉬기가 거북하다.					
49.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50. 어떤 물건이나 장소 혹은 행위가 겁나서 피해야 했다.					
51. 마음 속이 텅 빈 것 같다.					
52.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53.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54. 장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55.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56.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57. 긴장이 된다.					
58. 팔다리가 묵직하다.					
59.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다.					
60. 과식한다.					
61.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진다.					
62.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다.					
63.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64. 새벽에 일찍 잠을 깬다.					
65. 만지고 썩히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66. 잠을 설친다.					
67. 무언가를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문 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68.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다.					
69.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70. 시장이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하다.					
71. 매사가 힘들다.					
72.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73.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74. 잘 다룬다.					
75.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두렵다.					
76.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77.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낀다.					
78. 안절부절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79. 허무한 느낌이 든다.					
80.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81.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다.					
82. 사람들 앞에 쓰러질까봐 걱정이다.					
83.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 같다.					
84. 성 문제로 고민한다.					
85.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86. 무슨 일이든 조금해서 안절부절 한다.					
87. 내 몸 어딘가가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88. 늘 남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89.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낀다.					
90. 내 마음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